

도세(都税) 안내

2020

令和2年度版
(ハングル版 ガイドブック都税)



主税局イメージキャラクター
タックス・タクちゃん



가 이 드 북 도 세
2020 년 도 판

신고 및 납기 안내

●도세 · 특별구세 · 국세

월별	도 세	특 별 구 세	국 세
4 월			
5 월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광구세	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6 월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제 1 기	특별구민세 제 1 기	
7 월			소득세(예정납세) 제 1 기
8 월	개인사업세 제 1 기	특별구민세 제 2 기	
9 월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제 2 기		
10 월		특별구민세 제 3 기	
11 월	개인사업세 제 2 기		소득세(예정납세) 제 2 기
12 월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제 3 기		
1 월	도민세 배당할(配当割) 10 일까지 (원천징수 선택 계좌내 배당 등) 도민세 주식등 양도소득할(所得割) 10 일까지 상각자산 신고, 주택용지 신고 인정장기우량주택 감액 신고 31 일까지	특별구민세 제 4 기	
2 월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제 4 기		증여세 신고 2 월 1 일~3 월 15 일
3 월	개인사업세 신고 15 일까지 사업소세(개인) 15 일까지 지방소비세(개인사업자) 31 일까지	특별구민세 신고 15 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2 월 16 일~3 월 15 일 소비세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3 월 31 일까지
매월	도(都) 담배세 골프장 이용세 경유인취세 도민세 이자할(利子割) 도민세 배당할(配当割) 10 일까지 숙박세	특별구민세 (급여소득에서의 특별 징수분) 6 월~다음해 5 월 특별구 담배세 광산세 입욕세	소득세(원천징수분) 1 월~12 월 주세 국가담배세 · 담배특별세 취발유세 · 지방취발유세 국제관광여객세
수시 (일정기일)	법인사업세 자동차세 법인도민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부동산 취득세 수렵세 사업소세(법인) 지방소비세(법인)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월할(月割)과세분)	특별구민세 (퇴직소득에서의 특별 징수분) (공적연금 등의 특별 징수분)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법인세 상속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자동차증량세 소비세(법인) 특별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 지방법인세

(주1)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기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이 그 기한이 됩니다.

(주2) 각 시정촌(市町村)의 시정촌(市町村)민세,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의 납기 등은 10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3) 개인의 도민세 소득할 · 균등할 등은 특별구민세와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4) 지방소비세는 소비세(국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주5) 소득세 또는 특별구민세(주민세)를 신고한 분은 개인사업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6) 특별법인사업세 신고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사업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주7) 지방법인특별세 신고는 2019년 9월 30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사업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주8)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년도 이후 새로운 과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9) 소득세 이외에 복구특별소득세가 과세됩니다.(90페이지 참조)

(주10) 상림환경세는 2024년도부터 과세되며 특별 구민세와 함께 징수됩니다.

(주11) 도쿄도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숙박에 대한 숙박세 과세를 정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12) 상기 일람표는 도쿄 23구의 납부기한입니다.

목 차

우리들과 세금	1	여러분이 납부하는 도세와 그 용도	4
---------------	---	--------------------------	---

도세	
생활과 세금	
개인 도민세 ·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6
* 개인주민세의 급여에서의 특별징수란? ...	7
도민세 이자할(利子割)	15
도민세 배당할(配当割)	16
도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所得割)	17
지방소비세(도부현(道府県)세) · 소비세(국세) ..	18
직업과 세금	
개인사업세	19
법인사업세	22
특별법인사업세(국세)	25
지방법인특별세(국세)	26
법인도민세 · 시정촌(市町村)민세	27
사업소세	29
광구세	31
고정자산세(상각자산)	31
* 전자신고 · 전자납세 안내	33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취득세	34
* 부동산 관련 세금	37
고정자산세(토지 · 가옥)	38
도시계획세	49
특별토지보유세	50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51
*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52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구시정촌(区市町村)세)	53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55
경유인취세	59
* 부정경유는 범죄입니다!	60
레저와 세금	
골프장이용세	61
수렵세	61
도(都)담배세	62
숙박세	63
* 도쿄도 세제조사회	64

국세	
소득세	65
법인세	67
지방법인세	67
증여세	68
상속세	70
자동차중량세	71
등록면허세	72

구시정촌(区市町村)세의 개요	
개인주민세(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73
법인주민세(시정촌(市町村)민세)	73
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73
입욕세	73

납세와 과세에 대하여	
납세와 과세에 대하여	74

감면에 대하여	
감면에 대하여	81

도쿄도세에 관한 증명 등의 수속에 대하여	
도세에 관한 증명 등의 종류	83
납세증명서를 취득하려면	84
평가증명서 등의 발행 · 열람을 신청하려면 ...	85
* 사회보장 · 세번호 마이넘버 제도에 대하여	88

2020 년도 지방세제 개정 등의 개요	
2020 년도 지방세제의 개정(개요)	8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경제 대책 세제조치(지방세)	90
동일본대지진 복구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조치 ..	90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납세가 어려워진 분에게	91

관할 도세사무소 등의 일람	
관할 도세사무소 등 일람	92

관공청에 관한 안내	
도세사무소 · 도세지소	93
도세종합사무센터 · 자동차세사무소 · 지청(支庁) (도서(島嶼)지역)	99
구청(区役所) · 시청(市役所) · 정촌 사무소(町村役場) ..	101
세무서	102
도쿄법무국 (본국 · 지국 · 출장소)	103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 고정자산세의 납기 등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 고정자산세의 납기 등 ..	104

세금에 관한 상담은?	
세금에 관한 상담은?	105

우리들과 세금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체에서 수행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외교와 사법을 비롯하여 산업과 경제 등 전국적인 건지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체는 우리들의 지역사회와 밀착된 교육, 보건위생, 도시정비, 상하수도, 경찰·소방 등 복지 및 생활환경 위주의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이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회비」와 같은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세금

일본국 헌법은 제 30 조에서 「국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84 조에서는 「새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의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정하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부과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세금의 약속 사항

세금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는 다음 5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 세 주 체	과세권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 자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県), 구시정촌(区市町村) 등)
과 세 객 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 행위 또는 사실 등
납 세 의 무 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된 개인 또는 법인
과 세 표 준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수량 또는 금액으로 표시한 것
세 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 일정 금액에 의한 경우와 일정 비율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세율의 종류 ● 표준세율...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재정상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다른 세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한세율...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세율 ● 일정세율...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외의 세율로 정할 수 없는 세율 ● 임의세율...지방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세율

그 밖에 언제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총의에 근거한 약속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의 분류방식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의 주요 분류방식	국 세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자치체에 납부하는 세금 (도부현(道府県)세와 시정촌(市町村)세로 분류)
	직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동일한 경우의 세금 (소득세, 주민세 등)
	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다른 경우의 세금 (소비세, 담배세 등)
	보통세	일반적인 재원으로 충당되는 세금 (주민세, 고정자산세 등)
	목적세	특정 용도로 한정하여 충당되는 세금(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등)

다음 페이지의 지방세 중에서 색의 세목이 도세입니다. 시정촌(市町村)세 중에는 23 구 내에서는 도세로 취급하는 세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시정촌(市町村)의 업무에 속하는 소방이나 상하수도 등의 사무를 23 구 내에서는 도(都)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시정촌(市町村)민세 상당분과 고정자산세 및 특별토지보유세* 등 3 세목의 수입액 및 법인사업세 교부 대상액의 55.1%는 23 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각 구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년도 이후 과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과세와 납세의 구조

도세를 과세하고 그것을 납세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4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세와 같이 하나의 세금에 여러 가지 납세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 류	방 법	이 방법으로 납세하는 세금
신고납부	납세자가 납세할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도민세·법인사업세* ^{1,2} ,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경유인취세(자기 소비분 등), 사업소세, 도담배세, 지방소비세 ³ , 특별토지보유세* ⁴
특별징수 (신고납입)	도교도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할 의무를 부여받은 분(특별징수의무자)이 납세자로부터 판매대금 등과 함께 세금을 예치한 후 그 예치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개인주민세(급여소득자 등)* ⁵ , 도민세 이자할(利子割)·배당할(配当割)·주식 등 양도소득할(所得割), 골프장이용세, 경유인취세(원매업자·특약업자의 인도분), 숙박세
보통징수	도세사무소장 등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과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면 그에 따라 납부합니다.	개인주민세(개인사업자 등)* ⁵ , 개인사업세,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연액과세분),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광구세
증지징수	신고서 등에 증지를 붙여서 납부하거나 증지를 대신해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수렵세,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월할과세(신고등록)분)

*1 특별법인사업세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사업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2 지방법인특별세는 2019년 9월 30일까지 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사업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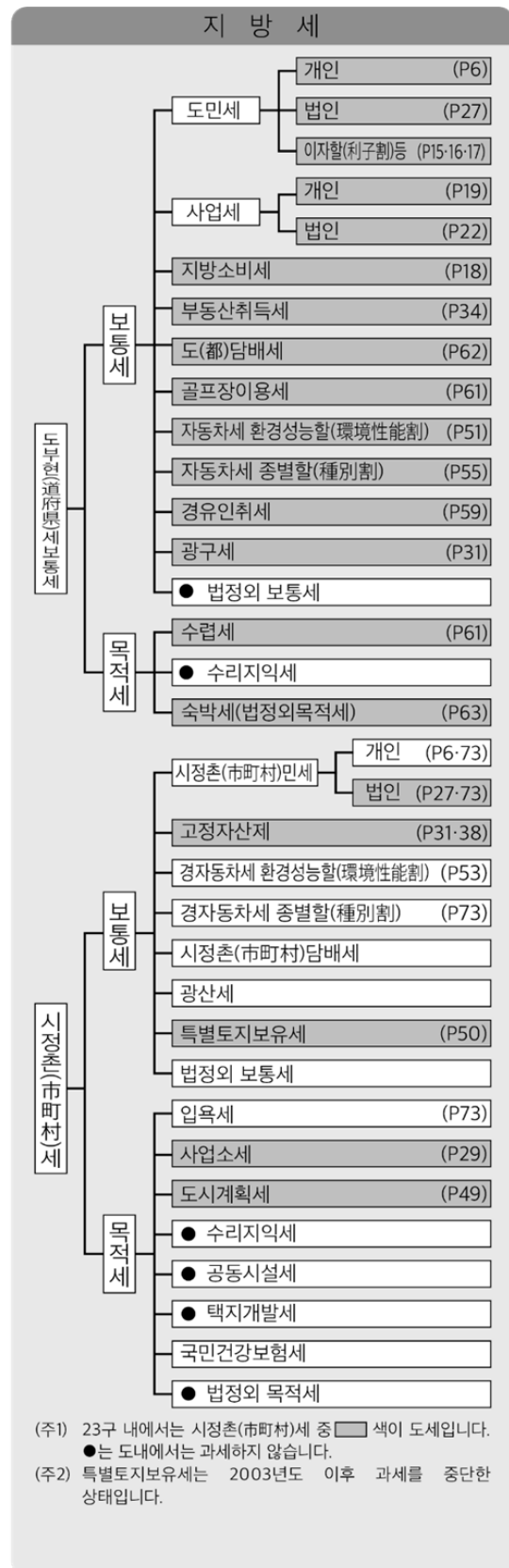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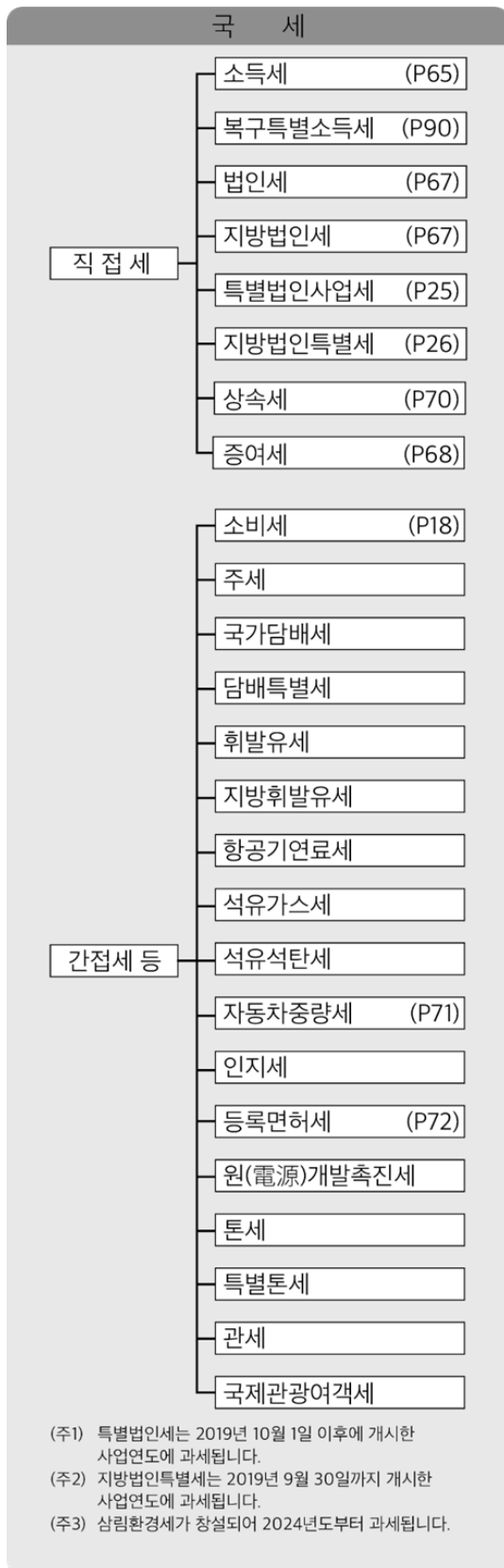
*3 지방소비세는 소비세(국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4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년도 이후 과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5 개인주민세는 도민세와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를 합산하여 구시정촌(区市町村)이 부과·징수합니다.

●세금의 종류

(2020년 4월 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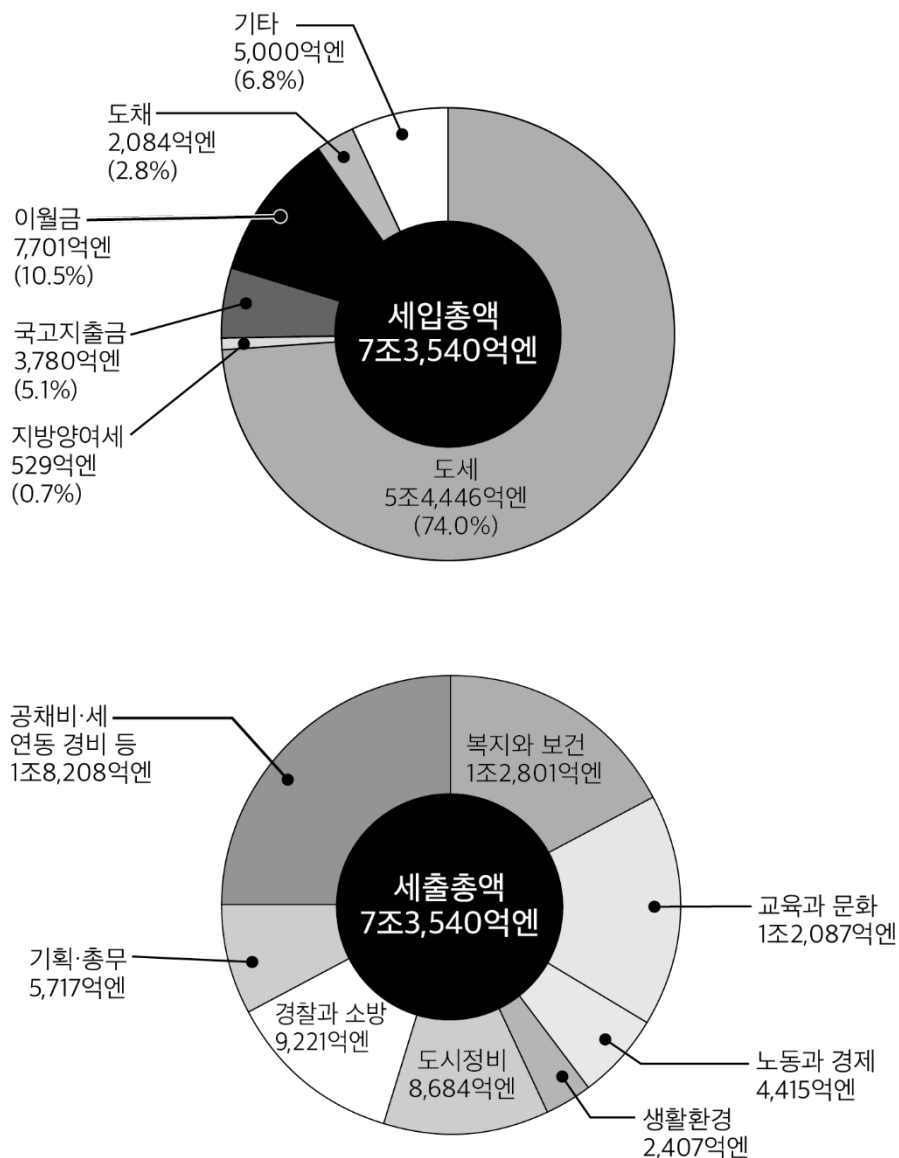
여러분이 납부하는 도세와 그 용도

도정(都政)을 지탱하는 도세

도쿄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나 도쿄 2020 올림픽 연기에 대한 대응에 더하여 『『미래의 도쿄』 전략 비전』에 내세울 도쿄의 모습을 목표로 「성장」과 「성숙」이 양립된 도쿄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도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도세 외에 국고지출금과 도채(都債)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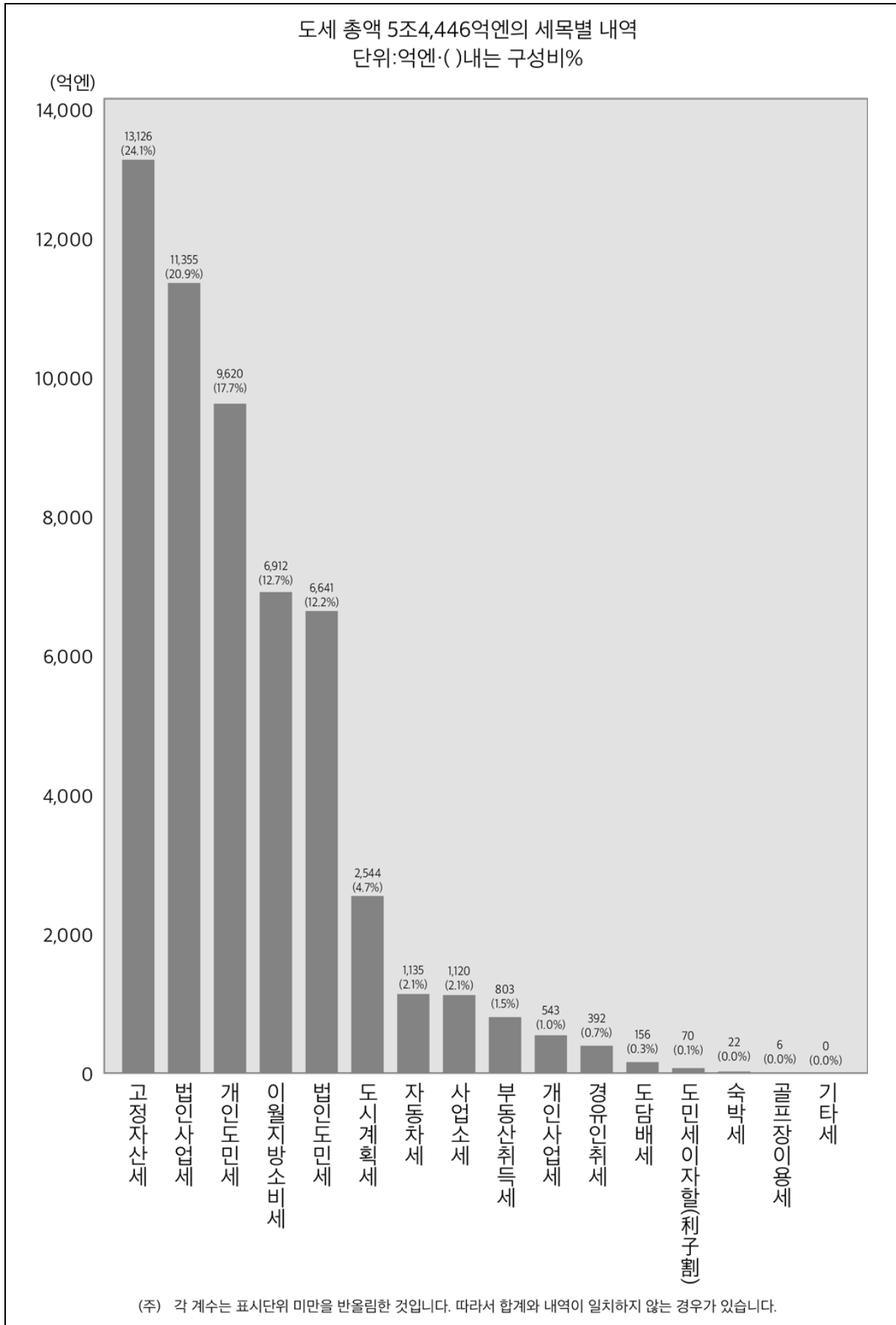
2020 년도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7 조 3,540 억엔이며, 그중 74.0%에 해당하는 5 조 4,446 억엔이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도세입니다.

●2020 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내역



(주) 각 계수는 표시단위 미만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 년도 도세 수입 전망 (당초예산)



생활과 세금

개인의 도민세·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개인 도민세와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를 일괄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주민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나 구시정촌(区市町村)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밀착된 행정 서비스의 소요경비를 주민의 능력(담세력)에 따라 광범위하게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주민세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所得割)」과 정액으로 과세되는 「균등할(均等割)」이 있습니다. 소득할과 균등할에 관해서는 1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가 있는 분이 과세의 대상이 되며, 각 구시정촌(区市町村)이 도민세와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를 일괄해서 과세 및 징수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사무소·가옥과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중, 해당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할(均等割)만 과세됩니다.

그 밖에, 개인의 도민세에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자할(利子割)」과 「배당할(配当割)」 「주식 등 양도소득할(所得割)」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5~17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납세하실 분]

구 분	소득할(所得割)	균등할(均等割)
1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가 있는 분	○	○
1월 1일 현재 도내에 사무소·가옥과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임차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 해당 구시정촌(区市町村) 내에 주소가 없는 분	×	○

○…과세대상

×…과세대상 외

[납세액]

(1) 소득할(所得割)액 + (2) 균등할(均等割)액 = 1년간의 세액

(1) 소득할액

총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	소득공제*1	×	세율(10%*2)	}	세액공제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		×	세율(P.8 참조)		

*1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순으로 공제합니다.

*2 세율

도 민 세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4%	6%

(주1) 분리과세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2) 각각의 소득금액은 손실의 이월공제를 한 다음의 금액입니다.

(주3)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7페이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10페이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 균등할(均等割)액*

도민세액(1,500 엔)

+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액(3,500 엔)

*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지방자치체의 방재대책에 총당하기 위해 도민세·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의 균등할액에 각각 500엔이 가산됩니다.

[납세시기와 방법]

- ▶ 급여소득자 :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급여에서 매달 특별징수됩니다. (7 페이지 참조)
- ▶ 공적연금 등 수급자(65 세 이상):연금 급부액에서 특별징수됩니다.
- ▶ 상기 이외 : 구시정촌(区市町村)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연 4 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104 페이지 참조)

●개인주민세의 신고는?

3 월 15 일까지 전년 1 년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의 소득을 1 월 1 일 현재의 주소지가 있는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신고합니다. 단, 이하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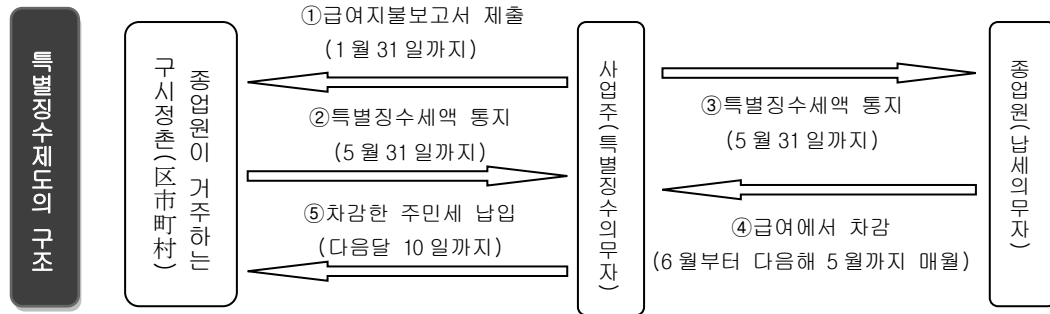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분
- 급여소득 또는 공적연금 등에 의한 소득 이외에는 소득이 없으며 지불보고서를 주소지가 있는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제출하신 분

<공적연금 등에 관한 확정신고 불요제도와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00 만엔 이하인 분 중, 기타 소득금액이 20 만엔 이하인 분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분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좌측에 기재된 확정신고 불요제도에 근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주민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①공적연금 이외에 소득이 있는 분 ②의료비공제, 잡손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분

개인주민세의 급여 특별징수란?

개인주민세의 급여 특별징수란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같이 사업주(급여지불자)가 매월 종업원(납세의 무자)의 급여에서 개인주민세를 차감하여 종업원을 대신해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법인·개인에 관계 없이 사업주(급여지불자)는 특별징수 의무자로서 전 종업원에 대해 개인주민세를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는 종업원이 거주하는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으면 연 12회의 납기를 연 2회로 할 수 있습니다. (납기 특례)

○올 도교 특별징수추진 선언 -주민세는 급여 특별징수로!-

도내의 모든 62구시정촌(区市町村)은 2017년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특별징수 의무자 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주민세 PR 캐릭터
제이किन

소득금액이란?

전년 1년간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개요)	비 고
이 자 소 득 ^{*1}	외국 은행 등에 맡긴 예, 저금의 이자 등	(수입금액)	
배 당 소 득 ^{*2}	주식이나 출자의 배당 등	(수입금액) -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부채의 이자)	
부 동 산 소 득	지대, 집세 등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 업 소 득	농업, 상업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급 여 소 득	회사원의 급여 등	(수입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급여소득공제액은 8 페이지 참조
양 도 소 득 ^{*3}	부동산 및 주식 등 이외의 자산 양도에 의한 소득	(총수입금액) - (취득비 + 양도비용) - (특별공제액)	장기양도소득은 1/2 이 과세대상
일 시 소 득	퀴즈의 상금 등	(총수입금액) -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 - (특별공제액)	1/2 이 과세대상
잡 소 득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공적연금, 기타)	공적연금 ...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 (공적연금 등 공제액)	공적연금 등 공제액은 8 페이지 참조
		기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도민세 이자할(15 페이지 참조) 또는 도민세 배당할(16 페이지 참조)로서 특별징수 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족회사 판정의 기초가 된 주주 등이 받는 사채의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서 주민세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총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2 배당소득 가운데 배당할이 특별징수된 상장주식 등(16 페이지 참조)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합과세로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해 총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소득과 관련한 배당할의 액수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12 페이지(5) 참조). 또, 분리과세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8 페이지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의 배당, 전체의 3%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거액 주주가 받는 배당 등에 관해서는 종합과세로서 주민세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3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8 페이지 참조).

●급여소득공제액 산출방법(속산표)

급여 등 수입금액	급여 소득공제액
162 만 5,000 엔 이하	65 만엔
162 만 5,000 엔 초과 · 18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40%
180 만엔 초과 · 36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30% + 18 만엔
360 만엔 초과 · 66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20% + 54 만엔
660 만엔 초과 · 1,00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10% + 120 만엔
1,000 만엔 초과	220 만엔

(주 1) 실제로는 수입금액이 660 만엔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별표 제 5 에 따라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주 2) 상기 표의 공제액은 2020 년도분 주민세 계산까지 적용됩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액 산출방법(속산표)

연령구분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공적연금 등 공제액
65 세 이상인 경우	330 만엔 미만	120 만엔(최저공제액)
	330 만엔 이상 · 410 만엔 미만	수입금액 ×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 이상 · 770 만엔 미만	수입금액 × 15% + 78 만 5 천엔
	770 만엔 이상	수입금액 × 5% + 155 만 5 천엔
65 세 미만인 경우	130 만엔 미만	70 만엔
	130 만엔 이상 · 410 만엔 미만	수입금액 ×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 이상 · 770 만엔 미만	수입금액 × 15% + 78 만 5 천엔
	770 만엔 이상	수입금액 × 5% + 155 만 5 천엔

(주 1) 공적연금 등이란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은급, 적격퇴직연금, 확정거출연금 등을 말합니다.

(주 2) 연령은 전년 12 월 31 일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3) 상기 표의 공제액은 2020 년도분 주민세 계산까지 적용됩니다.

(2) 기타 소득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개요)	비 고
산 림 소 득	산림 채벌이나 임목을 팔았을 때의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액)	
퇴 직 소 득 ^{*1}	퇴직수당, 일시은급 등	{(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자세한 것은 13 페이지 참조
분리과세(손익통산 불가) ^{*2}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총수입금액) - (취득비 + 양도비용) - (특별공제액)	자세한 것은 13, 14 페이지 참조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 ^{*3*4}	(총수입금액) - (취득원가 + 제비용등)	세율 5%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3%、도민세 2%)
	선물거래와 관련되는 잡소득등	(순이익)	세율 5%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3%、도민세 2%)
	상장주식등의 이자소득·배당 소득 ^{*3*4}	이자소득 ... (수입금액) 배당 소득 ... (수입금액) -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세율 5%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3%、도민세 2%)

* 1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퇴직에 의해 소득의 발생한 해에 과세하는 현년분리과세로 되어 있습니다(13 페이지 참조).

* 2 손익 통산이란, 각종 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일정한 룰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소득과 플러스의 소득을 통산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은 손익 통산됩니다.

* 3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 가운데 원천징수 선택 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도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17 페이지 참조)이, 상장주식 등의 이자소득·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할(16 페이지 참조)이 특별 징수되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소득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리과세로서 신고해, 소득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소득과 관련되는 주식 등 양도소득할액·배당할 액수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12 페이지(5) 참조).

* 4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배당 소득과 양도소득 등과의 사이에 손익 통산됩니다.

* 5 상장주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과세되지 않는 경우(비과세) 는?

[소득할(所得割), 균등할(均等割) 모두 비과세]

- (1)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
 (2) 장애인, 미성년자, 혹은 편부모인 경우로 전년 1년간의 합계소득금액*1이 125 만엔 이하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연간 수입이 204 만 4,000 엔 미만)인 분
 (3) 전년 1년간의 합계소득금액이 구시정촌(区市町村)의 조례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인 분
 (A)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 $$35 \text{ 만엔} \times (\text{본인} \cdot \text{동일 생계 배우자} \cdot \text{부양친족수 합계}) + 21 \text{ 만엔} \text{ 이하}$$
- (B)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 35 만엔 이하
 (주) (2), (3)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퇴직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소득할(所得割)은 과세됩니다.
 위의 계산식은 23 구 내의 경우입니다. 23 구 외에 사시는 분은 균등할(均等割)액이 비과세가 되는 합계 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시정촌(市町村)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득할(所得割)이 비과세]

전년 1년간의 총소득금액 등*2이 아래의 액수 이하인 분

(A)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35 \text{ 만엔} \times (\text{본인} \cdot \text{동일 생계 배우자} \cdot \text{부양친족수 합계}) + 32 \text{ 만엔} \text{ 이하}$$

(B)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 35 만엔 이하

(주)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소득할(所得割)은 과세됩니다.

*1 손실의 이월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소득을 말합니다.

*2 손실의 이월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을 말합니다.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수입은?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은 급여소득에 해당되며 주민세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3 구 내에 거주하며 부양친족이 없는 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연간수입	세금 과세 여부		
	주민세		소득세(참고)
	소득할	균등할	
100 만엔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00 만엔 초과 · 103 만엔 이하	과세	과세	비과세
103 만엔 초과	과세	과세	과세

(주) 23 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 거주하시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균등할액이 비과세가 되는 소득금액이 다릅니다.

(연간수입 93 만엔, 96.5 만엔, 100 만엔 중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市町村)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득공제란?

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세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세하시는 분의 부양친족수, 질병이나 재해 등에 의한 지출 등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종 류	2020 년도 주민세의 소득공제액	(참고) 2019 년분 소득세의 소득공제액
잡손공제	아래의 (1)과 (2) 중에서 많은 쪽의 금액 (1) 손실액(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 - 총소득 금액 등 × 10% (2) 재해관련지출 금액 - 50,000 엔	왼쪽 내용과 같음 (주) 총소득금액 등에 의해 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2019 년에 지불한 의료비 (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 (총소득금액 등) × 5% (10 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10 만엔) 공제한도액은 200 만엔 <의료비 공제의 특례*> (2019 년 중에 지불한 일정한 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매 비용(보험금 등의 보전액 제외)-12,000 엔 공제한도액은 88,000 엔	왼쪽 내용과 같음 (주) 총소득금액 등에 의해 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중에 지불한 의료비 액수 등으로 계산)
사회보험료공제	2019 년 중에 지불한 금액	2019 년 중에 지불한 금액
소규모기업 공제 등 부금공제	2019 년 중에 지불한 금액	2019 년 중에 지불한 금액
생명보험료공제	(1) 일반 생명보험료 (2011 년 이전에 가입) 한도액 35,000 엔 (2012 년 이후에 가입) 한도액 28,000 엔 (2)개호의료보험료 (2012 년 이후에 가입) 한도액 28,000 엔 (3) 개인연금보험료 (2011 년 이전에 가입) 한도액 35,000 엔 (2012 년 이후에 가입) 한도액 28,000 엔 (1)+(2)+(3) 한도액은 합계 70,000 엔	(2011 년 이전에 가입) 한도액 50,000 엔 (2012 년 이후에 가입)..... 한도액 40,000 엔 (2012 년 이후에 가입) 한도액 40,000 엔 (2011 년 이전에 가입) 한도액 50,000 엔 (2012 년 이후에 가입) 한도액 40,000 엔 (1)+(2)+(3) 한도액은 합계 120,000 엔
지진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 최고 25,000 엔 경과조치로서 2006 년 말까지 체결한 장기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한 지불 보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손해보험료 공제를 적용. 최고 10,000 엔 지진보험료 공제와 경과조치를 병용하는 경우 최고 25,000 엔	 최고 50,000 엔 경과조치로서 2006 년 말까지 체결한 장기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한 지불 보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손해보험료 공제를 적용. 최고 15,000 엔 지진보험료 공제와 경과조치를 병용하는 경우 최고 50,000 엔
장애인공제	본인 · 동일생계 · 부양친족 (1 명당) 26 만엔 (본인이 특별장애인인 경우 30 만엔) (동일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동거 특별장애인의 경우 53 만엔)	 27 만엔) (..... 40 만엔) (..... 75 만엔)
편부모공제*2*3	본인이 편부모에 해당 26 만엔 특정한 편모 30 만엔	 27 만엔 35 만엔
근로학생공제*2	본인이 근로학생에 해당 26 만엔	 27 만엔
배우자공제*2	 최고 33 만엔 70 세 이상의 배우자 최고 38 만엔	 최고 38 만엔 최고 48 만엔
배우자특별공제*2	 최고 33 만엔	 최고 38 만엔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전 페이지에서)

종 류	2020 년도 주민세의 소득공제액	(참고) 2019 년분 소득세의 소득공제액
부양공제*2	일반 부양친족(16 세 이상 19 세 미만)..... 33 만엔	 38 만엔
	특정부양친족(19 세 이상 23 세 미만) 45 만엔	 63 만엔
	일반 부양친족(23 세 이상 70 세 미만) 33 만엔	 38 만엔
	노인부양친족(70 세 이상) 38 만엔	 48 만엔
	노인부양친족 중 동거노친 등(70 세 이상) ..45 만엔	 58 만엔
기초공제*4	 33 만엔	 38 만엔

*1 의료비 공제의 특례를 받을 경우에는 통상의 의료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편부모공제에서 부양공제까지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3 2021년도분 이후의 개인주민세부터 과부 공제 제도가 변경됩니다.

*4 2020년도분 이후의 소득세 및 2021년도분 이후의 개인주민세에 대해 기초 공제액은 10만엔 인상되지만 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급여소득 2,595만엔)이 넘을 경우 공제액이 체감·소실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하며 주민세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1) 배당공제

종합과세가 되는 일정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2) 외국세액공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그 나라의 소득세나 주민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과세된 경우에는 일정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3) 기부금세액공제

지방 자치체나 일정한 단체 등에 대하여 2,000엔 이상을 기부한 경우 개인주민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 세액공제액
①지방자치체에 대한 기부금(후루사토 납세)*1*2	기본공제액(10%) + 특례공제액*1
②도쿄도 공동모금회 및 일본적십자사(도쿄도 지부)에 대한 기부금	기본공제액(10%)
③도도부현이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3	기본공제액(도민세분 4%)
④구시정촌(区市町村)이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4	기본공제액(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분 6%)
⑤도도부현 및 구시정촌(区市町村)이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3*4*5	기본공제액(도민세분 4%+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분 6%)

*1 2019년도 세금 제도 개정으로 인해 총무대신이 기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를 「후루사토 납세」(특별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창설되어 2019년 6월 1일 이후의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지방자치체의 신청에 의해 지정됩니다).

*2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지출된 도쿄도에 대한 기부금은 「후루사토 납세」(특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기부금은 기준과 같이 기본 공제액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타 지방자치체에 대해서는 각 자치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3 도쿄도에서는 소득세의 공제대상 기부금 중 도내에 주요 사무소를 가진 공익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4 구시정촌(区市町村)이 조례로 지정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구시정촌(区市町村)에 문의해 주십시오.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경제 대책 세제조치로 인해 기부금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제조치의 개요에 대해서는 9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계산방법]

1.기본공제액(대상이 되는 모든 기부금에 적용)

도민세분 : (A 또는 B 중 낮은 금액 - 2,000엔)×4%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분 : (A 또는 B 중 낮은 금액 - 2,000엔)×6%

A: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합계액

B:총소득금액 등의 30%

2.특례공제액(「후루사토 납세」에 한해 적용)

「후루사토 납세」는 상기 1의 기본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단, 한도액은 개인주민세 소득 할액(조정공제액 공제 후의 금액)의 20%입니다.

도민세분:(「후루사토 납세」의 합계액 - 2,000엔)×(90%-소득세 세율*×1.021)×5분의 2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분:(후루사토 납세의 합계액 - 2,000엔)×(90%-소득세 세율*×1.021)×5분의 3

*소득세 세율은 65페이지에서 적용되는 세율

[신청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영수증·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개인 주민세만 과세된 분은 거주지의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주민세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 4월부터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 등이 「후루사토 납세」를 할 때, 기부하는 지방자치체에 공제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단 원스톱 특례를 신청한 분이라도 5단계를 넘는 지방자치체에 기부한 경우나 그 밖의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지출된 도쿄도에 대한 기부금은 「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지방자치체에 대해서는 각 자치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4) 조정공제

2007 년도의 세원이양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인적공제액의 차이에 따른 부담 증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소득할(所得割)액에서 감액됩니다.

① 개인주민세의 합계 과세소득금액이 200 만엔 이하인 경우

아래의 (A) 또는 (B) 중 적은 금액의 5%(도민세 2%,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3%)를 공제

(A) 인적공제액의 차의* 합계액

*인적공제액의 차란 장애인공제, 편부모공제, 근로학생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의 소득세와 주민세 간의 공제액의 차를 말합니다.

(B) 개인주민세의 합계 과세소득금액

② 개인주민세의 합계 과세소득금액이 200 만 엔을 초과한 경우

*

{인적공제액의 차의 합계액-(개인주민세의 합계과세소득금액-200 만엔)}의 5%(도민세 2%,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3%)를 공제

*단 2,500엔 미만의 경우는 2,500엔(도민세 1,000엔,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1,500엔).

(5) 배당할(配当割)액·주식 등 양도소득할(所得割)액 공제

도민세 배당할(16 페이지 참조), 주식 등 양도소득할(17 페이지 참조)이 특별징수된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할로 과세되며 특별징수된 배당할액·주식 등 양도소득할액이 소득할액에서 공제됩니다. 다 공제 할 수 없는 경우는 균등할(均等割)에 충당 또는 환급됩니다.

개인주민세의 주택용자 특별 공제

2009 년부터 2021 년 12 월 말까지 입주하신 분 중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주택용자공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주민세(소득할)에서 공제됩니다.

[대상자] 2009 년부터 2021 년 12 월 말까지 입주하여 소득세의 주택용자공제를 받고 있는 분 중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주택용자공제액이 남아 있는 분

[공제액] 다음 중 금액이 적은 쪽

①전년 소득세의 주택용자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

②전년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 × 7%(최고 13.65 만엔)*

* 입주한 날이 2014 년 3 월 31 일까지인 경우 등 × 5%(최고 9.75 만엔)

(주) 이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나 연말조정으로 소득세의 주택용자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퇴직금 등의 퇴직소득은 타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불받을 때는 소득세·복구특별소득세와 함께 주민세가 특별징수됩니다.

(1) 세액

$$\left(\text{퇴직수당 등의 금액} - \text{퇴직소득공제액} \right) \times \frac{1}{2} \times \left(\begin{array}{l} \text{소득할(所得割)의 세율} \\ \text{도민세} \quad 4\% \\ \text{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quad 6\% \end{array} \right)$$

(2) 퇴직소득공제액

근속연수*2	공제액
20년 이하	40만엔 × 근속연수 (80만엔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80만엔)
20년 초과	70만엔 × (근속연수 - 20년) + 800만엔

*1 임원 등으로서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는 1일이라도 1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

도내 23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속연수 30년의 급여소득자가 2020년 중에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1,600만 엔을 지급받은 경우

- 공제액 = 70만엔 × (30년 - 20년) + 800만엔 = 1,500만엔
-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퇴직금의 액수 = 1,600만엔 - 1,500만엔 = 100만엔
- 세액 = 도민세 100만엔 × 1/2 × 4% = 20,000엔 (100엔 미만은 버림)
구민세 100만엔 × 1/2 × 6% = 30,000엔 (100엔 미만은 버림) } 계 50,000엔

■ 연도 중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으로 인해 특별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잔여 주민세는 구시정촌(区市町村)에서 발송한 납세통지서로 납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징수가 됩니다.

- (1)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해서 특별징수를 신청한 경우
-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분 중, 잔여 세액을 퇴직금 등에서 일괄적으로 특별징수를 신청한 경우
- (3) 다음 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퇴직한 분 중, 5월 31일까지 지불될 예정인 퇴직수당 등이 잔여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단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은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그 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토지(토지 상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나 건물 등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세하는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한 해의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하여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인 경우는 장기양도소득, 5년 이하인 경우는 단기양도소득이 되며 세액의 계산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1) 과세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text{양도가액} - \left(\text{취득비} + \text{양도비용} \right) - \text{특별공제액} = \text{과세양도소득}$$

●취득비

매각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구입대금이나 구입수수료 등입니다. 실제 취득비가 명확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5% 미만인 경우는 양도가액의 5%로 합니다.

●양도비용

매각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 인지대금, 퇴거료, 건물을 헐어 토지를 매각했을 때 소요된 철거비용 등입니다.

●특별공제액

14 페이지 표에 기재된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라도 공제액의 한도는 5,000만엔입니다.

○ 특별공제액

내 용	공 제 액
①수용대상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5,000 만엔
②본인 거주용 가옥 및 그 부지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¹	3,000 만엔
③피상속인이 거주용으로 제공하던 가옥 및 그 부지인 토지 등을 양도했을 경우* ¹	3,000 만엔
④도시재생기구 등이 실시하는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2,000 만엔
⑤특정주택지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500 만엔
⑥농지보유의 합리화 등을 위해 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	800 만엔
⑦저이용·미이용토지 등을 양도했을 경우* ²	100 만엔

*1 ②와 ③에 해당하는 양도가 있었을 경우의 특별 공제액은, 그 양도와 관련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3,000만엔이 한도가 됩니다.

*2 ⑦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09년 및 2010년 중에 취득한 토지 등의 장기양도소득액에서 1,000만엔 특별공제제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에서 그해의 1월 1일에 있어 소유 기간이 5년을 넘는 것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해 중의 해당 양도와 관련되는 장기 양도소득 금액으로부터 1000만엔(그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엔에 못 미친 경우는, 그 양도소득)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2) 장기양도소득 세액의 산출방법

(A) 일반 장기양도소득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 × 5%(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

(B) 우량 주택지의 조성과 관련된 장기양도소득

(상기 100 만엔~5,000 만엔의 특별공제를 적용한 경우는 다음 (a), (b)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이 2,000 만엔 이하인 경우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 × 4%(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0.21%)

(b)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이 2,000 만엔을 넘을 경우

80 만엔(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204.2 만엔)+(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 - 2,000 만엔)
× 5%(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

○ 거주용 재산의 양도에 대한 장기양도소득의 경감세율 특례

양도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본인 거주용 가옥과 그 부지를 양도한 경우의 장기양도소득은 그해의 전년 또는 전전년에 이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3,000만엔의 특별공제를 차감한 과세 장기양도소득에 대해 아래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 장기양도소득	세 율
6,000 만엔 이하 부분	4%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0.21%)
6,000 만엔 초과 부분	5%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 15.315%)

(주1) 친족 등에게 양도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2) 세율경감특례는 특정거주용재산의 신규구입특례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단기양도소득 세액의 산출방법

(A) 일반단기양도소득

과세 단기양도소득금액 × 9% (소득세 · 복구특별소득세 30.63%)

(B)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양도에 부과되는 단기양도소득

과세 단기양도소득금액 × 5% (소득세 · 복구특별소득세 15.315%)

2020 년도 주민세 계산방법은?

[예시 설정]

- 본인의직업.....회사원
- 가족구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자녀는20세와 17세,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소득이 없음)
- 주소.....도쿄 23 구 내
- 2019 년의 급여수입
.....5,000,000 엔
- 사회보험료 지불액
.....500,000 엔
- 생명보험료 지불액
(2012년 1월 1일 이후 가입)
.....75,000 엔
- 개인연금보험료 지불액
(2012년 1월 1일 이후 가입)
.....75,000 엔
- 지진보험료 지불액
.....20,000 엔
- 지방자치체에 지불한 기부금
(원스톱 특례제도 적용신청 없음).....30,000 엔
- 도쿄도 및 구시정촌(区市町村)이 조례로 지정한 학교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20,000 엔

		내용	예시의 경우	설 명
소득 합계	소득	수입금액 (A)	5,000,000엔	
		급여소득공제액 (B)	1,540,000엔	(B) 8페이지 참조
		소득금액 (C)	3,460,000엔	(A) - (B)
	소득공제	사회보험료공제 (D)	500,000엔	(D) 2019년 중의 지불액
		생명보험료공제 (E)	56,000엔	(E) 일반 생명보험료공제 28,000엔 + 개인연금보험료공제28,000엔(10페이지 참조)
		지진보험료공제 (F)	10,000엔	(F) 지진보험료 20,000엔 × 1/2
		배우자공제 (G)	330,000엔	(G) 10페이지 참조
		부양공제 (H)	780,000엔	(H) 450,000엔(20세)+330,000엔(17세)
		기초공제 (I)	330,000엔	(I) 11페이지 참조
		공제액계 (J)	2,006,000엔	(D) ~ (I)의 합계
	과세총소득금액 (K)		1,454,000엔	(C) - (J)(1,000엔 미만 버림)
	소득 할액	도민세 (L)	58,160엔	(K) × 4%
		구민세 (M)	87,240엔	(K) × 6%
		세액공제	조정공제(도민세) (N) 6,600엔 조정공제(구민세) (O) 9,900엔	(N), (O) 12페이지 참조
		공제	기부금공제(도민세) (P) 11,429엔 기부금공제(구민세) (Q) 17,143엔	(P), (Q) 11페이지 참조
		합계		
지방세	지방세	도민세 (R)	1,500엔	
		구민세 (S)	3,500엔	(R), (S) 6페이지 참조
합계 세액	합계	도민세 (T)	41,600엔	(L)-(N)-(P)+(R)(100엔 미만 버림)
		구민세 (U)	63,600엔	(M)-(O)-(Q)+(S)(100엔 미만 버림)
		합계 (V)	105,200엔	(T)+(U)

도민세 이자할(利子割)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예,자금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국세인 소득세, 복구특별소득세와 함께 도민세로서 이자할이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이자 등을 받고 있는 개인*

*2016년 1월 1일 이후 법인 등에 지불되는 이자 등은 이자할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액]

$$\boxed{\text{이자 등의 액수}} \times \boxed{5\%}$$

(주)그 외 소득세 및 복구특별 소득세(15.315%)가 부과됩니다.

[납세시기와 방법]

금융기관 등이 이자 등을 지불할 때 특별징수하며 1개월분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 특별징수한 세액의 신고 납입 등에 대해 주오(中央) 도세사무소(도민세 이자할 담당부서)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특정 공사채(국채, 지방채, 상장 공사채, 공모 공사채 등) 이외의 공사채의 이자*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예금 이자

○근부처 예금 등의 이자 등

* 동족회사 판정의 기초가 된 주주 등이 받는 사채의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제외됩니다(7 페이지 참조).

(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을 받아야 할 특정 공사채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할의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배당할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민세 배당할(配当割)

상장주식등의 배당 등 및 할인채의 상환 차익 등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 국세인 소득세·복구특별 소득세와 함께, 도민세로서 배당할이 과세됩니다. 또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등 (NISA, 적립형 NISA 및 주 니어 NISA)에 있어서의 비과세 계좌내 또는 미성년 계좌 내의 소액 상장주식의 배당 등은 비과세가 됩니다. (17 페이지 참조)

[납세하실 분]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및 할인채의 상환차익을 지불받는 날 현재, 도쿄도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납세액]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및
할인채의 상환 차익의 액수

×

5%

(주)그 외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15.315%)가 부과됩니다.

[납세 시기와 방법]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및 할인채의 상환 차익을 지불하는 상장회사 등이, 그 지불시에특별징수하며 1 개월 분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 특별징수한 세액의 신고 납입 등에 대해 주오(中央) 도세사무소(도민세 이자할 담당부서)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 특정 계좌 외의 할인채의 상환 차익(발행 시에 과세한 것을 제외한다.)

* 상장주식 등이란?

상장된 주식 등*, 투자신탁으로 그 설정과 관련되는 수익권의 모집이 공모에 의해 행해진 것, 특정 공사채(국채, 지방채, 상장 공사채, 공모 공사채 등) 등

※전체의 3%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거액 주주가 받는 배당 등은 종합과세(7 페이지 참조)대상이므로 배당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 2016 년 1 월 1 일 이후, 특정 공사채등이 상장주식등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선택계좌에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을 받았을 경우의 특례

원천징수 선택계좌로 지급받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이하「원천징수 선택계좌내 배당」이라 함) 은 해당 원천징수 선택계좌 외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 배당 등에 부과되는 배당할(配当割) 특례의 개요>

[납세하실 분]

원천징수선택계좌를 통하여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을 지불받을 날이 속한 해의 1 월 1 일 현재 도쿄도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납세액]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 상장주식 등
의 배당 등의 액수*

×

5%

* 원천징수 선택 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으로부터 해당 원천징수 선택 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 손실(17 페이지 참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주)그 외 소득세 및 복구특별 소득세(15.315%)가 부과됩니다.

[납세시기]

배당 등을 지불하는 증권회사 등이 그 배당 등을 교부할 때 특별징수하며 1 년분을 합산하여 다음 해 1 월 10 일까지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도민세배당할 과세 대상 중 원천징수 선택계좌를 통해서 교부를 받을 배당 등*

* 2016 년 1 월 1 일 이후, 특정 공사채 등을 원천징수 선택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특정 공사채의 이자 등도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민세 주식 등 양도소득할(所得割)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 등(연간 매매 손익을 통산한 후의 이익)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와 함께 도민세로서 주식 등 양도 소득할이 과세됩니다. 또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등(NISA, 적립형 NISA 및 주니어 NISA)의 비과세계좌 내 또는 미성년자 계좌 내의 소액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은 비과세가 됩니다.

[납세하실 분]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소득 등을 지불받을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납세액]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소득 등의 액수 × 5%

(주)그 외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15.315%)가 부과됩니다.

[납세시기와 방법]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 등의 지불을 하는 증권회사 등이 그 소득을 지불할 때 특별징수하고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 특별징수한 세액의 신고 납입 등에 대해 **주오(中央) 도세사무소(도민세 이자할 담당부서)**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16 페이지 참조) 양도에 의한 소득 등*

* 2016년 1월 1일 이후, 특정공사채 등을 원천징수 선택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특정공사채등의 양도이익 등(할인채 상환으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 등의 양도 손실과 배당 등의 손익 통산

원천징수 선택 계좌 내에 상장주식 등의 양도 손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원천징수 선택 계좌 내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과 손익 통산됩니다(16 페이지 참조).

또한, 해당 원천징수 선택 계좌와의 상장주식 등과의 손익 통산이나 양도 손실의 이월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주민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6, 8 페이지 참조).

(주) 2016년 1월 1일 이후, 특정 공사채 등의 양도 손실이나 이자 등도 손익 통산 등의 대상이 됩니다.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적립형 NISA) 및 미성년자 소액투자 비과세제도(주니어 NISA)

비과세 계좌 내 또는 미성년자 계좌 내의 소액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과 양도이익은 도민세에 대해서도 비과세입니다.

또한, 소액 상장주식 등에는 상장된 주식 등이나 공모 등 주식투자신탁 등이 포함되고, 특정 공사채나 공사채 투자신탁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NISA	적립형 NISA	주니어 NISA*
비 과 세 대 상	비과세 계좌 내 소액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양도이익	비과세 계좌 내의 일정 공모 등 주식투자신탁의 배당 등, 양도이익	미성년자 계좌 내 소액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양도이익
개 설 자 (대 상 자)	계좌 개설년 1월 1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거주자 등		계좌를 개설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만 20세 미만 또는 그 해에 출생한 거주자 등
계좌개설 가능 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42년 12월 31일까지 25년간	2016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8년간
지 불 제 한	없음		있음
신 규 입 수 가 능 계 좌 수 (해)	1인 1계좌 (적립형 NISA와 선택제)	1인 1계좌 (NISA와 선택제)	1인 1계좌
비 과 세 투 자 액	신규 투자액은 연간 120만엔 한도	신규 투자액은 연간 40만엔 한도	신규 투자액은 80만엔 한도
비 과 세 기 간	5년간	20년간	5년간
비 과 세 투 자 총 액	최대 600만엔(120만엔×5년간)	최대 800만엔(40만엔×20년간)	최대 400만엔(80만엔×5년간)

(주) 주니어 NISA는, 3월 31일에 18세인 해의 전년 12월 31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지불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불을 받은 경우 지불 시에 배당금 지불이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할과 주식 등 양도소득할이 과세됩니다.

지방소비세(도부현(道府県)세) · 소비세(국세)

상품 ·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비세가 과세되는 거래에는 지방소비세도 함께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만 상품 등의 가격에 추가로 포함되어 차례차례 전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세하실 분]

(1)국내거래

자산의 양도 · 대여 및 역무의 제공을 사업으로 행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2)수입거래

외국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자

납세사무의 부담경감조치 등

사업자의 납세사무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사업자 면세점(免税点)제도…기준기간(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전년, 법인의 경우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액(세금 불포함)이 1,000 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주)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000 만엔 이하라도 특정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000 만엔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 면세점(免税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특정기간이란 개인사업자는 전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 내 1000 만엔의 판정은 과세매출액 대신 급여 등 지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 간이과세제도…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5,000 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사전 신고를 통해 과세매출액에서 납부할 소비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자가 사업자 면세점(免税点) 제도 및 간이 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세 기간중에 고액 특정 자산의 매입등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면세점 제도가 일정 기간 적용되지 않고,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간이 과세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액 특정 자산이란 하나의 거래 단위에 대해, 과세 매입과 관련된 지불 대가의 액수(세금 별도)가 1,000 만엔 이상인 재고정리 자산 등을 말합니다.)

[납세액]

- ▶ 소비세율 10% (국가분:7.8%, 지방분:2.2%)인 경우의 계산 방법

(경감세율 8% (국가분:6.24%, 지방분:1.76%))

(주)경감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주류·외식 등을 제외한 음식료품이나 정기 구독 계약이 체결된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1)국내거래

①소비세액(국세)

$$\begin{aligned} \text{일반과세: } & \boxed{\text{과세 매출액(세금 불포함)}} \times \boxed{\text{세율 7.8\% (6.24\%)}} - \boxed{\text{과세매입액(세금 포함)}} \times \boxed{\frac{7.8/110}{(6.24/108)}} \\ \text{간이과세: } & \boxed{\text{과세 매출액(세금 불포함)}} \times \boxed{\text{세율 7.8\% (6.24\%)}} - \\ & \left(\boxed{\text{과세매출액(세금 불포함)}} \times \boxed{\text{세율 7.8\% (6.24\%)}} \times \boxed{\text{간주매입률*}} \right) \end{aligned}$$

* 사업구분	제 1 종사업 (도매업)	제 2 종사업 (소매업 등)	제 3 종사업 (제조업 등)	제 4 종사업 (기타 사업)	제 5 종사업 (서비스업 등)	제 6 종사업 (부동산업)
간주매입률	90%	80%	70%	60%	50%	40%

$$\text{②지방소비세액(도부현세)} : \boxed{\text{소비세액}} \times \boxed{\text{세율 22/78}}$$

(2)수입거래

$$\text{①소비세액(국세)} : \boxed{\text{(관세과세가격+관세 등)}} \times \boxed{\text{세율 7.8\% (6.24\%)}}$$

$$\text{②지방소비세액(도부현세)} : \boxed{\text{소비세액}} \times \boxed{\text{세율 22/78}}$$

[납세시기와 방법]

(1)국내거래

- ▶ 개인 사업 자 …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으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 법 인 …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주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비세 연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및 임의의 중간신고제도를 적용한 사업자는 중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 2) 법인세 신고 기간 연장 특례 적용을 받는 법인은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속한 과세 기일부터 신고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수입거래

원칙적으로 외국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인수할 때까지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지방소비세(도부현세)는 소비세(국세)와 함께 세무서나 세관에 신고 ·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102 페이지 참조)에 문의해 주십시오.

직업과 세금

개인 사업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등으로 정해진 사업(법정업종)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법정업종에는 70개 업종이 있으며 거의 모든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사업용 자산(기계나 비품 등)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31 페이지의 고정 자산세(상각자산) 사항도 참조해 주십시오.

[납세하실 분]

도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설립하고 법정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

(주)사무소 등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분의 주소 또는 주거지 중에서 그 사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이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간주됩니다.

[납세액]

세액의 계산법은 20 페이지의 「납세액」을 참조해 주십시오.

[납세 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8월과 11월의 연 2회 납세하며 8월에 도세사무소·지청(支庁)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각 납기에 납부합니다.

이 외에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한 경우, 경정·결정을 한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상기와는 별도로 납세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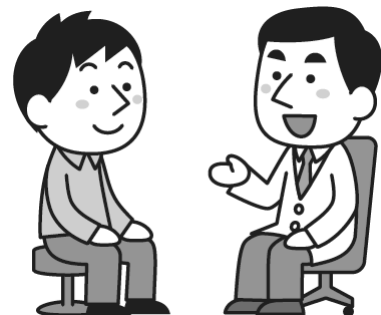
납세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74~77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3 구 내의 개인사업세에 대한 도세사무소 관할구역 일람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지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지요다(千代田)구, 분쿄(文京)구	시나가와(品川)도세사무소	시나가와(品川)구, 오타(大田)구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주오(中央)구, 고토(江東)구, 에도가와(江戸川)구	시부야(渋谷)도세사무소	시부야(渋谷)구, 메구로(目黒)구, 세타가야(世田谷)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도시마(豊島)도세사무소	도시마(豊島)구, 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 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구	아라카와(荒川)도세사무소	아라카와(荒川)구, 기타(北)구, 아다치(足立)구
다이토(台東)도세사무소	다이토(台東)구, 스미다(墨田)구, 가쓰시카(葛飾)구		

(주 1) 하치오지(八王子)도세사무소·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92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 2) 주된 사무소 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의 창구에서도 신고서·신청서 등을 접수합니다.



●개인 사업세의 법정업종과 세율

구분	세율	사업의 종류			
제1종사업 (37 업종)	5%	물품판매업	운송취급업	요리점업	유람소업
		보험업	선박정계장업	음식점업	상품거래업
		금전임대업	창고업	주선업	부동산매매업
		물품임대업	주차장업	대리업	광고업
		부동산임대업	청부업	중개업	흥신소업
		제조업	인쇄업	도매상업	안내업
		전기공급업	출판업	환전업	관혼상제업
		토석채취업	사진업	공중목욕탕업 (한증탕 등)	-
		전기통신사업	좌석대여업	연극흥행업	-
		운송업	여관업	유기장업	-
제2종사업 (3 업종)	4%	축산업	수산업	신탄제조업	-
제3종사업 (30 업종)	5%	의료업	공증인업	설계감독자업	공중목욕탕업 (센토)
		치과의료업	변리사업	부동산감정업	치과위생사업
		약제사업	세리사업	디자인업	치과기공사업
		수의업	공인회계사업	각종 기예사업	측량사업
		변호사업	계리사업	이용업	토지가옥조사사업
		사법서사업	사회보험노무사업	미용업	해사대리사업
		행정서사업	컨설팅업	클리닝업	인쇄제판업
	3%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침·뜸·유도접골 그 외 의 료업과 유사한 사업	장제사업		-

●납세액

세금액수(세액)는 세무서 등에 제출한 확정신고서 등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left(\begin{array}{|c|} \hline \text{사업소득} \\ \text{또는(및)} \\ \text{부동산소득} \\ \hline (1) \end{array} \right) + \begin{array}{|c|} \hline \text{소득세의 사업} \\ \text{종사자 급여} \\ \text{(공제)액}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개인사업세의} \\ \text{사업종사자} \\ \text{급여(공제)액} \\ \hline (2)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청색신고} \\ \text{특별공제액} \\ \hline (3)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각종} \\ \text{공제액} \\ \hline (4)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세율}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세액} \\ \hline \end{array}$$

(1) 사업소득 또는 (및) 부동산소득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및) 부동산소득으로 사업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청색신고 특별공제액 등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1표 및 청색신고 결산서, 수지내역서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이 해당 소득이 됩니다. (단, 잡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세의 사업종사자 급여(공제)액

사업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전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청색신고의 경우 급여 지불액(소득세의 사업종사자 급여액)
- 백색신고의 경우 배우자는 86만엔이 한도이며 그 외는 1인당 50만엔이 한도

(3) 청색신고 특별공제액

개인 사업세에는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금액이 가산됩니다.

(4) 각종 공제액

① 이월공제

다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주민세, 사업세 중 하나를 일정 기간 내에 매년 신고하여야 합니다.

(A) 손실의 이월공제

청색신고자 중 사업의 소득이 적자(손실)일 경우에는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B) 재해 사업용 자산 손실의 이월공제

백색신고자 중 지진피해, 풍수해, 화재 등으로 사업용 자산의 손실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C)양도손실 공제와 이월공제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기계, 장치, 차량 등. 단, 토지 가옥 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사업 소득의 계산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색신고를 한 분은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사업주 공제

공제액은 연간 290만원(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액)입니다.

(단위:엔)

사업실시 월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사업주 공제액	242,000	484,000	725,000	967,000	1,209,000	1,450,000	1,692,000	1,934,000	2,175,000	2,417,000	2,659,000	2,900,000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업의 인정기준

임대부동산의 규모, 임대료 수입 및 관리 등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동산 임대업·주차장업의 인정과정을 거쳐 과세합니다.

공유 물건의 경우는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 물건 전체의 임대 상황에 의해 인정을 실시하며 세액은 지분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또한 신탁 물건도 임대 건수 등에 포함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주차장업의 인정 기준》

종류·용도 등				임대용 부동산의 규모등(빈방 등을 포함)	
부 동 산 임 대 업	건 물 *1	주 택	①단독주택	동수가 10 동 이상	
			②단독주택 이외	방수가 10 실 이상	
		주 택 이 외	③독립가옥	동수가 5 동 이상	
			④독립가옥 이외	방수가 10 실 이상	
	토 지 *2	⑤주택용		계약 건수가 10 건 이상 또는 임대 총면적이 2,000 ㎡ 이상	
		⑥주택용 이외		계약 건수가 10 건 이상	
	⑦상기 ①~⑥의 임대용 부동산을 여러 종류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⑥의 총합계가 10 이상 또는 ①~⑥ 중 하나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⑧상기 ①~⑦의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규모 등으로 볼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대용 건물의 총바닥면적이 600㎡ 이상이며 동시에 해당 임대용 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연간 1,000 만엔 이상인 경우(관리금, 명의개서료, 갱신료, 사례금, 공익비용, 관리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경기, 유기, 오락, 집회 등을 위해서 기본적 설비를 설치한 부동산(극장, 영화관, 골프 연습장 등)	
일정 규모의 여관, 호텔, 병원 등 특정 업무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물					
주 차 장 업	기탁받아 보관행위를 하는 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가 1 대 이상 (주차 가능 대수를 불문함)	
	건축물·기계식 등의 주차장				
	상기 이외의 주차장*3			주차 가능 대수가 10 대 이상	

*1 독립적으로 구축된 2 개 이상의 방(室)을 보유한 건물은 1 동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방수(室數)에 따라서 인정합니다.

*2 토지의 임대 건수는 하나의 계약에 대해 2 획지 이상의 토지를 임대하고 있을 경우 각각을 1 건으로 인정합니다.

*3 토지를 주차장 용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세의 감면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 교도에서는 저탄소형 도시 실현을 목표로 자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촉진 세제(사업세의 감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세의 신고는?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 등을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신고합니다.

(A)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사업주 공제액을 초과하는 분

(B)이월공제 등을 받는 분

단 소득세의 확정신고나 주민세 신고를 하신 분은 개인사업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서의 「직업명」 및 「사업세에 관한 사항」란에 필요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과세 대상자에게는 납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또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소득세 확정신고나 주민세 신고와 별도로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사망으로 인해 폐지한 경우는 4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세

[납세하실 분]

- ▶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공익법인 등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법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경우

[납세액]

$$\boxed{\text{과세표준액}} \times \boxed{\text{세율}}$$

[납세시기와 방법]

아래의 「신고와 납세」에 따라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도민세와 함께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23 구내의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도민세의 도세 사업소 관할 구역 일람

도세사무소	관할 구역	도세사무소	관할 구역
지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지요다(千代田)구, 분쿄(文京)구	시나가와(品川)도세사무소	시나가와(品川)구, 오타(大田)구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주오(中央)구, 고토(江東)구, 에도가와(江戸川)구	시부야(渋谷)도세사무소	시부야(渋谷)구, 메구로(目黒)구, 세타가야(世田谷)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도시마(豊島)도세사무소	도시마(豊島)구, 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 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구	아라카와(荒川)도세사무소	아라카와(荒川)구, 기타(北)구, 아다치(足立)구
다이토(台東)도세사무소	다이토(台東)구, 스미다(墨田)구, 가쓰시카(葛飾)구		

- (주 1) 하치오지(八王子) 도세사무소·다치카와(立川) 도세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92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 2) 주된 사업소 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 창구에서도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신고와 납세는?

신고의 종류		납세액	신고와 납세의 기한
중간신고*1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법인	(1) 예정신고	이전 사업연도의 세액 ÷ 이전 사업연도의 월수 × 6 ^{*2}	사업연도 시작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가결산에 기초한 중간 신고*3	가결산의 소득* (수입) 금액 × 세율 ※ 외형표준과세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 부가가치액, 자본금 등의 액	
확정신고	-	소득* (수입) 금액 × 세율 - 중간납부액 ※ 외형표준과세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 부가가치액, 자본금 등의 액	사업연도 종료 날로부터 2개월 이내 ^{*4} (정관등의 규정 또는 특별 사정이 있음으로 인해 상기 기간내에 결산에 대한 정시 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법인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연결신고 법인은 4개월 이내), 다만 연장 신청이 필요) ^{*5}

- (주 1) 타 도부현(道府県)에도 사무소 등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종업원수 혹은 사무소·사업소수와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관계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 각할(各割)별 과세표준의 총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주 2) 2010년 9월 30일 이전에 해산한 법인 신고에 대해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만).

*1 아래의 법인은 중간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연결신고법인은 제외)으로서 법인세의 중간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②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연결신고법인으로서 이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세 개별 귀속 지불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6개월 상당액이 10만엔 이하인 법인

※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경우라도, 외형표준과세법인 또는 수입금액과세 법인은 중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특별법인

④ 청산 중인 법인(청산 중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2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최초의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사업세의 예정신고세액과 법인사업세를 함께 신고하게 된 특별법인사업세의 예정신고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사업세..... 전 사업연도의 세액 ÷ 전 사업연도의 월수 × 6.3

(2) 특별법인사업세..... 법인사업세의 전 사업연도의 세액* ÷ 전 사업연도의 월수 × 2.3

* 특별법인사업세 창설 후의 최초의 사업연도에 관한 예정신고이므로 전 사업연도의 세액은 법인사업세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3 다음 법인은 가결산을 바탕으로 중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① 가결산에 의한 중간신고세액이 예정신고에 의한 사업세액을 초과하는 법인

② 소득할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연결신고법인

*4 잔여재산이 확정된 경우의 확정신고 신고 기한은 잔여재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와 잔여재산 최종분배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5 회계감사인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한편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연도 종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연결 신고 법인은 4개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정시 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사가 지정하는 월수의 기간 내가 됩니다(다만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세율은?

도에서는 초과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과 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불균일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세의 구분			세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시 작하는 사업연도		2016년 4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불균일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의 세율 (표준세율)	초과세율	불균일과세를 적용하 는 법인의 세율 (표준세율)	초과세율	불균일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의 세율 (표준세율)	초과세율
A	B 및 C 이외의 사업	①	보통법인(② 및 ③의 법인을 제외한다), 공익법인등, 인격이 없는 사단인 등	소득 할 *1	적용 경감세율	연간 400 만엔 이하의 소득	3.5	3.75	3.5	3.75	3.4	3.65
						연간 400 만엔 초과 · 연간 800 만엔 이하의 소득	5.3	5.665	5.3	5.665	5.1	5.465
						연간 800 만엔을 초과하는 소득	7.0	7.48	7.0	7.48	6.7	7.18
				경감세율 부적용 법인								
		②	특별법인 [법인세법 별표 3 에든 협동조합 등(농업협동조합, 신용금고 등) 및, 의료법인 등]	소득 할 *1	적용 경감세율	연간 400 만엔 이하의 소득	3.5	3.75	3.5	3.75	3.4	3.65
						연간 400 만엔을 초과하는 소득	4.9	5.23	4.9	5.23	4.6	4.93
						경감세율 부적용 법인						
		③	외형표준 과세법인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이 1 억엔을 넘는 보통 법인(특정 목적 회사, 투자법인, 일반사단 · 일반재단 법인은 제외)]	소득 할 *1	적용 경감세율	연간 400 만엔 이하의 소득	(0.4)	0.495	(0.4)	0.495	(0.3)	0.395
						연간 400 만엔 초과 · 연간 800 만엔 이하의 소득	(0.7)	0.835	(0.7)	0.835	(0.5)	0.635
						연간 800 만엔을 초과하는 소득	(1.0)	1.18	(1.0)	1.18	(0.7)	0.88
						경감세율 부적용 법인						
				부가가치할*2		—	1.26	—	1.26	—	1.26	
	자본할*3			—	0.525	—	0.525	—	0.525			
B	전기공급업(소매 전기사업 등 · 발전사업 등을 제외), 가스 공급업, 보험업 또는 무역보험업			수입할*4		1.0	1.065	1.0	1.065	0.9	0.965	
C	소매 전기사업 등 또는 발전사업 등	① 및 ②의 법인	수입할*4		0.75	0.8025	1.0	1.065	0.9	0.965		
			소득할*1		1.85	1.9425						
		③의 법인	수입할*4		(0.75)	0.8025	(1.0)	1.065	(0.9)	0.965		
			부가가치할*2		—	0.3885						
			자본할*3		—	0.1575						

(주1) ()안의 세율은 도쿄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의 기준 법인소득할액·기준법인 수입할액 계산에 사용됩니다.

(주2) 2016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의 세율에 대해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심시오(일본어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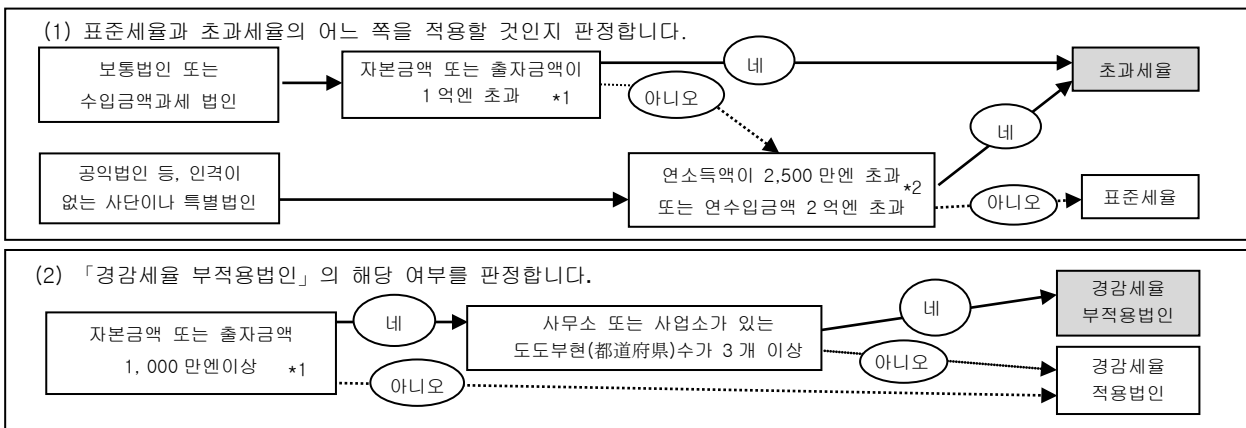
*1 소득할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부가가치할은 각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자본할은 각 사업연도의 자본금 등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수입할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표 보는 방법】 외형표준 과세법인



*1 사업연도 또는 연결 사업연도 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산한 법인에 대해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심시오(일본어 만).

*2 소득할(所得割)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연소득액, 수입할(収入割)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연수입금액에 따라 각각 판정합니다. 또한,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복수의 도도부현에 있는 분할 법인은 분할 전의 과세표준이 되는 연소득액·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립·설치·이동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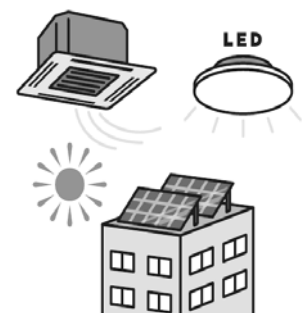
다음의 경우는 기간 내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고의 종류	신고의 기간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내에 처음으로 사무소 등을 마련했을 경우	개시·설치일로부터 15 일 이내
도내의 사무소 등을 폐지했을 경우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는 등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폐지·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
법인세에 대하여 연결납세의 승인 등이 있었던 경우	승인 등의 날로부터 15 일 이내

신고서 양식은 도쿄도 주세국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일본어 만).

중소기업자대상 에너지절약 촉진세제(사업세의 감면)

대 상 자		「지구 온난화 대책 보고서」 등을 제출한 중소기업자 ※자본금 1 억엔 이하의 법인 등, 개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대상설비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경우 ① 특정지구온난화대책 사업소 등 이외의 사업소에서 취득한 것 ・ 특정지구온난화대책 사업소 등이란 3 년 연속 소비에너지량 1,500kl 이상의 사업소를 말합니다. ② 「에너지 절약 설비 및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감가상각자산) 중 환경국이 도입 권장 기기로 지정한 설비(지정된 도입 권장 기기는 환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본어 만))
감면액	법인	설비의 취득가격(상한 2,000 만엔)의 2 분의 1 을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사업세액에서 감면 (단 당기 법인사업세액의 2 분의 1 을 한도로 함) ※1 감면할 수 없었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등의 법인사업 세액에서 감면 가능 ※2 설비를 취득한 사업연도와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법인사업세액에서 감면됩니다.
	개인	설비의 취득가격(상한 2,000 만엔)의 2 분의 1 을 취득한 해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과세되는 개인사업 세액에서 감면 (단 개인사업세액의 2 분의 1 을 한도로 함) ※1 다 감면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개인사업세액에서 감면 가능 ※2 설비를 취득한 해와 사업용으로 사용한 해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에 과세된 개인사업세액에서 감면됩니다.
대상기간	법인	2010 년 3 월 31 일부터 2026 년 3 월 30 일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설비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
	개인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설비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
감면수속		사업세의 납부기한(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그 날)까지 감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신청기한이 지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특별법인사업세(국세)

특별법인사업세는 2019 년 10 월 1 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특별법인사업세는 국세입니다만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법인사업세와 함께 부과, 징수합니다.

[납세하실 분]

법인사업세(소득할 · 수입할)의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2019 년 10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액]

$$\boxed{\text{법인사업세액(소득할액 · 수입할액)}^{*1*2}} \times \boxed{\text{세율}}$$

*1 표준 세율로 계산한 소득할액(기준법인 소득할액) · 수입할액(기준법인 수입할액)입니다.

또한 표준 세율이란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경우에 통상 따라야 할 세율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말합니다.

*2 소매 전기사업 등 · 발전사업 등에 관한 소득할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법인의 종류	세율(%)	
		2020 년 4 월 1 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2019 년 10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기준법인 소득할액	외형표준과세법인 · 특별법인 이외의 법인	37	37
	외형표준과세법인	260	260
	특별법인	34.5	34.5
기준법인 수입할액	소매 전기사업 등 또는 발전사업 등을 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	30	30
	소매 전기사업 등 또는 발전사업 등을 하는 법인	40	30

[납세시기와 방법]

법인사업세와 함께 법인사업세와 동일한 방법(22 페이지 참조)으로 도도부현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지방법인특별세(국세)

지방법인특별세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지방법인특별세는 국세입니다만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법인사업세와 함께 부과, 징수합니다.

[납세하실 분]

법인사업세(소득할 · 수입할)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200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또한,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해산한 법인의 청산 소득 과세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납세액]

$$\boxed{\text{법인사업세액(소득할액 · 수입할액)*}} \times \boxed{\text{세율}}$$

*표준 세율로 계산한 소득할액(기준법인 소득할액) · 수입할액(기준법인 수입할액)입니다.
또한 표준 세율이란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경우에 통상 따라야 할 세율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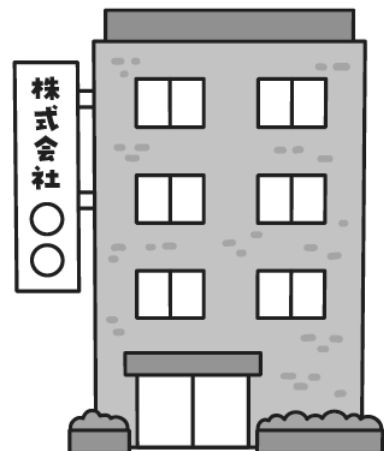
[세율]

과세표준	법인의 종류	세율(%)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기준법인 소득할액	외형표준과세 법인 이외의 법인	43.2	43.2	43.2
	외형표준과세 법인	414.2	93.5	67.4
기준법인 수입할액		43.2	43.2	43.2

(주)2014년 9월 30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의 세율에 대해서는 도코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납부시기와 방법]

법인사업세와 함께 법인사업세와 동일한 방법(22 페이지 참조)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법인 도민세·시정촌(市町村)민세

도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이 있는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주민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세와 시정촌(市町村)민세의 2종류가 있으며 각각 「법인세할(法人税割)」과 「균등할(均等割)」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세하실 분】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이나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등.
또는 도내에 기숙사, 보양소, 숙박소, 클럽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도 균등할은 과세됩니다.

【납세액】

▶ 법인세할(法人税割)액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 × 세율 * 연결신고법인의 경우는 개별귀속법인세액

▶ 균등할(均等割)액

28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납세시기와 방법】

주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 등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관할 도세사무소 등은 92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3 구내의 법인은 도쿄도의 특례를 적용하여 시정촌(市町村)민세 상당분과 함께 도민세로 관할 도세사무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시정촌(市町村)에 있는 법인은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도민세를 신고하여 납부함과 동시에 시청(市役所), 정촌사무소(町村役場)에도 시정촌(市町村)민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세율은?

(1) 법인세할(法人税割)*1

도쿄도에서는 법인세할의 초과 과세를 실시하는 한편,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이 1 억엔 이하인 법인 중 법인세 액수가 연 1,000 만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되는 불균일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세율(%)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불균일 과세 적용법인의 세율 (표준과세)	초과세율	불균일 과세 적용법인의 세율 (표준과세)	초과세율
도 민 세	23 구내에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7.0 $\left(\begin{array}{l} \text{도민세 상당분 1.0 +} \\ \text{시정촌(市町村)민세 상} \\ \text{당분 6.0} \end{array} \right)$	10.4 $\left(\begin{array}{l} \text{도민세 상당분 2.0 +} \\ \text{시정촌(市町村)민세 상} \\ \text{당분 8.4} \end{array} \right)$	12.9 $\left(\begin{array}{l} \text{도민세 상당분 3.2 +} \\ \text{시정촌(市町村)민세 상} \\ \text{당분 9.7} \end{array} \right)$	16.3 $\left(\begin{array}{l} \text{도민세 상당분 4.2 +} \\ \text{시정촌(市町村)민세 상} \\ \text{당분 12.1} \end{array} \right)$
	시정촌(市町村)에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1.0	2.0	3.2	4.2
	시정촌(市町村)민세	6.0~8.4*2		9.7~12.1*2	

*1 법인세할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각 시정촌(市町村)의 조례로 표준세율과 제한세율 사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주) 2014년 9월 30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의 세율에 대해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2) 균등할(均等割)*1

(A) 도쿄도 내의 사무소 등이 23구 내에만 있을 경우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에 법인도민세 상당분과 시정촌(市町村)민세 상당분을 합산한 아래 표 A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구 이외에도 23구 내에 사무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 A의 금액에 따라서 사무소 등이 소재하는 특별구(特別区) 수에 따라 아래 표 C의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합니다.

(B) 도쿄도 내의 사무소 등이 시정촌(市町村)에만 있을 경우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아래 표 B의 금액을, 시청(市役所)·정촌사무소(町村役場)에 아래 표 C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C) 도쿄도 내의 사무소 등이 23구 내와 시정촌(市町村) 양쪽에 있을 경우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아래 표 B의 금액에 사무소 등이 소재 하는 특별구의 수에 따라 아래 표 C의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합니다. 또한 시청(市役所), 정촌사무소(町村役場)에 아래 표 C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법인 등의 구분				도민세 A	도민세 B	시정촌(市町村)민세 C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 수익사업을 하는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등				7 만엔	2 만엔	5 만엔	
상기 이외의 법인	자본금 등의 액수 *2	1 천만엔 이하	구시정촌(区市町村)내의 종업원수	50 명 이하	7 만엔	2 만엔	5 만엔
				50 명 초과	14 만엔		12 만엔
		1 천만엔 초과 ~ 1 억엔 이하		50 명 이하	18 만엔	5 만엔	13 만엔
				50 명 초과	20 만엔		15 만엔
		1 억엔 초과 ~ 10 억엔 이하		50 명 이하	29 만엔	13 만엔	16 만엔
				50 명 초과	53 만엔		40 만엔
		10 억엔 초과 ~ 50 억엔 이하		50 명 이하	95 만엔	54 만엔	41 만엔
				50 명 초과	229 만엔		175 만엔
		50 억엔 초과		50 명 이하	121 만엔	80 만엔	41 만엔
				50 명 초과	380 만엔		300 만엔

*1 균등할은 자본금 등의 금액이나 종업자 수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지방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5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등의 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이 자본금액 및 자본준비금액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자본금액 및 자본준비금액의 합산액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균등할액을 산출합니다.

(주) 보험업법에 규정된 상호회사의 경우, 자본금 등의 액수가 순자산액이 됩니다.

●중간신고 납부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 납부를 합니다.(연결신고법인의 경우 가결산에 기초한 중간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세의 중간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1 및 기숙사 등만이 소재하는 경우는 중간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할액은, 「전 사업연도의 세액 × 6 ÷ 전 사업연도의 월수*2」로 계산합니다.

*1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연결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세 개별귀속 지불액등을 기준으로 하는 6 개월 상당액이 10 만엔 이하인 경우

*2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최초의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할(法人税割)의 예정신고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민세 법인세할(法人税割).....전 사업연도의 세 × 1.9 ÷ 전 사업연도의 월수

(2) 시정촌(市町村)민세 법인세할(法人税割).....전 사업연도의 세액 × 3.7 ÷ 전 사업연도의 월수

사업소세

도시환경 정비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도시에 한해서 과세되는 시정촌(市町村)세입니다. 도쿄도에서는 23구에 대해 특례로 도세가 적용되어 과세되고 있으며 그 외에 무사시노시(武蔵野市), 미타카시(三鷹市), 하치오지시(八王子市), 마치다시(町田市)의 4개 시*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 해당 4개 시의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각 시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납세하실 분]

▶ 자산할(資産割)

23구 내 전역에서 사용하는 사업소 등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면세점(免税点))를 초과하는 규모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종업자할(従業者割)

23구 내 전역의 사업소 등의 종업자수의 합계가 100명(면세점(免税点))을 초과하는 규모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납세액]

▶ 자산할(資産割)

사업소 바닥면적(㎡) × 세율 600 엔

▶ 종업자할(従業者割)

종업자 급여총액 × 세율 0.25%

[납세 시기와 방법]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의 경우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3월 15일까지 23구 내 주요 사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세·법인의 도민세 등과는 달리 신청기한의 연장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소세(23구 내)의 도세사무소 관할 구역 일람

도세사무소	관할 구역
지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지요다(千代田) 구, 분쿄(文京) 구, 기타(北) 구, 아라카와(荒川) 구, 아다치(足立) 구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주오(中央) 구, 다이토(台東) 구, 스미다(墨田) 구, 고토(江東) 구, 가쓰시카(葛飾) 구, 에도가와(江戸川) 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 구, 시나가와(品川) 구, 오타(大田) 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 구, 메구로(目黒) 구, 세타가야(世田谷) 구, 시부야(渋谷) 구, 나카노(中野) 구, 스기나미(杉並) 구, 도시마(豊島) 구, 이타바시(板橋) 구, 네리마(練馬) 구

(주) 주된 사업소 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에서도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사업소 등이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말하며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뿐만 아니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소, 점포, 공장, 창고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점(免税点)의 판정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말일의 현황에 따라서, 개인의 경우는 12월 31일의 현황에 따라서 자산할(資産割), 종업자할(従業者割)별로 판정합니다.

사업소세의 신고

납세 신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 1) 23 구 내의 사업소세 신고에 대해서는 eTAX(엘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전자신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 2) 마이넘버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개인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88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 면세점(免税点) 이하 신고

다음(A)~(C)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의 경우는 사업을 실시한 해의 다음 해 3월15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A)이전 사업연도 또는 전년의 개인 과세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B)23구 내 전역에 소재하는 사업소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800㎡ 초과 1,000㎡ 이하인 경우

(C)23구 내 전역에 소재하는 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 합계가 80명 초과 100명 이하인 경우

(2) 사업소 등의 신설·폐지 신고

23구 내에 사업소 등을 신설 또는 폐지한 분이 신고 의무자가 되며, 신설 또는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소용 가옥의 임대 등의 신고

23구 내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사업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에게 사업소용 가옥을 임대하고 있는 분이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A)새롭게 임대를 하게 되었을 경우

새롭게 임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B)임대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1)~(3)의 23구 내 신고서 제출처

(1) :주요 사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

* 주된 사업소 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2)·(3):신설 혹은 폐지한 사업소 등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업소용 가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

* 신설, 폐지한 사업소 등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업소용 가옥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고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일본어 만).



광구세

지하의 매장광물을 채굴하는 권리(광업권)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도내에 있는 광구에 광업권을 소유한 분

[납세액]

광구의 종류		납세액
사광(砂鑛)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업권의 광구	시굴광구	면적 100아르 마다 연액 200엔*
	채굴광구	면적 100아르 마다 연액 400엔*
사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의 광구	하상(河床)	연장 1,000m마다 연액 600엔
	비 하상(非河床)	면적 100아르 마다 연액 200엔

* 석유 또는 가연성 천연가스를 목적으로 하는 광구는 상기 금액의 2/3 입니다

[납세 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5월. 도세사무소·지청(支庁)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납부합니다.

고정자산세(상각자산)

토지 및 가옥 외의 고정자산(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되는 시정촌(市町村)세로 다마(多摩)·도서(島嶼)지역에 있는 고정자산(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정촌(市町村)이 과세합니다. 그러나 23 구 내에 있는 고정자산(상각자산)에 대한 과세는 특별로 도가 도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각자산이란?

토지, 가옥 이외의 사업용 자산으로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소득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한 경비로 산입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축물, 기계, 기구, 비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자산

자산의 종류	구체적인 예
구 축 물	수변전설비, 포장노면, 정원, 문·담·녹화시설 등의 외구공사, 간판(광고탑 등) 등
기 계 및 장 치	각종 제조설비 등의 기계 및 장치, 기계식 주차 설비(턴테이블 포함) 등
선 박	보트, 낚싯배, 어선, 유람선 등
항 공 기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등
차 량 및 운 반 구	대형특수자동차(분류번호가 [0,00~09 및 000~099], [9,90~99 및 900~999]인 차량)등
공구, 기구 및 비품	컴퓨터, 진열 케이스, 간판(네온사인), 의료기기, 측정 공구, 금형, 이용 및 미용 기기, 칸막이, 룸 에어컨, 응접세트, 레지스터, 자동 판매기 등

[납세하실 분]

1월 1일 현재 상각자산 소유자로서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납세액]

$$\boxed{\text{과세표준액}} \times \boxed{\text{세율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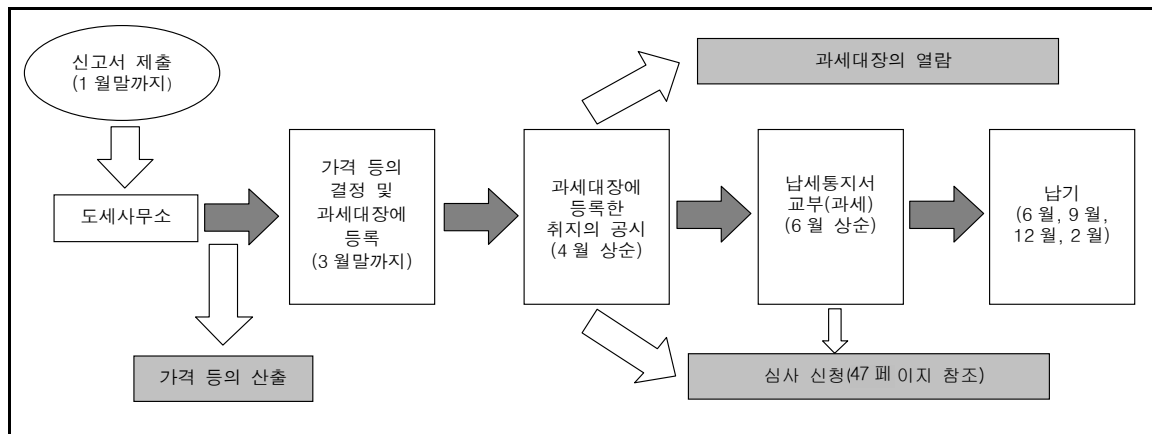
그리고 평가계산 결과 과세표준액이 150만원(면세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납세통지서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납세 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6월, 9월, 12월, 2월의 연 4회. 제 1기 납부 월(6월)에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각 납기에 납부합니다.(각 시정촌(市町村)의 납기는 104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납부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74~77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고부터 과세까지의 흐름



◇신고서 제출

부과기일(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각자산을 동년 1월 31일까지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각자산의 신고서 작성은, 법인은 고정자산대장이나 법인세신고서(별표16(1)(2) 등)를, 개인은 소득세 신고서의 결산서나 고정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변전설비나 축전지설비 등의 건물 부속설비와 기계식 주차장설비(텐테이블 포함), 외구 공사나 광고탑 등의 구축물은 상각자산으로서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무소 등을 빌려 쓰고 있는 분(임주자)의 경우

임주자 등이 설치한 내장, 조작, 건축설비 등에 대해서는 상각자산으로서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액의 감가상각자산의 취급

○ =신고대상 × =신고대상 외

상각방법 \ 취득가액	10 만엔 미만	10 만엔 이상 20 만엔 미만	20 만엔 이상 30 만엔 미만	30 만엔 이상
개별감가상각	○	○	○	○
중소기업특례	○	○	○	
일시손금산입	×			
3년 일괄상각	×	×		

(주) 취득가액이 20 만엔 미만인 자산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신고·전자납세 안내

도쿄도에서는 법인의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의 도민세, 23구 내의 사업소세, 23구 내의 고정자산세(상각자산)에 대하여, eLTAX(지방세 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신고 등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의 도민세, 23구 내의 사업소세에 대하여 eLTAX를 이용한 전자납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4월 1일 현재)

	법인의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의 도민세	사업소세 (23구 내)	고정자산세(상각자산) (23구 내)
전자 신고	○예정신고 ○중간신고 ○확정신고 ○균등할(均等割) 신고 ○청산확정신고 ○수정신고 등	○납부신고 ○수정신고 ○면세점(免税点) 이하 신고 ○사업소용 가옥 임대 등 신고	○상각자산 신고
전자 신청 · 신고	○법인설립·설치신고 ○이동신고 ○법인사업세 감면신청* ○신고서 제출기한 연장 처분 등의 신고 · 승인 등의 신청 ○법인세에 대한 연결납세승인 등의 신고 등	○사업소 등의 신설·폐지 ○사업소세 감면신청 ○간주 공동사업에 관한 명세 등	—
전자 납세	○본세의 납부 ○연체금 납부 ○가산금 납부 ○예상 납부·가정 납부	○본세의 납부 ○연체금 납부 ○가산금 납부	—

* 중소기업자 대상 에너지절약 촉진세제의 감면수속도 가능합니다.

대법인(사업연도 개시 시점에서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제출하는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법인도민세 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eLTAX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법인의 전자 신고 의무화 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https://www.tax.metro.tokyo.lg.jp/>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에 대하여>

2019년 10월부터 eLTAX를 활용해 모든 지방단체가 한 번의 수속으로 전자 납세를 할 수 있게 되는 지방세 공통 납세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금융 기관 계좌를 지정하여 직접 납부하는 다이렉트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eLTAX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eLTAX 이용시간>

[각종 수속 접수시간] 월~금 8:30~24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2/29~1/3 제외)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및 다음 날인 일요일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수속에 대한 문의>

[eLTAX 홈페이지] <https://www.eltax.lta.go.jp/>

[eLTAX 헬프데스크] 0570-081459(좌측 전화번호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03-5521-0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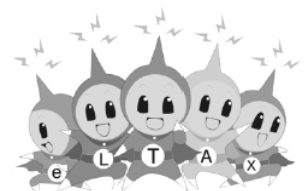
월~금 9시~17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12/29~1/3 제외)

<신고 내용·납세에 대한 문의>

[전자 신고·전자 신청·신고] 관할 도세사무소의 각 세목 담당

[전자 납세] 관할 도세사무소의 징수관리 담당



eLTAX 이미지캐릭터

웹 레인저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취득세

토지나 가옥의 구입, 가옥 건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단 상속에 의해 취득했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세하실 분]

토지나 가옥을 유상·무상 혹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매매, 증여, 교환, 건축(신축·증축·개축) 등에 의해 취득한 분(개인, 법인을 불문함).

[납세액]

$$\boxed{\text{취득한 부동산 가격 (과세표준액)}^{*1}} \times \boxed{\text{세율}^{*2}}$$

*1 2021년 3월 31일까지 택지 등 (택지 및 택지평가 된 토지)을 취득했을 경우는,

$\boxed{\text{취득한 부동산의 가격}} \times 1/2$ 을 과세 표준액으로 합니다.

*2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일	토지	가옥(주택)	가옥(비주택)
200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100		4/100

[납세 시기와 방법]

도세사무소·지청(支庁)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납세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기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납세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74·75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란?

부동산의 가격이란, 총무대신이 정한 고정자산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결정된 가격(평가액)으로, 신증축 가옥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구입가격이나 건축공사비와는 다릅니다.

또한 토지나 가옥을 증여받은 경우나 교환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면세점(免税点)은?

과세표준이 되는 액수가 다음 금액 미만일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		10만엔
가옥	신축, 증축, 개축	23만엔
	기타(매매 등)	12만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가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미등기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의 경감은?

(1) 신축주택의 경우(증축, 개축을 포함.)

[요건] 바닥면적*¹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에서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하 한		상 한
	단독주택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 ²	
임대주택 이외	50㎡ 이상	50㎡ 이상	240㎡ 이하
임대주택	50㎡ 이상	40㎡ 이상	240㎡ 이하

*1 현재의 바닥면적으로 판단하므로 등기 바닥면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맨션 등은 공유부분의 바닥면적을 전유부분의 바닥면적으로 안분한 바닥면적을 포함합니다.

*2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이란 맨션 등 구분소유주택 또는 아파트 등 구조상 독립된 구획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바닥면적 요건의 판정은 독립된 구획마다 실시합니다.

[공제되는 액수] 1,200 만엔*³(가격이 1,200 만엔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

*3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독립된 구획마다 공제됩니다.

장기우량주택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정(認定) 장기우량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300 만엔이 공제됩니다.(2022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세액의 계산] (주택가격 - 공제액) × 세율 3% = 세액

(2) 중고주택의 경우

[요건] 다음 (A)부터 (C)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가격에서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요건	내용
(A) 거주 요건 (주)취득 시에 가족의 현황이 주택 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본인의 거주용으로 취득한 주택 (주택 이외의 가족을 주택으로 리폼한 경우에는 취득 전에 해당 리폼이 완료돼야 합니다)
(B) 바닥면적 요건	50㎡ 이상 240㎡ 이하 (바닥면적 요건의 판정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C) 내진기준요건* ¹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건물 원칙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건축사 등이 실시하는 내진진단에 의하여 신 내진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이 된 경우 (증명을 위한 조사가 <u>주택 취득일 전 2년 이내에</u> 종료되어야 합니다)

*1 상기 조건 중 (C)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중고주택(2014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함)이라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내진수리를 하여 신 내진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 자신의 거주용으로 제공되며 또한 내진개수가 자신의 거주용으로 되기 이전에 완료된 경우는 주택의 세액에서 일정액이 감액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도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 한정) 상세한 내용과 수속은 관할 도세사무소, 지청(支庁)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경제 대책 세제조치에 대해서는 90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제되는 액수]

신축된 날	공제액	신축된 날	공제액
1954년 7월 1일~1963년 12월 31일* ²	100 만엔	1981년 7월 1일~1985년 6월 30일* ²	420 만엔
1964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²	150 만엔	1985년 7월 1일~1989년 3월 31일	450 만엔
1973년 1월 1일~1975년 12월 31일* ²	230 만엔	1989년 4월 1일~1997년 3월 31일	1,000 만엔
1976년 1월 1일~1981년 6월 30일* ²	350 만엔	1997년 4월 1일 이후	1,200 만엔

*2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중고주택은 신 내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에 한합니다.

상기(C)의 요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의 계산] (주택의 가격-공제액)*³ × 세율 3% = 세액

*3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 및 공제액에 그 지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주택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경감은?

35 페이지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경감은?」의 대상이 되는 주택 부지를 취득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토지 세액으로부터 일정 액수가 감액됩니다.

《신축주택용 토지의 취득》

구 분	요 건
주택 신축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단, ①토지의 취득자가 주택의 신축까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토지의 취득자로부터 그 토지를 취득한 분(양도의 상대방)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중 어느 쪽인가에 한정합니다)
주택 신축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A) 주택을 신축한 분이 신축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B) 신축 미사용 주택과 그 부지를 주택 신축 후 1년 이내 (동시 취득을 포함)에 같은 분이 취득한 경우

* 2022년 3월 31일까지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의 신축이 곤란하다고 정령(政令)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1동에 100호 이상의 주택을 가진 공동주택 등으로 신축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 이내

《중고주택용 토지의 취득》

구 분	요 건
주택보다 먼저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동시 취득을 포함)에 그 토지상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보다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분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경감되는 금액》

다음 (A), (B)중 많은 쪽의 금액이 세액에서 경감됩니다.

(A) 45,000 엔 (세액이 45,000 엔 미만인 경우는 그 세액)

(B) $\boxed{\text{토지 } 1\text{㎡당 가격}^*} \times \boxed{\text{주택 바닥면적의 2 배(1 호당 200㎡가 한도)}} \times \boxed{\text{세율 3\%}}$

* 2021년 3월 31일까지 택지 등 (택지 및 택지로 평가된 토지)을 취득한 경우는, 가격을 1/2로 나눈 액수에서 1㎡ 가격을 계산합니다.

(주)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B)에서 산출된 금액에 그 지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경감을 받기 위한 신고는?

주택이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아래 표의 서류(원칙적으로 사본 사용 가능)를 첨부하여 토지, 가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신 축 주 택	건축공사 청부계약서/검사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건물)/평면도(공동주택이나 점포 등 경용 주택의 경우)/장기 우량 주택 인정 통지서(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경우)
중 고 주 택	매매계약서 및 최종대금의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건물)/주민표(마이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 등
주 택 용 토 지	토지매매계약서 및 최종대금의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토지)/상기 신축주택 또는 중고주택의 경감에 필요한 서류

(주)필요에 따라 상기 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예시설정] 2020년 5월에 토지를 포함한 신축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토지면적은 125㎡로 주택의 총바닥면적이 100㎡입니다.
 가격(평가액)은 토지가 72,000,000엔이고 가옥은 12,600,000엔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일까요?

[계산]

가옥	가격 (A)	12,600,000 엔	35 페이지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경감은?」의 요건을 확인 (35 페이지 「공제되는 액수」 참조) (A) - (B) (C) × 세율 3%
	주택 취득의 경감 (B)	12,000,000 엔	
	과세표준액 (C)	600,000 엔	
	납세액	18,000 엔	
토지	가격 (D)	72,000,000 엔	(D) × 1/2 (34 페이지 참조) (E) ÷ 토지의 면적 (E) × 세율 3% (36 페이지 <경감되는 금액> (A) 참조) (F) × (주택바닥면적 × 2 (1호당 200㎡가 한도)) × 세율 3% (H)나 (I) 중에서 높은 쪽의 금액 (G) - (J)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액 (E)	36,000,000 엔	
	1㎡당 가격 (F)	288,000 엔	
	세액 (G)	1,080,000 엔	
	주택용 토지의 경감 (H)	45,000 엔	
	주택용 토지의 경감 (I)	1,728,000 엔	
	경감액 (J)	1,728,000 엔	
	납세액	0 엔	

따라서 납세액은 가옥 18,000엔 + 토지 0엔 = 18,000엔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세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 또는 신축·증축·

개축했을 경우 부동산취득세, 소비세(국세), 지방소비세, 인지세(국세) 등

■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세

■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등

※ 위의 사항 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복구특별소득세(국세),

주민세(도민세·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개인 사업세,

소비세(국세)·지방소비세, 고정자산세(상각자산)

■ 매각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복구특별소득세(국세),

주민세(도민세·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소비세(국세)·지

방소비세, 인지세(국세)

■ 상속한 경우 상속세(국세)

■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세(국세), 부동산취득세

■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국세)

(주) 국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102 페이지 참조)에 문의해 주십시오.

고정자산세(토지·가옥)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되는 시정촌(市町村)세로 다마(多摩)·도서(島嶼) 지역에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시정촌(市町村)이 과세하며 23 구 내에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로 도쿄도가 도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이란?

고정자산이란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총칭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토 지] 논, 밭, 택지, 광천지, 연못, 늪, 산림, 목장, 원야, 그 외의 토지(잡종지)

[가 옥] 주택, 점포, 공장(발전소, 변전소 포함), 창고, 그 외의 건물

[상각자산] 구축물, 기계, 장치, 선박, 항공기, 공구,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 단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상각자산이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에 대해서는 31·32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하실 분]

1월 1일 현재 토지, 가옥의 소유자로서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자산 양도 후의 납세의무자는?

고정자산세 납세의무자는 가령 1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등으로 고정자산세의 부담비율을 소유 기간에 준하여 안분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납세액]

▶ 토지·가옥

$$\boxed{\text{과세표준액*}} \times \boxed{\text{세율 1.4\%}} - \boxed{\text{경감액 등}}$$

* 과세 대장에 등록된 가격(토지에 대해서는 39~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 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6월, 9월, 12월, 2월의 연간 4 회이며, 제 1 기의 납부 달(6월)에 송부하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각 납기에 납부 합니다 (각 시정촌(市町村)의 납기는 104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또한 토지·가옥에 대해서는 납세통지서와 동시에 과세명세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납세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74~77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고정자산의 가격(평가액)이란?

고정자산의 가격이란 총무대신이 정한 고정자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 액수를 지사 또는 시정촌(市町村)장이 결정하여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가옥의 가격 결정?

3 년에 1 번씩, 전건(全件)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평가의 연도를 기준연도라고 하며, 2018 년도는 이 기준연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 2 년도(2019 년도), 제 3 년도 (2020 년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연도(2018 년도)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분합필 등을 한 토지 및 신축, 증개축 등이 있었던 가옥 등은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가격을 결정합니다.

●면세점(免税点)?

구시정촌(区市町村)의 각 구역 내에서 동일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각각 다음 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30 만엔 가옥...20 만엔

●주택용지와 그 특례

(1) 주택용지란 부과기일(1월 1일) 현재, 아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A) 전용주택(전적으로 사람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가옥)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위에 존재하는 가옥의 바닥면적의 10배까지인 토지
- (B) 병용주택(그 일부를 사람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가옥으로서 그 가옥의 바닥면적에 대한 거주부분의 비율*이 1/4 이상인 것)의 부지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그 면적에 아래 표의 배율을 곱하여 얻은 면적(단 부지면적이 그 위에 있는 가옥의 바닥면적의 10배를 넘는 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 면적에 다음 표의 배율을 곱하여 얻은 면적)

병용주택의 종류	거주 부분의 비율*	배율
아래에 표기한 가옥 이외의 가옥	1/4(25%) 이상 1/2(50%) 미만	0.5
	1/2(50%) 이상	1.0
층수가 지상 5층 이상이며 내화건축물인 가옥	1/4(25%) 이상 1/2(50%) 미만	0.5
	1/2(50%) 이상 3/4(75%) 미만	0.75
	3/4(75%) 이상	1.0

* 거주 부분의 비율 = 거주 부분의 바닥면적/가옥의 총바닥면적

(2) 과세표준의 특별조치에 대하여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그 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의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례조치를 적용한 액수(본 규칙 과세표준액)는 주택용지의 구분,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됩니다.

구 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소규모 주택용지	주택용지 중 주택 1호*당 200㎡까지의 부분	가격 × 1/6	가격 × 1/3
일반주택용지	소규모주택용지 이외의 주택용지	가격 × 1/3	가격 × 2/3

* 주택 호수는 원칙상 1동을 1호로 보지만, 공동 주택의 일실 등 거주를 위해 독립적으로 구획된 부분이 복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 봅니다.

(주) 「빈집 등의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정 빈집 등」에 해당하며, 구에서 소유자 등에 대해 권고하여 부과기일(1월 1일)까지 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가옥의 부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특례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용지의 신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2020년도에는 2021년 2월 1일)까지 「고정자산세의 주택용지 등 신고서」를 토지가 소재한 구에 있는 도세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 (2)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
- (3)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¹
- (4)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주택에서 점포로, 점포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 (5) 토지의 용도(이용상황)를 변경한 경우(주택의 정원이었던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된 경우 등)
- (6) 주택이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해 멸실·손괴한 경우*²

*¹ (3)의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대해

부과 기일(1월 1일) 현재, 주택을 재건축하고 있거나 또는 건축 예정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용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주택을 신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신고에 기반해 주택용지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를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수속에 대해서는 관할 도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² 「고정 자산세의 피해 주택용지 등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의 부담조정조치

(1) 부담수준의 균형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원칙적으로 가격 또는 특례액(주택용지인 경우는 특별조치를 적용한 액수(본 규칙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 등으로 세액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담조정조치를 적용한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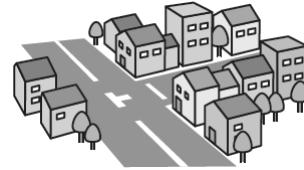
또한 비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부담수준(가격과 과세표준액과의 차이)을 평균화하기 위하여 부담수준이 60% 이상 70%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을 전년도대로 거치하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ext{부담수준(\%)} = \frac{\text{2019년도 과세표준액}^{*1}}{\text{2020년도 가격 등}^{*2}} \times 100$$

*1 2019년 중에 분할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2019년도 과세표준액에 비준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 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용지의 특례조치를 적용한 금액(본 규칙 과세표준액)
- 시가화(市街化)구역 농지에 대해서는 가격 $\times$ 1/3
- 상가의 경우 이외는 가격입니다.



(2) 부담수준과 과세표준액

○ 주택용지

부담수준이 100% 이상 → 본 규칙 과세표준액(가격 $\times$ 1/6 또는 1/3)

부담수준이 100% 미만 → 점차적으로 인상

○ 상업지 등

부담수준이 70% 초과 → 과세표준액의 법정 상한(가격의 70%)까지 인하*

부담수준이 60% 이상·70% 이하 → 전년도 과세표준액 적용*

부담수준이 60% 미만 → 점차적으로 인상

* 작년도에 이어서 23구 내의 상업지 등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액에 대하여 과세한도액(부담수준의 상한)을 조례에 의해 70%에서 65%로 인하하는 감액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부담수준이 65%를 넘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가격의 65%까지 인하된 경우와 같이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경감조치는?(23구 내)

(1) 상업지 등에 대한 부담 수준 상한인하 조례 감액(도세 조례 부칙 제15조의 2 감액)

작년도에 이어서 상업지 등(비주택 택지 등)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액에 대하여, 과세 한도액(부담 수준의 상한)을 조례에 의해 가격의 70%에서 65%로 인하하는 감액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세액이 전년도의 1.1배를 넘는 토지에 대한 조례 감액(도세 조례 부칙 제 15조의 3 감액)

작년도에 이어서 토지 가격의 상승에 수반하는 급격한 세액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세액이 전년도의 세액에 1.1을 곱해 얻은 액수를 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해당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地積)·이용 상황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전년도 세액의 1.1배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감면은?(23구 내)

도쿄도 독자적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주된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8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 소규모 비주택용지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감면

작년도에 이어서 한 획지에 있어서 비주택지 용지의 면적 400㎡ 이하인 용지 중 200㎡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20% 감면합니다. 다만, 개인 또는 자본금 내지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인 법인이 소유한 용지에 한합니다.

신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신청 기한:2020년 12월 28일).

그리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관할 도세사무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2019년도에 동일 구내에서 감면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불연화특구 내의 노후주택 제거 후의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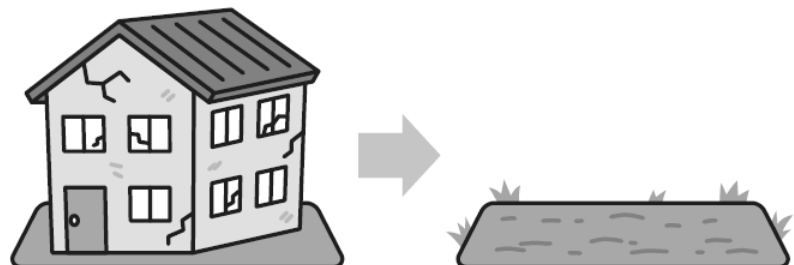
도쿄도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의 시가지 화재나 도시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 목조 주택 밀집 지역 중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불연화 추진 특정 정비지구(이하 「불연화특구」)로 지정하고 구와 연계해서 불연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연화특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일환으로 불연화를 위해 노후주택을 제거한 토지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최장 5년도분에 대해 주택 부지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80% 감면합니다.

◆감면요건

- ① 제거한 노후주택이 구로부터 방재상 위험한 노후건축물로 인정받은 경우*1
- ② 노후주택이 불연화특구로 지정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거된 경우*2
- ③ 노후주택의 제거로 인해 토지의 인정이 소규모 주택용지에서 비주택용지로 변경된 경우
- ④ 방재상 유효한 공지로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구로부터 증명받은 경우
(가옥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했을 경우 등은 방재상 유효한 공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⑤ 노후주택을 제거한 해의 1월 1일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감면을 받고자 하는 연도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제1분기 납부기한(6월 30일(토·일·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고정자산세 감면신청서」를 신청한 경우

*1 구에 노후건축물 제거비용조성을 신청하면 구에서 인정을 실시합니다.(조성제도가 없는 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의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2 불연화 특구 제도 계속에 따라 연장 예정.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 등에서 다시 안내합니다(일본어 만).



도로의 비과세?(23 구내)

도로(건축 후퇴부분 등)로 이용되는 토지로 소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부분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연내에 비과세 신고를 한 토지에 대하여 도세사무소가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여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4 월에 시작되는 연도부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본 제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요 대상

(1)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고속도로 국도, 일반 국도, 도도(都道), 구도(区道))

(2)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도(주:가옥 건축 시에 부지 면적에 산입된 것을 제외합니다.)

①이용상 제약을 설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②객관적으로 도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

③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통과 가능한 사도」(도로의 기점이 각각 다른 공도에 인접한 도로)인 경우, 도로 전체 면적이 1.8m 정도 이상일 것

○ 「막다른 사도」, 「ㄷ자형 사도」일 경우, 2 이상의 가옥이 이용하며 오직 통행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면적이 4.0m 이상일 것(종전부터 존재하던 도로인 경우 1.8m 이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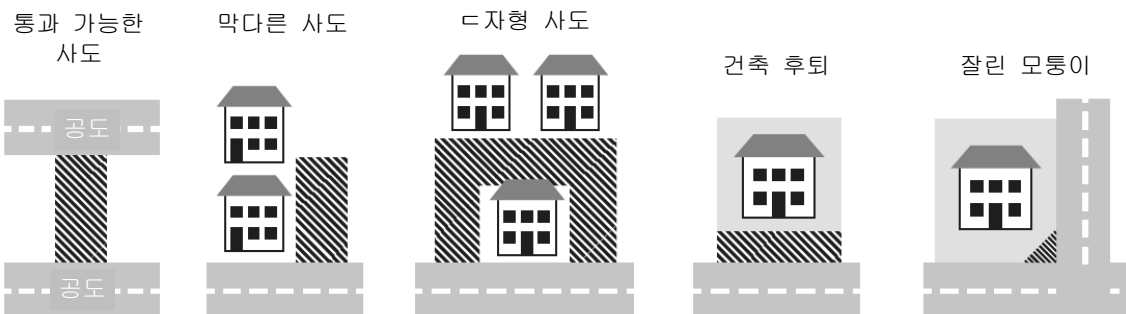
(3) 위 (1) 또는 (2)와 하나가 되어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래의 토지*

○건축 후퇴부분...특별구가 정비한 세가로 등의 확폭 부분, 건축 기준법 제 42 조 제 2 항, 제 3 항, 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생긴 도로의 확폭 부분

○잘린 모퉁이 부분...도교도 건축 안전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해 생긴 잘린 모퉁이 부분

* 도로 부분과 부지의 경계가 담장, 연석, 목지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용상의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지>  ... 해당 부분



◆필요한 수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구의 도세사무소 토지반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비과세신고서(공공용으로 제공한 도로)」
-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의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예:도로 부분의 면적을 측량한 측량도, 구적도 등)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출방법(고정자산세 (23구내))

구 분			부담수준의 산출 방식	과세표준액(2020 년도)		
택 지 등	주 택 용 지	소규모 (주택1호당200㎡ 까지의 부분)	2019년도과세표준액 등* 2020년도가격 × 1/6	부담수준	부담조절조치 등	
				100% 이상	본 규칙 과세표준액(가격 × 1/6 또는 가격 × 1/3)	
		일반 (소규모 주택용지 이외의 주택용지)	2019년도과세표준액 등* 2020년도가격 × 1/3	100% 미만	전년도 과세표준액+(본 규칙 과세표준액 × 5%)=A**	
				※A 가 본 규칙 과세표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본 규칙과세표준액 A 가 본 규칙 과세표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는 20% 상당액		
	상업지 등		2019년도과세표준액 등* 2020년도가격	부담수준	부담조절조치 등	
				70% 초과	가격 × 70%*1	
				70% 이하 60% 이상	전년도 과세표준액 적용*1	
				60% 미만	전년도 과세표준액 + (가격 × 5%)=A*2	
				※1 작년도에 이어 23구내의 상업지 등(주택용 토지 이외의 택지 등)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액에 대하여, 조례에 의해 과세한도액(부 담수준의 상한)을 가격의 70%에서 65%로 인하하는 감액조치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부담수준이 65%를 넘는 경우, 과세표준 액이 가격의 65% 까지 인하된 경우와 같이 경감됩니다. ※2 A 가 가격 × 6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60% 상당액 A 가 가격 × 20%를 밑도는 경우에는 20% 상당액		
	농 지	택지 상당 과세의 농지 (시가화(市街化)구역농지)	2019년도과세표준액 등* 2020년도가격 × 1/3	부담수준	부담조절조치 등	
100% 이상				본 규칙 과세표준액 (가격 × 1/3)		
100% 미만				전년도 과세표준액+(본 규칙 과세표준액 × 5%)=A**		
※A 가 본 규칙 과세표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본 규칙과세표준액 A 가 본 규칙 과세표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는 20% 상당액						
보전하는 농지 (생산녹지)		2019년도과세표준액 등* 2020년도가격	2019년도 과세표준액 × 부담조정율 (단, 2020년도의 가격을 한도로 함)	부담수준		부담조정율
				90% 이상		1.025
				80% 이상 · 90% 미만		1.05
				70% 이상 · 80% 미만		1.075
				70% 미만		1.1

* 2019년 중에 분할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2019년도 과세표준액에 비준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주 1) 도시계획세의 본 규칙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39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 2) 기타 토지에 대한 경감 등은 40, 4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 경감은?

신축된 주택이 44 페이지의 「바닥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새로 과세되는 연도부터 3년도분(3층 건물 이상의 내화·준내화 건축물은 5년도분)에 한하여 해당 주택의 고정자산세(거주 부분에서 1호당 120㎡ 상당 분까지를 한도)가 1/2 감액됩니다.

또한 2009년 6월 4일 이후에 인정된 장기우량주택에 대해서도 44 페이지의 「바닥면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새롭게 과세되는 연도부터 5년도분(3층 건물 이상의 내화·준내화건축물은 7년도분)에 한하여, 해당 주택의 고정자산세(거주 부분으로 1호당 120㎡ 상당 분까지를 한도)가 2분의 1 감액됩니다.

또한 인정 장기우량주택의 감액은 주택이 신축된 해의 다음 해(1월 1일 신축의 경우는 그 해) 1월 31일(2020년도에는 2021년 2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바닥면적 요건]

주택의 구분	단독주택 ^{*1}	주택에 점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병용주택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1}		맨션 등의 구분소유 주택 ^{*2}	
신축연월일	바닥면적	거주 부분의 바닥면적	독립적으로 구획된 거주 부분별 바닥면적에 복도나 계단 등의 공용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더한 바닥면적		전유부분 중 거주부분의 바닥면적에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의 바닥면적을 안분하여 더한 바닥면적	
			임대의 경우		임대의 경우	
2005년 1월 2일 ~ 2022년 3월 31일	50㎡ 이상 280㎡ 이하	50㎡ 이상 280㎡ 이하	50㎡ 이상 280㎡ 이하	40㎡ 이상 280㎡ 이하	50㎡ 이상 280㎡ 이하	40㎡ 이상 280㎡ 이하

*1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전체의 1/2 이상인 것에 한함.

*2 전유면적 중 거주 부분이 그 전유 부분의 1/2 이상인 것에 한함.

(주) 3층 건물 이상의 목조가옥 가운데, 준내화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목조 준내화건축물임을 확인을 해야 하므로, 「건축 확인 신청서(사본)」 및 「검사필증 (사본)」 또는 「건설 주택성능평가서 (사본)」를 첨부한 「고정 자산세 감액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 등의 개수공사에 따르는 고정자산세의 감액은?

(1)주택 내진 개수에 따르는 고정자산세의 감액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있던 주택에 대해, 2022년 3월 31일까지, 건축 기준법에 의거 현행의 내진 기준에 맞도록 일정한 내진 개수를 했을 경우, 공사 완료일의 다음 연도(1월 1일 공사 완료의 경우는 그 연도) 1년도분(개수 전의 주택이,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행 장애 기존 내진 부적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도분), 해당 주택과 관련한 고정자산세액(거주 부분에서 1호당 120㎡ 상당분까지를 한도)을 2분의 1*감액합니다. 감액 요건은, 도쿄도 독자적 요건인 「내진화 개수를 실시한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23 구내)의 감면」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45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개수공사 후의 주택이 인정장기우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는 3분의 2.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서류(현행 내진 기준에 맞는 공사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개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요(要) 안전확인 계획기재 건축물 등의 내진 개수에 따른 고정자산세의 감액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 안전확인 계획기재 건축물 또는 요(要) 긴급안전확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보조를 받아 2023년 3월 31일까지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여 현행의 내진 기준에 적합한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개수 공사가 완료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2년도분의 해당 가옥에 대한 고정자산 세액(해당 금액이 해당 보조대상 개수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2분의 1 감액합니다.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현행 내진 기준에 따른 공사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개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의 배리어프리 개수에 따른 고정 자산세의 감액

신축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중 65세 이상인 분, 개호(介護) 보험법의 요개호(介護) 혹은 요지원의 인정을 받은 분 또는 장애인인 분이 거주하는 주택(임대 부분을 제외)에 대하여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일정한 배리어프리 개수공사가 완료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다음 연도분(1월 1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그 해분)의 고정자산 세액(주거 부분으로 1호당 100㎡ 상당분까지를 한도)을 3분의 1 감액합니다.

※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배리어프리 개수 공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개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주택의 에너지 절약(열손실 방지) 개수에 따른 고정자산세의 감액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주택(임대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창문의 단열 개수공사를 포함한 일정한 에너지 절약(열손실 방지) 개수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당해 주택의 다음 연도분(1월 1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그 해분)의 고정자산 세액(거주 부분으로 1호당 120㎡ 상당 분까지를 한도)을 3분의 1* 감액합니다.

*개수공사 후의 주택이 인정장기우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는 3분의 2.

※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개수 후에 각각의 부위가 에너지 절약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개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 1) (1), (3), (4)에 대해서는 개수 공사에 소요된 비용((3), (4)는 보조금 등을 공제한 액)이 1호당 50만엔을 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2) (3), (4)에 대해서는 개수 후의 주택 바닥면적이 50㎡ 이상 280㎡ 이하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 3) (1)~(4)의 감액 수속 등에 대해서는 자산이 있는 구의 관할 도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가옥에 대한 감면이란?(23 구 내)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의 주된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8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 내진화를 위해 개축한 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있던 가옥을 허물고 해당 가옥을 대신해서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에 대하여, 신축 후 새롭게 과세되는 연도부터 3년도분 주거 부분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액을 전액(지방세법에 근거한 신축 주택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감액 적용 후의 세액)을 감면합니다(감면 대상이 되는 호수는 개축 전의 가옥에 따라 다릅니다).

또, 신축 맨션을 구입했을 경우도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요건

- ① 신축된 주택의 거주 부분 비율이 해당 가옥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② 개축 전의 가옥을 허문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 1년 이내에 신축된 주택인 경우*
- ③ 개축 전의 가옥과 신축된 주택이 모두 도쿄 23구 내에 있는 경우
- ④ 신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1월 1일에 신축한 경우는 같은 날)의 주택소유자와 개축 전 가옥을 허문 해의 1월 1일의 주택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⑤ 신축된 주택에 대하여 검사필증의 서류교부를 받은 경우
- ⑥ 신축된 해의 다음다음 해(1월 1일에 신축된 경우는 다음 해)의 2월 말까지「고정자산세 감면 신청서」로 신청한 경우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축 후의 주택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2) 내진화를 위해 개수한 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있던 가옥으로 2021년 3월 31일까지 건축 기준법에 기반한 현행내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개수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공사 완료일의 다음 연도(1월 1일 공사 완료의 경우는 그 연도분) 1년도분*,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거주 부분으로 1호당 120㎡ 상당 부분까지가 한도)를 전액(지방세법에 기반한 주택 내진 개수에 따른 감액 적용 후의 세액) 감면합니다.

* 주택이 내진 개수 완료 전에 건축물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통행 장애 기존 내진 부적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도분.

◆감면요건

- ① 내진 개수 후 가옥의 거주 부분 비율이 해당 가옥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② 내진 개수에 소요된 비용이 1호당 50만엔 이상인 경우
- ③ 내진 기준에 적합한 공사라는 증명을 받은 경우
- ④ 개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고정자산세 감액 신고서 겸 감면 신청서」로 신청한 경우

(3) 불연화특구 내에서 불연화를 위해 개축한 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불연화특구제도의 특별 지원의 일환으로 불연화를 위해 개축한 주택에 대해 신축 후 새롭게 과세될 연도부터 5년도분에 대해 주거 부분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전액(지방세법에 기초한 신축 주택의 감액이 적용된 경우는 감액 적용 후의 세액) 감면합니다.(감면 대상 호수는 개축 전의 가옥에 따라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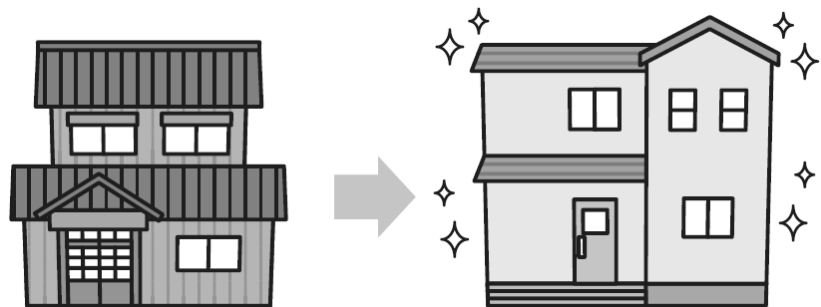
또한 신축면적을 구입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요건

- ① 개축 전의 가옥과 개축 후의 가옥이 모두 불연화특구 내에 있는 경우
- ② 개축 전의 가옥의 등기에 기재된 구조가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인 경우(2개 이상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의 바닥면적이 총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개축 전의 가옥이 불연화특구 지정기간 내에 철거되어 있을 것
(단, 주택을 신축한 후 가옥을 철거할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④ 개축 후의 주택이 내화건축물 또는 준내화건축물인 경우
- ⑤ 개축 후의 주택이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 ⑥ 개축 후의 주택의 주거 부분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 ⑦ 개축 후의 주택의 신축연월일이 불연화특구 지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¹
- ⑧ 신축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1월 1일에 신축한 경우는 그날) 시점의 소유자와 개축 전의 가옥이 멸실된 해의 1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²
- ⑨ 신축한 해의 다음다음 해(1월 1일에 신축한 경우는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고정자산세 감면신청서」로 신청한 경우

*1 불연화 특구 제도 계속에 따라 연장 예정. 자세한 내용은 도교도 주세국 홈페이지 등에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일본어 만).

*2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축 후의 주택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노선가 공개

노선가란 시가지에 있어서 도로에 설정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도로에 접한 표준적인 택지의 1㎡당 가격을 말합니다. 택지의 평가액은 이 노선가를 근거로 각 택지의 안쪽까지의 길이, 형상, 이용상의 법적 제한 등에 따라 산출됩니다.

토지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액의 기초가 되는 고정자산세의 노선가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신 노선가 등에 대해서는 각 도세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노선가도 공개 장소

	2018 기준 연도분	2015 기준 연도분	2012 기준 연도분	1991 기준 연도분~*	비고
23 구 도세사무소	○	○	○	×	그 구의 노선가만 열람 가능, 대여 가능
도민정보룸(도청 제 1 본청사 3 층)	○	○	×	×	복사 서비스 가능(유료)
도립중앙도서관	○	○	○	○	
주세국 홈페이지 「노선가 공개」 (일본어 만)	○	○	○	×	

* 1991 기준 연도(대표적인 지점만) 및 1994 기준 연도(주요한 가로만)는 고정자산세 노선가 공개대장이라는 명칭으로, 현행 노선가도와는 내용이 다르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람과 열람

(1)종람장부 종람

종람이란, 납세자가 본인의 토지·가옥의 가격을 동일 구시정촌(区市町村) 내의 다른 토지·가옥 가격과 비교하여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종람 기간 중(23구 내의 경우 2020년도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는 토지·가옥의 가격 등이 기재된 종람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람을 원하실 경우 운전면허증 등 납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2)고정자산 과세 대장 열람

납세 의무자는 본인의 자산이 기재되어 있는 고정자산 과세 대장을 연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대가가 지불되는 것에 한정)은 고정자산 과세 대장 중에서 임차 중인 자산(가옥의 경우는 그 부지도 포함)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1}. 열람 시에는 운전면허증 등 납세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또한 차지인·차가인은 임대차계약서 등^{*2} (대가가 지불되는 것에 한정)의 원본도 함께 지참하여 주십시오.

*1 23구 내의 고정자산세에 관한 열람 신청에 대해서는 85~8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전차권(転借権)을 소유하는 분의 경우, 전대차 계약서 등과 소유자와 차지인·차가인간의 임대차계약서 등

●심사 신청(23 구 내)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 관한 사항 가운데,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가격에 대해 불복사항이 있을 때는,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가격 등이 등록된 취지의 공시일(2020 년도는 4 월 1 일)로부터, 납세 통지서를 받은 날 후 3 개월 이내(단, 상기 공시일 이후에 가격 등의 결정 또는 수정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 후 3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도쿄도 고정자산 평가심사 위원회 앞으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 년도는 원칙적으로 기준 연도인 2018 년도의 가격이 거치되므로 심사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토지의 분할필, 가옥의 신축 등으로 인해 새롭게 결정된 가격, 토지의 지목 변환, 가옥의 증개축 등으로 인해 평가 변동이 행해진 가격 또는 이 평가 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청, 지가 하락에 따른 특례 조치로 인해 수정된 토지의 가격 또는 이 특례 조치로 인해 수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신청에 한합니다.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상각자산에 대해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심사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의 계산은?

[예시설정]

2018년 2월에 23구 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토지면적은 150㎡, 가옥의 바닥면적은 100㎡(목조 2층 건물)입니다. 토지 및 가옥의 가격(평가액) 등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2020 년도의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토지	2020 년도 가격	45,000,000 엔
	2019 년도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액	6,750,000 엔
● 가옥	2019 년도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액	14,700,000 엔
	2020 년도 가격	6,000,000 엔



[계산]

■ 토지

	내용	예시의 경우	설명
고정자산세	2020 년도 가격 ①	45,000,000 엔	
	본 규칙 과세표준액 ②	7,500,000 엔	① × 1/6 (소규모 주택용지)
	전년도 과세표준액 ③	6,750,000 엔	
	부담수준 ④	90%	③ ÷ ② × 100
	부담조정조치 ⑤	7,125,000 엔	③ + (② × 5%)
	2020 년도 과세표준액 ⑥	7,125,000 엔	⑤ > ②인 경우는 ②, ⑤ < ② × 20%인 경우는 ② × 20% 이번에는 ⑤가 ②(7,500,000 엔)를 넘지 않으므로 ⑥ = ⑤
	당초 세액 A	99,750 엔	⑥ × 세율(1.4%)(엔 미만은 버림)
	조례 부칙 제 15 조의 3 감액의 적용 여부* ⑦	7,425,000 엔	③ × 1.1
	B	103,950 엔	⑦ × 세율(1.4%)(엔 미만은 버림) A < B이므로 감액 적용 없음
	상당 세액	99,750 엔	
도시계획세	본 규칙 과세표준액 ⑧	15,000,000 엔	① × 1/3 (소규모 주택용지)
	전년도 과세표준액 ⑨	14,700,000 엔	
	부담수준 ⑩	98%	⑨ ÷ ⑧ × 100
	부담조정조치 ⑪	15,450,000 엔	⑨ + (⑧ × 5%)
	2020 년도 과세표준액 ⑫	15,000,000 엔	⑪ > ⑧인 경우는 ⑧, ⑪ < ⑧ × 20%인 경우는 ⑧ × 20% 이번에는 ⑪이 ⑧(15,000,000 엔)을 넘으므로 ⑫ = ⑧
	당초세액 C	45,000 엔	⑫ × 세율(0.3%) (엔 미만은 버림)
	조례 부칙 제 20 조의 3 감액의 적용 여부* ⑬	16,170,000 엔	⑨ × 1.1
	D	48,510 엔	⑬ × 세율(0.3%) (엔 미만은 버림) C < D이므로 감액 적용 없음
	경감액 ⑭	22,500 엔	C × 1/2 (엔 미만은 올림) 「소규모 주택용지에 대한 경감」(50 페이지 참조)
	상당 세액	22,500 엔	C - ⑭

* 세액이 작년도의 1.1 배를 넘는 토지에 대한 조례 감액 (40 페이지 참조)
단 2019 년도는 동 감액의 적용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 가옥

	내용	예시의 경우	설명
고정자산세	2020 년도 가격 ①	6,000,000 엔	
	2020 년도 과세표준액 ②	6,000,000 엔	② = ①
	당초 세액 ③	84,000 엔	② × 세율(1.4%)(엔 미만은 버림)
	신축주택의 감액 ④	42,000 엔	③ × 1/2 「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의 감액」(43 페이지 참조)
	상당 세액 ⑤	42,000 엔	③ - ④
도시계획세	2020 년도 과세표준액 ⑥	6,000,000 엔	⑥ = ①
	상당 세액 ⑦	18,000 엔	⑥ × 세율(0.3%)(엔 미만은 버림)

(주)위의 산출사례는 토지 1 필, 가옥 1 호 당 상당 세액이므로 끝자리 수 처리에 따라 실제 납세금액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도시 정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도시 정비, 특히 하수도, 공원, 생활도로, 학교, 병원, 중소하천대책 및 해일 대책 등의 충실 강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화(市街化) 구역 내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시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토지·가옥은 고정자산세의 대상과 동일합니다.

고정자산세와 마찬가지로 시정촌(市町村)세에 속하며 23 구 내에서는 특별로 도쿄도가 도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납세하실 분]

1월 1일 현재 토지, 가옥의 소유자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납세액]

▶ 토지·가옥

$$\boxed{\text{과세표준액}^{*1}} \times \boxed{\text{세율}^{*2}0.3\%} - \boxed{\text{경감액 등}}$$

[소규모 주택용지의 경우] (23 구 내)

$$\boxed{\text{과세표준액}^{*1}} \times \boxed{\text{세율}^{*2}0.3\%} - \boxed{\text{소규모 주택용지에 대한 경감액}}$$

(주)소규모 주택용지에 대한 경감액이란?

$$\boxed{\text{소규모 주택용지의 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 \times 0.3\% \times 1/2$$

*1 과세 대상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토지에 대해서는, 38~40·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세율은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르므로 10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 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6월, 9월, 12월, 2월의 연간 4회이며, 제1기의 납부 달(6월)에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각 납기에 납부합니다. (각 시정촌(市町村)의 납기는 104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세는 토지, 가옥의 고정자산세와 함께 과세됩니다. 납세통지서에는 도시계획세와 고정자산세의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과세표준액

고정자산 과세 대상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단 토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의 특별조치나 택지에 대한 부담조정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40·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면세점(免税点)

고정자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택용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특별조치

고정자산세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택지의 부담조정조치

고정자산세와 마찬가지로 부담수준 구분이 적용되어 부담조정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0·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세의 경감조치?(23 구 내)

●소규모 주택용지에 대한 경감

도쿄도에서는 소규모 주택용지(주택 1호당 200㎡까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2분의 1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상업지 등에 대한 부담 수준 상한인하 조례 감액

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세액이 전년도의 1.1 배를 넘는 토지에 대한 조례 감액

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소규모 비 주택 용지에 대한 감면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불연화특구 내의 노후주택 제거 후의 토지에 대한 감면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내진화를 위해 개축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내진화를 위해 개수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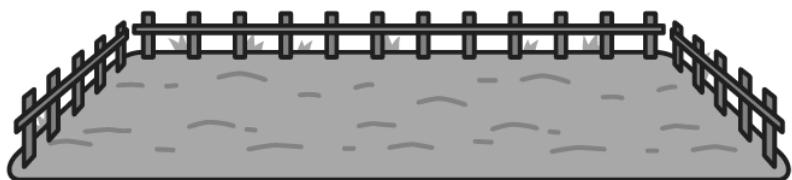
●불연화특구 내에서 불연화를 위해 개축한 주택에 대한 감면

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특별토지보유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되는 시정촌(市町村)세입니다. 23 구 내에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도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의 경제정세 등을 고려하여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 년도 이후 과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에 과세됩니다.

(주) 2019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취득세가 폐지되며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이 도입됩니다.

[납세하실 분]

삼륜 이상의 소형자동차, 보통자동차(특수 자동차 제외)를 취득한 분(개인·법인 불문)

[납세액]

자동차의 통상 취득 가격(과세표준액)

×

세율

차종	세율
자가용 자동차	비과세 · 1% · 2% · 3%
영업용자동차	비과세 · 0.5% · 1% · 2%

(주1) 신차·중고차 불문.

(주2) 환경성능(연비성능)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납세시기와 방법]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시에 도교운수지국 또는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구내에 있는 자동차세사무소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동차의 통상 취득 가액이란

자동차의 거래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같이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취득 가액으로 총무성령(總務省令)에 의해 통상의 거래가액으로 정해진 액수로 산정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엔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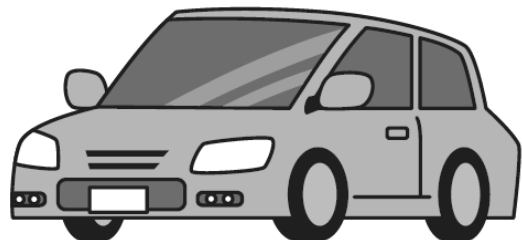
할부판매 등으로 판매자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구매자를 자동차 취득자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의 면제

자동차의 성능이 좋지 않거나 차체의 도색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처에 반환한 경우는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의 감면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단 신청기한은 등록(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감면 상한액은, 과세표준액300만엔 상당분에 세율을 곱하여 얻은 값입니다.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의 세율표

차 종		세율	
		[취득시기] 2019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	[취득시기] 2021년 4월 1일 이후
① 전기 자동차(연료 전지 자동차를 포함한다)		비과세	
②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③ 천연가스 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기준 NOx10% 절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 적합 차			
④ 클린디젤 승용차(2009년 배출가스 기준 적합 차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 적합 차)			
⑤ 가솔린 자동차	자가용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절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절감(☆☆☆☆)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40% 이상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30% 이상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20% 이상 달성	
		비과세	1%
		1%	2%
	정차용	상기 이외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10% 이상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			
⑥ LPG 자동차	정차용	또한 2015년도 연비 기준 +10% 이상 달성	
		상기 이외	
		비과세	
		0.5%	
		1%	
		2%	

(주1) 신차·중고차 불문. 또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세율이 경감됩니다.

(주2) 이 표는 승용차의 특례조치입니다. 버스, 트럭의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도교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주3) JC08모드에 의한 연비를 산정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10·15모드에 의한 연비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20년도 연비 기준 + 4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110%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 3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95%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 2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80%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 1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65%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50% 이상 달성]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도세인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자동차세 종별할(自動車税種別割) 이외에 차량검사시나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을 때 부과되는 자동차종량세(국세),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둘 다 구시정촌(区市町村)세)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종량세는 도교운수지국, 자동차검사등록사업소 등으로(71 페이지 참조)
- 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은 구·시청, 정촌사무소 (101 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구시정촌(区市町村)세)

경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에 과세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취득세가 폐지되고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이 도입되었습니다.

(주)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은 구시정촌(区市町村)세지만 당분간은 도도부현이 부과합니다.

[납세하실 분]

삼륜 이상의 경자동차(특수 자동차 제외)를 취득한 분(개인·법인 불문)

[납세액]

경자동차의 통상 취득 가격(과세표준액) × 세율

차종	세율
자가용 경자동차	비과세 · 1% · 2%
영업용 경자동차	비과세 · 0.5% · 1% · 2%

(주1) 신차·중고차 불문.

(주2) 환경성능(연비성능)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납세시기와 방법]

신규검사나 사용·이전 등을 신고할 경우에 경자동차검사협회의 구내에 있는 전국경자동차협회에 납부합니다.

●경자동차의 통상 거래가액이란

자동차의 거래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같이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취득 가액으로 총무성령(総務省令)에 의해 통상의 거래가액으로 정해진 액수로 산정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50 만엔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경우는

할부판매 등으로 판매자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구매자를 자동차 취득자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의 면제

자동차의 성능이 좋지 않다거나 차체의 도색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처에 반환한 경우는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의 감면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단 신청기한은 등록(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감면 상한액은, 과세표준액 300 만엔 상당분에 세율을 곱하여 얻은 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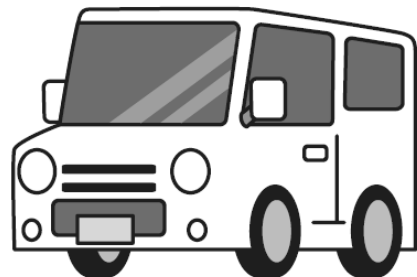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의 세율표

차 종		세율		
		[취득시기] 2019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취득시기] 2021년 4월 1일 이후	
① 전기 경자동차		비과세		
② 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가스 기준 NOx10% 절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 적합 차)				
③ 가솔린 자동차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절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절감(☆☆☆☆)			
	자 가 용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40% 이상 달성	비과세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30% 이상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20% 이상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10% 이상 달성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	비과세	1%
		상기 이외	1%	2%
	경 전 차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10% 이상 달성	비과세	
		또한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	0.5%	
		또한 2015년도 연비 기준 +10% 이상 달성	1%	
		상기 이외	2%	

(주1) 신차·중고차 불문. 또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세율이 경감됩니다.

(주2) JC08모드에 의한 연비를 산정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10·15모드에 의한 연비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20년도 연비 기준 + 4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110%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 3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95%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 2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80%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 10% 이상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65% 이상 달성]과,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을 [2010년도 연비 기준 + 50% 이상 달성]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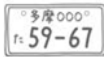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되는 도부현세 입니다.

※2019 년 10 월 1 일부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납세하실 분]	
4 월 1 일 현재 상륜 이상의 소형자동차, 보통자동차를 소유자로서 차검증에 기재되어 있는 분	
[납세액]	
56 페이지의 세율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또한 2019 년 10 월 1 일 이후에 초회 신규 등록을 받은 자가용 승용차는 영구적으로 자동차세 종별할이 인하됩니다.	
[납세 시기와 방법]	
5 월에 도세종합사무센터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납세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74 · 75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연도 도중에 자동차의 신규등록 등을 한 경우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나 폐차 등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됩니다.

	이동의 상황	적용 과세
신규등록		월할 과세*1 등록 월의 다음 달부터 연도 말까지의 월수에 대해 과세
폐차		월할 과세*1 4 월부터 소멸(말소 등록)한 달까지의 월수에 대해 과세
소유자 변경 전 입 · 전출	도쿄도 내 이동  ↔  도도부현간 (도쿄도⇔타도부현 (他道府県)) 이동*2  ↔ 	연(年) 과세 「4 월 1 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 년분을 과세

$$*1 \quad \boxed{56 \text{ 페이지의 연액}} \times \frac{\boxed{\text{과세되는 개월수}}}{12} = \boxed{\text{세액}} \quad (100 \text{ 엔 미만은 버림})$$

신규등록한 경우는 자동차세사무소 창구에 직접 납부합니다.

*2 도도부현간(도쿄도⇔타도부현) 전출입에 대해서는 4월 1일 현재 등록지의 도도부현에서 1년분을 과세합니다.

●명의변경, 폐차 신고는

자동차를 양도받거나 폐차한 경우 등에는 도쿄 운수지국 또는 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에 그 내용을 등록하고 자동차세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 등록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경우는

할부판매 등으로 판매자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구매자를 자동차 취득자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의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신청을 하면 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또한 신청기한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의 경우는 납부기한까지이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과세의 경우는 등록(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감면상한액 수는 45,000 엔입니다.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도 말까지의 달수에 의해 45,000 엔의 월할당액이 감면 상한액입니다. 또한 그린화 세제(중과)의

적용 후의 자동차 세액과 45,000 엔과의 차액이 1,000 엔 미만인 경우는, 중과 후의 자동차 세액 전액이 감면됩니다. 자동차세의 중과에 대해서는, 57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율(연액)

차 종			자 가 용		영 업 용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초회 신규 등록을 받은 자동차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초회 신규 등록을 받은 자동차	
승용차 (총배기량)	1ℓ 이하		29,500 엔	25,000 엔	7,500 엔
	1ℓ 초과 ~1.5ℓ 이하		34,500 엔	30,500 엔	8,500 엔
	1.5ℓ 초과 ~2ℓ 이하		39,500 엔	36,000 엔	9,500 엔
	2ℓ 초과 ~2.5ℓ 이하		45,000 엔	43,500 엔	13,800 엔
	2.5ℓ 초과 ~3ℓ 이하		51,000 엔	50,000 엔	15,700 엔
	3ℓ 초과 ~3.5ℓ 이하		58,000 엔	57,000 엔	17,900 엔
	3.5ℓ 초과 ~4ℓ 이하		66,500 엔	65,500 엔	20,500 엔
	4ℓ 초과 ~4.5ℓ 이하		76,500 엔	75,500 엔	23,600 엔
	4.5ℓ 초과 ~6ℓ 이하		88,000 엔	87,000 엔	27,200 엔
	6ℓ 초과		111,000 엔	110,000 엔	40,700 엔
화객겸용차 (최대적재량 및 총배기량) ※최대승차정원 4명이상	1t 이하	1ℓ 이하	13,200 엔		10,200 엔
		1ℓ 초과~1.5ℓ 이하	14,300 엔		11,200 엔
		1.5ℓ 초과	16,000 엔		12,800 엔
	1t 초과~2t 이하	1ℓ 이하	16,700 엔		12,700 엔
		1ℓ 초과~1.5ℓ 이하	17,800 엔		13,700 엔
		1.5ℓ 초과	19,500 엔		15,300 엔
	2t 초과~3t 이하	1ℓ 이하	21,200 엔		15,700 엔
		1ℓ 초과~1.5ℓ 이하	22,300 엔		16,700 엔
		1.5ℓ 초과	24,000 엔		18,300 엔
트럭 (최대적재량) ※최대승차정원 3명이하	1t 이하		8,000 엔		6,500 엔
	1t 초과~2t 이하		11,500 엔		9,000 엔
	2t 초과~3t 이하		16,000 엔		12,000 엔
	3t 초과~4t 이하		20,500 엔		15,000 엔
	4t 초과~5t 이하		25,500 엔		18,500 엔
	견인차		소형	10,200 엔	7,500 엔
			보통	20,600 엔	15,100 엔
	피 견인차	소형		5,300 엔	3,900 엔
		보통자동차에 속하는 것	8t 이하	10,200 엔	7,500 엔
			8t 초과~9t 이하	15,300 엔	11,300 엔
			9t 초과~10t 이하	20,400 엔	15,100 엔
			10t 초과~11t 이하	25,500 엔	18,900 엔

(주) 이 세율표는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그린화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동차의 세율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그린화특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성능이 뛰어나고 환경부하가 낮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종별할을 경감하는 한편, 초회 신규등록으로부터 일정 연수를 경과한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자동차세 종별할 그린화특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환경부하가 낮은 자동차에 대한 경(輕)과세

적용 대상: (1)배출가스 기준 및 연비 기준이 다음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2)전기자동차(연료전지차 포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디젤 승용차

경감내용:

(1) 배출가스 기준 및 연비 기준이 아래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자동차 및 소형자동차

신차신규등록 (초도등록)	대상 연도	경감 기준			경감률
		배출가스 기준		연비 기준	
2020년도	등록한 다음 연도 1년간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절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절감(☆☆☆☆)	①	2020년도 연비 기준 + 30% 이상 달성	약 75%
			②	2020년도 연비 기준 + 10% 이상 달성	약 50%

(주) 연비 기준을 달성한 경우 자동차검사증(차검증) 비고란에 그 내용이 기재됩니다.

(2) 전기자동차(연료전지차 포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2009년 배출가스 기준 NOx10% 이상 절감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 차), 클린디젤 승용차(2009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또는 2018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약 75% 경감

경감 기간: 신차 신규 등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분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2 차세대자동차 도입촉진 세제(도쿄도의 독자적인 과세 면제)

적용대상	다음의 자동차로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신차 신규등록한 것 • 연료전지 자동차(수소를 연료로 하는 것) •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감 기간	신차 신규등록 시의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월할) 및 그 다음 연도부터 5년도분의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경감내용	과세면제

3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대상 연도	대상 차종		대상 조건	중과률
2020년도 ~	디젤 자동차	버스·트럭	신차 신규등록 후 11년을 경과한 것	약 10%
		버스·트럭 이외		약 15%
2021년도	가솔린자동차·LPG 자동차	버스·트럭	신차 신규등록 후 13년을 경과한 것	약 10%
		버스·트럭 이외		약 15%

(주 1) 일반승합용 버스, 전기·천연가스·메탄올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 피견인차, 스쿨버스는 제외됩니다.

(주 2) 도가 지정하는 입자상물질 감소장치를 장착한 디젤자동차, 1945년까지 제조된 자동차(빈티지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경우 중과세분이 감면됩니다.

●차량검사(계속검사·구조 등 변경검사)를 받기 위한 납세증명서는?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을 완납하신 분은 납세통지서 오른쪽의 자동차세(종별할(種別割)) 납세증명서(계속 검사 등 용)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 년 4 월부터 차량검사를 받을 운수지국, 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납세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검사 시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후 운수지국 등에서 납세확인을 하려면 최대 10 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검사를 받으려면 도세사무소·금융기관 등의 창구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 후 납세통지서 오른쪽의 자동차세(종별할(種別割)) 납세 증명서(계속 검사 등 용)를 운수지국 등에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도쿄도에서 타 도부현(道府県)으로 전출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4 월 1 일부터 납부 기한 전날까지의 기간, 운수지국 등에서 납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통지서 오른쪽의 자동차세(종별할(種別割)) 납세증명서(계속 검사 등 용)를 제시해 주십시오.

●Pay-easy(페이징)·신용카드·스마트폰 결제 어플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을 납부한 분에게

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Pay-easy(페이징) 납부 및 스마트폰 결제 어플로 납부한 경우에는 약 1 주일 후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약 10 일 후에 도세사무소·자동차세사무소·도세증명 우편접수센터 등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차량검사 임박 등 서두르시는 경우에는 도세사무소·금융기관 등의 창구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신 후 납세통지서 등의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세(종별할(種別割)) 납세증명서(계속 검사 등 용)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차량검사를 받는 연도 중에 도도부현(都道府県)간(도쿄도⇔타도부현(他道府県)) 전출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4 월 1 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도도부현에 문의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에 관한 문의는 도쿄도 자동차세 콜센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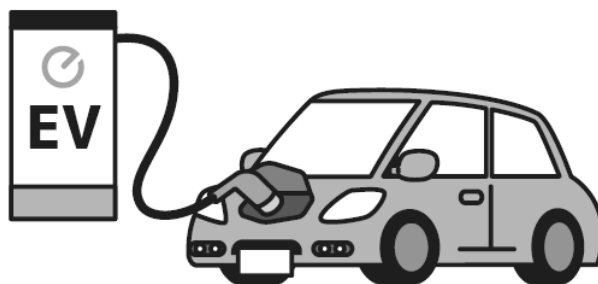
《문의처》 도쿄도 자동차세 콜 센터 03-3525-4066(일본어 만)

평일 9 시~17 시(토·일·휴일, 연말연시 12/29~1/3 을 제외)

※ 전화번호는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월요일 및 휴일 다음 날 오전 중은 문의 전화가 집중하여 잠시 잘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의 납기는 5 월입니다. 반드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경유인취세

원매업자 또는 특약업자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인수한 분에게 부과됩니다.

유통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유의 본체가격에 추가되므로 소비자께서 경유를 구매할 때 가격에 경유인취세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납세하실 분]	
원매업자 또는 특약업자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인수한 분 등	
[납세액]	
인수한 경유의 양(kℓ)	× 세율 32,100 엔
[납세 시기와 방법]	
원매업자 또는 특약업자가 경유를 실제로 인수한 분 등으로부터 대금과 함께 세금을 예치하여 1개월분을 합산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경유란?

다음 규격을 가진 탄화수소유입니다.

- 비중(15° C) 0.8017 초과·0.8762 이하
- 분류 성상 90% 유출온도 . . 267도 초과·400도 이하
- 잔류탄소분 0.2% 이하
- 인화점 130도 이하

●원매업자, 특약업자란?

원매업자: 경유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으로 총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특약업자: 원매업자와의 판매계약에 근거하여 경유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분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의 지정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면세 경유란?

선박의 동력원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유는 일정한 수속을 통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가 되는 경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세 경유 사용자증 교부를 받고 면세 경유 사용자가 된 후 면세증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증 등의 반납 명령에 대해서

면세 경유 사용자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세 경유 사용자증과 면세증 반납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유인취세 신고서, 면세경유에 필요한 신청서등의 제출처

제출처	사무소 또는 사업소 등의 소재지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지요다(千代田)구, 주오(中央)구, 분쿄(文京)구, 다이토(台東)구, 아라카와(荒川)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구, 메구로(目黒)구, 오타(大田)구, 시부야(渋谷)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 세타가야(世田谷)구, 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구, 도시마(豊島)구, 기타(北)구, 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고토(江東)도세사무소	스미다(墨田)구, 고토(江東)구, 아다치(足立)구, 가쓰시카(葛飾)구, 에도가와(江戸川)구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	다마(多摩)의 시정촌(市町村) 전역

(주 1) 도외에 본점을 소유하는 원매업자 또는 특약업자의 신고서 등의 서류 제출처는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입니다.

(주 2) 도서지역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100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조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경유를 제조하거나 연료탄화수소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소비)할 경우, 경유와 경유 이외의 탄화수소유를 혼합하여 탄화수소유를 제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수속 등에 대해서는 도세 사무소·지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혼화 경유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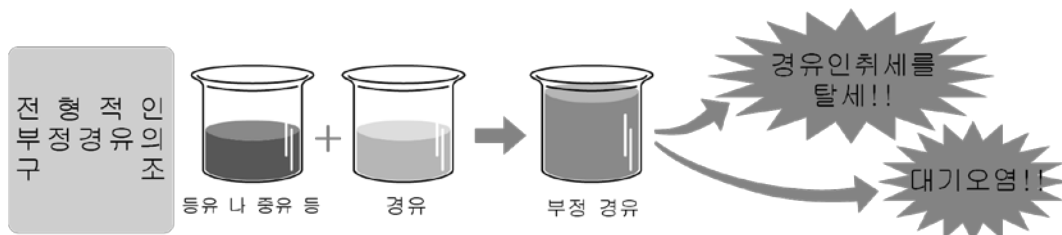
경유에 등유나 중유 등을 혼합하거나 등유와 중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화 경유를 판매(소비)한 경우에는 판매(소비)한 분에게 경유 인취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경유 또는 휘발유 이외의 연료탄화수소유(등유나 중유 등)이라도 자동차의 연료로써 판매(소비)한 경우에는 경유인취세가 과세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을 제조, 판매(소비)한 경우 및 이에 관여한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에서는「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확보조례)에 의해 배출가스에 포함되는 입자상물질 등의 양을 증가시키는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유는 범죄입니다!

부정경유란 경유인취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유나 중유 등과 경유를 부정하게 섞어 경유로 속여 판매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경유인취세 납세를 부정하게 회피하는 탈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도쿄도에서는 부정경유 박멸을 위하여 디젤자동차에서 경유를 채취검사하고 있으며 부정경유 사용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유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정경유 110 번 0120-231-793

(프리다이얼, 일본어 만)

●부정경유 등에 대한 벌칙

탈세에 관한 죄	징역 10 년 이하	벌금	1,000 만엔 이하
제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에 관한 죄	징역 10 년 이하	벌금 법인종과	1,000 만엔 이하 3 억엔 이하
부정경유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토지·건물·기계·원재료·약품 등의 제공 또는 운반에 관한 죄	징역 7 년 이하	벌금 법인종과	700 만엔 이하 2 억엔 이하
부정경유의 운반, 보관, 취득 또는 처분의 매개 및 알선에 관한 죄	징역 3 년 이하	벌금 법인종과	300 만엔 이하 1 억엔 이하
승인 없이 등유나 중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써 양도 또는 소비한 죄	징역 2 년 이하	벌금	100 만엔 이하

레저와 세금

골프장 이용세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에게 이용하는 날마다 정액으로 과세합니다. 이 세수의 10분의 7은 골프장이 소재하는 구시정촌(区市町村)에 교부됩니다.

[납세하실 분]

골프장 이용자

[납세액]

골프장의 홀 수나 이용요금 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세율	1,200엔	1,100엔	1,000엔	900엔	800엔	600엔	500엔	400엔

[납세 시기와 방법]

골프장 경영자 등이 이용자로부터 세금을 예치하여 1개월분을 합산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골프장이란?

홀의 수가 18홀 이상이며 홀의 평균 거리가 100m 이상인 시설 및 홀의 수가 9홀 이상이며 홀의 평균 거리가 약 150m 이상인 시설을 말합니다.

●골프장 이용세의 비과세와 경감

18세 미만인 분, 70세 이상인 분, 장애가 있는 분, 국민체육대회의 골프 경기(공식 연습 포함.)에 참가하는 선수, 도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경기대회의 골프 경기(공식 연습을 포함.)에 참가하는 선수가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나 학생 등이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쿄도에서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이나 이용시간에 대하여 특히 제한적으로 이용(새벽·저녁에 이용 등)하신 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세율을 2분의 1로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렵세

조수(鳥獸)의 보호나 수렵에 관한 행정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수렵자 등록에 대해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수렵자 등록을 받는 분

[납세액]

수렵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62 페이지의 세율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 시기와 방법]

수렵자 등록을 받을 때 도쿄도 주세국이나 도세사무소, 지청에 납부합니다.

○세율표

면허의 종류	구분	세율
제 1 종 총사냥 ^{*1}	A	16,500 엔
	B	11,000 엔
그물사냥 · 올가미사냥 ^{*2}	A	8,200 엔
	B	5,500 엔
제 2 종 총사냥 ^{*3}	—	5,500 엔

* 1 산탄총 · 라이플 총

* 2 그물사냥 면허, 올가미사냥 면허는 각각의 구분에 따라 과세됩니다.

* 3 공기총(가스총 포함.)

A: 제1종 총사냥 또는 그물사냥 · 올가미사냥 면허에 관한 수렵자 등록을 받은 분 중 B에 해당하지 않는 분.

B: 도민세의 소득할(所得割)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분 중 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친족 이외의 분. 해당 동일 생계 배우자, 부양 친족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

(주 1) 제 1 종 총사냥 면허등록을 받은 분이 공기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2 종 총사냥에 대한 수렵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 2) 다음 조치가 2024 년 3 월 31 일까지 실시됩니다.

① 대상 조수포획원 · 인정 조수포획원 등 사업자의 종업원에게는 수렵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수렵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의 1 년 이내에 조수보호 및 관리,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당해 허가에 관한 종사자증을 교부 받고, 당해 허가에 관한 조수 포획을 한 경우는 수렵세 세율을 2 분의 1로 합니다.

도(都)담배세

도담배세는 도매판매업자 등이 도내의 소매판매업자에게 담배(수입 담배 포함.)를 판매할 때 등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담배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도(都)담배세가 도의 수입으로 편입되어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납세하실 분]

제조 담배의 제조자, 특정판매업자, 도매판매업자 등

[납세액]

제조 담배 개비 수 (1,000 개비 당)

× 세율

[납세 시기와 방법]

1 개월분의 제조 담배 품목별 판매 개비 수를 합계해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도세사무소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도(都)담배세의 신고와납부는 **미나토(港)도세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율 (1,000개비에 대해)

	도담배세	구시정촌 (区市町村) 담배세	국가담배세	담배특별세 (국세)	합계
2018년 10월 ~ 2020년 9월	930엔	5,692엔	5,802엔	820엔	13,244엔
2020년 10월 ~ 2021년 9월	1,000엔	6,122엔	6,302엔	820엔	14,244엔
2021년 10월 이후	1,070엔	6,552엔	6,802엔	820엔	15,244엔

※제조 담배의 세율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0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숙박세

도내의 여관·호텔에 숙박하는 분에게 과세되는 법정 외 목적세로 2002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숙박세의 세수(稅收)는 국제도시 도쿄의 매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납세하실 분]

도내의 여관 또는 호텔에 숙박하는 분

[납세액]

$$\boxed{\text{숙박 일수}} \times \boxed{\text{세율}}$$

○ 세율

숙박요금(1인 1박)	세율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	200엔

(주) 숙박요금이 1인 1박 10,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숙박요금이란】

식사요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숙박에 한정된 요금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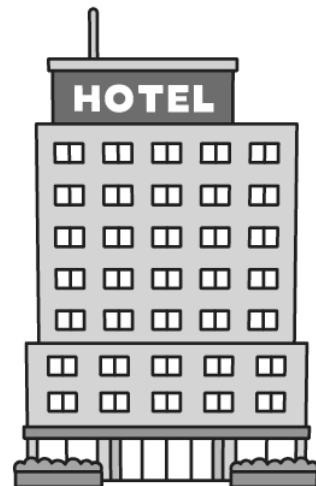
숙박요금에 포함되는 것	• 숙박에 한정된 요금 • 숙박에 한정된 요금에 부과되는 서비스료
숙박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소비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 • 숙박 이외의 서비스에 상당하는 요금 (예) 식사, 회의실 이용, 전화 요금 등

[납세 시기와 방법]

여관·호텔 경영자가 숙박자로부터 세금을 예치하여 1개월분을 합계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지요다(千代田) 도세사무소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우송·창구 신고 외에 도쿄공동전자신청·신고 서비스(<https://www.shinsei.elg-front.jp/tokyo2/>(일본어만))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2017년 11월부터 전자서명이 불필요하며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 등에 따라 2020 년 7 월 1 일부터 2021 년 9 월 30 일까지 이루어진 숙박에 대한 숙박세 과세를 정지합니다.

과세 정지 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대상자	도내의 여관 · 호텔*의 모든 숙박자

* 여관 · 호텔이란 여관업법 제3조 제1항의 영업 허가를 「여관 · 호텔 영업」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 **2020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박 6일**한

경우 숙박세의 과세는:

연박 도중에 숙박세 과세 정지 기간이 시작된
2020년 7월 1일을 경과할 경우 6월 28일, 29일,
30일 3박분에 대해서 과세되며, 7월 1일, 2일 2박
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6/28 체크인, 7/3 체크아웃인 경우

2020년				
6/28 숙박	6/29 숙박	6/30 숙박	7/1 숙박	7/2 숙박
과세대상			과세대상 외	

●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박 6일**한

경우 숙박세의 과세는:

연박 도중에 숙박세 과세 정지 기간이 종료된
2021년 9월 30일을 경과할 경우 9월 28일, 29일,
30일 3박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2일 2박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9/28 체크인, 10/3 체크아웃인 경우

2021년				
9/28 숙박	9/29 숙박	9/30 숙박	10/1 숙박	10/2 숙박
과세대상 외			과세대상	

도쿄도 세제조사회

도쿄도 세제조사회는 유식자 및 행정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도지사의 자문기관입니다.

2000 년도 창설 이래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지방세제와 국가 · 지방을 통한 세제 전체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해, 지방 전체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 왔습니다.

2019 년도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도쿄도 세제 조사회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디지털 과세에 대해 의논하여 지방세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춘 세제 재검토를 통해 지방세 재원의 확충을 도모함과 더불어 바람직한
지방세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논을 실시하여, 2019 년 10 월에 답신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일본어 만)에는 2019 년도 답신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도쿄도 세제
조사회 답신이나 중간 보고, 조사회 의사록이나 자료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국세

다음의 세금은 국세입니다. 이 외에도 3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국세가 있습니다.

소득세(국세)

[납세하실 분]

- ▶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으로 소득이 있었던 분
- ▶ 일본국내에 주소는 없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던 분 등

[납세액]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공제액}$$

- 소득공제액 8페이지 및 10페이지 참조
- 세율(환산표)

2015 년분부터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 만엔 이하		5%	0 엔	
195 만엔 초과 ~	330 만엔 이하	10%	97,500 엔	
330 만엔 초과 ~	695 만엔 이하	20%	427,500 엔	
695 만엔 초과 ~	900 만엔 이하	23%	636,000 엔	
900 만엔 초과 ~	1,800 만엔 이하	33%	1,536,000 엔	
1,800 만엔 초과 ~	4,000 만엔 이하	40%	2,796,000 엔	
4,000 만엔 초과		45%	4,796,000 엔	

- *1 과세되는 소득금액에서 1,000 엔 미만의 수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 *2 변동소득이나 임시소득에 대한 평균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의 조정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도 이 표로 계산합니다.
- *3 복구특별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90 페이지 참조)

- 세액공제액 66 페이지 참조

[납세 시기와 방법]

(1) 원칙

1년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본인이 계산하여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납세제도)

(2)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에서 예상세액이 원천징수되며 연말에 1년간의 급여총액이 확정되었을 때 연말 조정을 통해 세액이 정산되므로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위의 (1)과 마찬가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A) 그해 중에 지불받는 급여 등의 금액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사람
- (B) 한 곳에서 급여 등을 지불받고 있는 분 중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사람
- (C) 두 곳 이상에서 급여 등을 지불받고 있는 분 중 주된 급여 등 이외의 급여 등의 수입 금액과 급여 소득 및 퇴직 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분 등

(3) 연금소득자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이 400만엔 이하로, 그 공적연금 등의 전부가 원천징수 대상이며 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기 (2) 또는 (3)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의료비공제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적용 초년분) 등을 받고 있는 분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102페이지 참조)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확정신고서 등 작성코너」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일본어 만).—
화면의 안내에 따라 금액 등을 입력하면 세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서와 청색신고결산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데이터는 인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e-Tax(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일본어 만)(<https://www.nta.go.jp>)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액공제 (주된 내용)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주택용자금공제) 등

주택용자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신축, 취득 또는 증, 개축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한 해 이후 각 연도분의 소득세액에서 일정액이 공제됩니다.

민간 금융기관이나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의 용자나 대출 등을 이용하여 그 상환 기간이 10 년 이상의 할부 상환일 경우에 해당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인정장기우량주택이나 인정저탄소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미사용 주택에 한함)한 경우나 에너지 절약 개수, 배리어프리 개수, 내진 개수 등, 기존 주택의 개수공사를 한 경우 소득세의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102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법인세(국세)

[납세하실 분]

회사 등의 법인(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이나 인격이 없는 사단 등도 포함)

[납세액]

$$\boxed{\text{소득금액}} \times \boxed{\text{세율}} - \boxed{\text{세액공제액}}$$

○ 세율

사업개시연도		2018년 4월 1일 이후		2016년 4월 1일 ~2018년 3월 31일		2015년 4월 1일 ~2016년 3월 31일	
법인 등의 구분	연소득	800 만엔 이하 부분	800 만엔 초과 부분	800 만엔 이하 부분	800 만엔 초과 부분	800 만엔 이하 부분	800 만엔 초과 부분
	연소득						
보통법인	중소법인 ^{*1}	15% ^{*4}	23.2%	15%	23.4%	15%	23.9%
	중소법인 이외의 법인	23.2%		23.4%		23.9%	
인격이 없는 사단 등		15% ^{*4}	23.2%	15%	23.4%	15%	23.9%
공익법인 등	일반 사단법인 등 ^{*2} 공익 법인 등으로 간주되는 것 ^{*3}	15% ^{*4}	23.2%	15%	23.4%	15%	23.9%
	상기 이외의 공익법인 등	15% ^{*4}	19%	15%	19%	15%	19%
협동조합 등(단독) 특정의 의료법인(단체)		15% ^{*5}	19% ^{*6}	15%	19% ^{*6}	15%	19% ^{*6}
협동조합 등(연결) 특정의 의료법인(연결)		16% ^{*5}	20% ^{*6}	16%	20% ^{*6}	16%	20% ^{*6}

*1 자본금 액수 혹은 출자금 액수가 1억엔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인과의 사이에 해당 대법인에 의한 완전 지배 관계가 있는 보통법인 등의 일부 법인을 제외합니다.

*2 비영리형 법인인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 및 공익사단 법인 및 공익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인가 자연 단체, 관리조합 법인, 단지관리조합 법인, 법인인 정당 등, 방재 가구(街区)정비 사업 조합,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및 맨션 재건축조합, 맨션 부지매각 조합 및 부지분할 조합을 말합니다(부지분할 조합에 대해서는 맨션의 관리 적정화 유지에 관한 법률 및 맨션 재건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일부터.).

*4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시작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

2019년 4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에 대해 사업연도 시작일 전 3년 이내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의 연평균액이 15억엔을 넘는 보통 법인에 대해서는 19%.

*5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시작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

2019년 4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에 대해 사업연도 시작일 전 3년 이내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의 연평균액이 15억엔을 넘는 특정 의료 법인에 대해서는 800만엔 초과 부분의 세율과 동일.

*6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등의 연 10억엔 초과 부분은 22%.

[납세 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102 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지방법인세(국세)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주민주세 법인세율의 세율이 인하되며 지방법인세가 창설됩니다.

[납세하실 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액]

과세표준법인 세액

×

세율

개시사업연도	2019년 10월 1일 이후	2014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까지
세율	10.3%	4.4%

[납세 시기와 방법]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102 페이지 참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증여세(국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분에게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납세하실 분]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분

[납세액](역년과세의 경우)

$$\boxed{\text{(그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 기초공제 110만엔)}} \times \boxed{\text{세율}} - \boxed{\text{속산표공제액}}$$

○ 세율(속산표)

기초공제 후의 과세가격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			
	일반세율		특별세율*	
	세율	공제액	세율	공제액
200만엔 이하	10%	0만엔	10%	0만엔
300만엔 이하	15%	10만엔	15%	10만엔
400만엔 이하	20%	25만엔		
600만엔 이하	30%	65만엔	20%	30만엔
1,000만엔 이하	40%	125만엔	30%	90만엔
1,500만엔 이하	45%	175만엔	40%	190만엔
3,000만엔 이하	50%	250만엔	45%	265만엔
4,500만엔 이하	(3,000만엔 초과)	400만엔	50%	415만엔
4,500만엔 초과			55%	640만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해의 1월 1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분에게 한함)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세 시기와 방법]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증여를 받은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102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속 시 정산과세

상속 시 정산과세는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증여재산의 증여 시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격을 합계한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지불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증여를 받은 해의 1월 1일에 만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만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분의 선택에 의해 2,500만엔(특별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곱한 액수를 증여세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자기 거주용 가옥 등의 취득자금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만60세 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도 상속 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시 정산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의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 상속시 정산과세 선택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서(102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자공제의 특례~부부간의 거주용 부동산 증여 특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간에 거주용 부동산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기초공제액 110만엔 외에 최고 2,000만엔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취득 등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특례

만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취득 등 자금^{*1}을 증여받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용 가옥 취득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취득 등 자금 중 일정 금액^{*2}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의 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102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1 주택취득 등 자금이란 증여를 받은 분이 자신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가옥의 신축, 취득 또는 증, 개축 등의 대가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 금전을 말합니다.

*2 주택의 종류, 주택용 가옥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기간 등에 따라 비과세 한도액이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교육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특례

2013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자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등에 신탁 등을 한 경우,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 등을 통해 교육자금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를 받은 분(만 30세 미만으로 전년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지 않는 분에게 한함) 한 사람당 1,500만엔(학교 등 이외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500만엔 한도)까지 증여세의 비과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육아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특례

2015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결혼·육아자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등에 신탁 등을 한 경우, 금융기관 등의 영업소 등을 통해 결혼·육아 자금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를 받은 분(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전년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지 않는 분에게 한함) 한 사람당 1,000만엔(결혼 시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엔 한도)까지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국세)

[납세하실 분]

상속이나 유증(유언에 의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분

[납세액]

아래의 「세액의 계산방법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2014 년분 이전은 기초 공제액 등이 다릅니다.

○세율(속산표)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액수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세율	공제액
1,000 만엔 이하	10%	0 만엔
3,000 만엔 이하	15%	50 만엔
5,000 만엔 이하	20%	200 만엔
1 억엔 이하	30%	700 만엔
2 억엔 이하	40%	1,700 만엔
3 억엔 이하	45%	2,700 만엔
6 억엔 이하	50%	4,200 만엔
6 억엔 초과	55%	7,200 만엔

[납세 시기와 방법]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 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사망 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102 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세액의 계산방법은?

(1) 각 상속인별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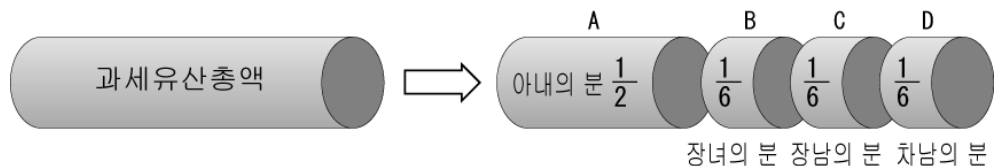
$$\boxed{\text{각각의 과세 가격}} = \boxed{\text{상속한 재산 가액}} + \boxed{\text{상속 시 정산과세를 적용한 재산가액}} - \boxed{\text{채무나 장례비용의 액수}} + \boxed{\text{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2) 과세유산총액을 계산합니다.

$$\boxed{\text{과세유산총액}} = \boxed{\text{[실질 유산액] 각각의 과세가격의 합계액}} - \boxed{\text{[기초공제] 3,000만엔}} + \boxed{\text{600만엔} \times \text{법정상속인수*}}$$

* 법정상속인수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양자에 대해서는 친자식이 있는 경우는 1명까지, 친자식이 없는 경우는 2명까지 법정상속인수에 포함합니다.

(3) 과세유산총액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4) 각각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합계합니다.



(5) 상속세의 총액을 실질 유산액에 대한 각각의 과세가격의 비율로 나눕니다.



(6) 각 상속인별로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 상속세의 경감은?

(1) 배우자의 세액경감

$$\boxed{\text{배우자의 세액경감 후의 세액}} = \boxed{\text{배우자의 상속세액}} - \boxed{\text{상속세의 총액}} \times \frac{\boxed{\text{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최저 1억 6,000 만엔) 또는 실제 취득액 중에서 적은 쪽의 금액}}}{\boxed{\text{과세가격의 합계액}}}$$

배우자의 실제 취득액(과세가격)이 1억 6,000 만엔 이하이거나 1억 6,000 만엔을 초과한 경우라도 법정상속분 상당액 이하이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 공제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1년당 10만엔이 공제됩니다.

(3) 장애인 공제

8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1년당 10만엔* 이 공제됩니다.

*특별장애인인 경우는 20만엔

자동차 종량세(국세)

[납세하실 분]

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계속검사 등을 위해 자동차검사증(차검증)의 교부나 자동차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는 분

[납세액]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세율표(발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세율표(자가용차)(발체)

차종	검사기간		세율	
			에코카 감세 적용 없음	에코카 감세 적용 있음*(본칙 세율)
승용차	3년	차량 종량 0.5t 당	12,300엔	7,500엔
	2년		8,200엔	5,000엔
	1년		4,100엔	2,500엔
경자동차 (이륜차 제외)	3년	한 대 당	9,900엔	7,500엔
	2년		6,600엔	5,000엔

* 일정 배출 가스 성능·연비 성능 등을 갖춘 자동차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신차 신규 등록 등을 한 경우 에코카 감세가 적용되어 면세 또는 본칙 세율로부터 75%·50%·25%를 경감하도록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능에 따라 2회째 차량 검사에서도 면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신차 신규 등록 등으로부터 13년 및 18년을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 시기와 방법]

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계속검사 등을 위해 자동차검사증(차검증)의 교부나 자동차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도쿄 운수지국 또는 자동차 검사등록사무소, 경자동차 검사협회에 자동차 종량세 인지를 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 운수지국 또는 자동차 검사등록사무소, 경자동차 검사협회(73 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동차 등록신청에 관한 주요 문의처(헬프데스크)>

시나가와·세타가야 넘버	도쿄운수지국	050-5540-2030(일본어 만)
아다치·고토·가쓰시카 넘버	도쿄운수지국 아다치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31(일본어 만)
네리마·스기나미·이타바시 넘버	도쿄운수지국 네리마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32(일본어 만)
다마 넘버	도쿄운수지국 다마 자동차검사 등록사무소	050-5540-2033(일본어 만)
하치오지 넘버	도쿄운수지국 하치오지 자동차검사등록사무소	050-5540-2034(일본어 만)

등록면허세(국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등의 등기나 주식회사 등의 설립 등기 등을 할 때에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부동산 등기나 법인 상업 등기 등을 하시는 분

[납세액]

○세율표(부동산 등기의 주요 부분을 발췌)

등기의 종류		납세액
소유권이전 등기	상속·법인의 합병	부동산가격 × 0.4%
	증여	부동산가격 × 2.0%
	매매	부동산가격 × 2.0%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가격 × 0.4%
지당권 설정등기		채권금액 × 0.4%
가등기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공유물건의 분할에 의한 경우는 제외)	부동산가격 × 1.0%
	그 외의 가등기	본등기 세율의 1/2 또는 부동산 1건당 1,000 엔

(주 1) 2013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토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5%, 토지 소유권의 신탁 등기는 0.3%로 인하됩니다.

(주 2) 부동산가격은 통상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평가액)이 적용됩니다.

(주 3) 주택용 가옥의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및 주택취득자금의 대출 등에 필요한 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대하여 경감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4) 개인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택지건물거래업자를 통해 일정한 증, 개축 등을 실시한 일정한 주택용 가옥을 취득하는 경우, 가옥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0.1%로 인하됩니다.

[납세 시기와 방법]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 영수증서를 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세액이 3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또는 법무국(102·103 페이지 참조)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구시정촌(区市町村)세의 개요

아래의 세금은 구시정촌(区市町村)세입니다. 이 외에도 3 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구시정촌(区市町村)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시청(区・市役所), 정촌사무소(町村役場)(101 페이지 참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개인주민세(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개인의 도민세와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는 일반적으로「개인주민세」라고 불립니다. 개인주민세는 구시정촌(区市町村)이 도민세분과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분을 합계하여 과세합니다.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는 6 페이지 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법인주민세(시정촌(市町村)민세)

도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이 있는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도민세와 시정촌(市町村)민세의 두 종류가 있으며 합쳐서 ‘법인주민세’라고 합니다. 23 구 내의 법인은 도쿄도의 특례가 적용되어 시정촌(市町村)민세 상당분과 함께 도민세로 도세사무소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시정촌(市町村)에 있는 법인은 시청(市役所)·정촌사무소(町村役場)에 시정촌(市町村)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27 페이지 이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4 월 1 일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이륜 소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됩니다. 구·시청(区・市役所), 정촌사무소(町村役場)에서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4 월 또는 5 월에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의 구·시청, 정촌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 2019 년 10 월 1 일부터 경자동차세는 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은?

차 종				연액(표준세율)
원동기장치자전거		총배기량 50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600W 이하		2,000 엔
	이륜	총배기량 50cc 초과 · 90cc 이하또는 정격출력 600W 초과 · 800W 이하		2,000 엔
	"	총배기량 9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800W 초과		2,400 엔
	삼륜 이상	총배기량 2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250W 초과		3,700 엔*1
경자동차	이륜(사이드카 장착 포함)			3,600 엔
	삼륜			3,900 엔(3,100 엔)*2~*4
	사륜 이상	승용	영업용	6,900 엔(5,500 엔)*2~*4
			자가용	10,800 엔(7,200 엔)*2~*4
		화물용	영업용	3,800 엔(3,000 엔)*2~*4
			자가용	5,000 엔(4,000 엔)*2~*4
이륜 소형자동차				6,000 엔

<경자동차등록 관련 문의처>

경자동차검사항회 (일본어 만)

도쿄주관사무소

(시나가와, 세타가야 넘버)

050-3816-3100

도쿄주관사무소 네리마 지소

(네리마, 스기나미, 이타바시 넘버)

050-3816-3101

도쿄주관사무소 아다치 지소

(아다치, 고토, 가쓰시카 넘버)

050-3816-3102

도쿄주관사무소 하치오지 지소

(하치오지 넘버) 050-3816-3103

도쿄주관사무소 다마 지소

(다마 넘버) 050-3816-3104

(주) 신청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시청, 정촌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1 규격에 따라 연액이 2,000엔인 경우도 있습니다

*2 ()안은 2015년도 3월 31일까지 첫 번째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3 아래의 경자동차(신차에 한함.)에 대해서는 취득 다음 해 분에 한하여 세율을 경감하는 조치(그린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0년도 중에 신규 취득한 일정 배기가스 및 연비 성능을 갖춘 경자동차:세율을 대략 75~25% 경감

• 2021, 2022년도 중에 신규 취득한 전기자동차 등:세율을 대략 75% 경감

*4 첫 번째 신규검사에서 13년을 경과한 사륜차 등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약 20% 초과세됩니다.

입욕세

환경위생시설, 광천원(鉱泉源)의 보호관리시설, 소방시설 등의 정비나 관광진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욕장의 입욕객에 대해 1 인 1 일당 150 엔(표준세율)이 과세됩니다. 욕장의 경영자가 입욕객으로부터 세금을 예치해 구·시청(区・市役所), 정촌사무소(町村役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세액이 100만엔 미만의 납부서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 외에 세액에 따른 결제수수료(처음 1만엔까지는 73엔, 이후 세액이 1만엔 증가할 때마다 73엔이 가산됩니다(소비세 별도)).
- 지불이 완료되면 지불 취소나 결제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세액이 환급되는 경우에도 결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영수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서가 필요한 분은 도세사무소·금융기관 등의 창구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아래의「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계속지불은 할 수 없습니다. 작년도에 수속하신 분이라도 금년도에 이용하시는 경우는 다시 수속하여야합니다.
- 납세증명서는 즉시 발행되지 않습니다. 지불 수속을 완료하시고 약 10일 후부터 납세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 1시~오전 7시까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아래의 마크가 부착된 카드입니다.
VISA, MasterCard, JCB, AmericanExpress, Diners Club, TS CUBIC CARD



- 도세사무소·금융기관 등의 창구나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 사이트(도세 신용카드 지불사이트)(일본어 만)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도쿄도 세금 신용 카드 결제 사이트 <https://zei.metro.tokyo.lg.jp/>>

스마트폰 결제 어플로 납부

스마트폰 결제 어플 청구서 지불 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서 바코드를 인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납부서

- 1장당 합계 금액이 30만엔까지인 납부서(바코드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주의사항

- 영수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서가 필요한 분은 도세사무소, 금융기관 등의 창구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아래의「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납부 수속 완료 후에 납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 어플은 아래 어플입니다. (2020년 9월 시점)
PayPay, LINE Pay

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분에게

차량검사를 받은 운수지국 등의 창구에서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납세확인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차량검사 시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Pay-easy(페이지)·스마트폰 결제 어플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는 우송하지 않습니다.

차량검사용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Pay-easy(페이지) 납부 및 스마트폰 결제 어플로 납부한 경우에는 약 1주일 후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약 10일 후에 도세사무소·자동차세사무소·도세증명 우편접수센터 등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차량검사 임박 등의 이유로 서두르시는 경우에는 도세사무소·금융기관 등의 창구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신 후 납부서 오른쪽에 있는 납세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으로 납부(eLTAX 전자납세)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이란 eLTAX를 통해 모든 도도부현, 구시정촌(区市町村)으로 자택이나 직장 컴퓨터에서 일괄로 전자납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

법인도민세, 법인사업세, 특별법인사업세, 지방 특별법인사업세, 사업소세

●납부 방법(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납부

사전에 신고한 금융기관에서 간단한 클릭 조작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eLTAX에서 발행한 납부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정보:수납기관번호·수납번호·확인번호·납부구분

●주의사항

- 영수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서가 필요한 분은 금융기관 등의 창구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 다이렉트 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LTAX 대응 소프트웨어에서 출력한 「지방세 다이렉트 납부 계좌이체 의뢰서」를 금융기관으로 송부하여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등록까지 최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 조작 방법 및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은 eLTAX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eLTAX 홈페이지: <https://www.eltax.lta.go.jp/>>

계좌 이체

계좌이체는 이용하고 있는 예(저)금계좌에서 납기 말일(납부기한)에 자동으로 납세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세

- 개인사업세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토지·가옥(23구내))*
- 고정자산세(상각자산(23구내))*
- * 수시과세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취급금융기관

도쿄도 공공수납 취급금융기관(일부, 도세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다음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eb으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한	주의
도세 Web 계좌이체 신청 접수 서비스	전용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계좌이체를 개시하려고 하는 달의 당월 10일까지. *	법인 계좌나 사업용 계좌는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납부 기한이 그 달의 제1 관공서 업무일인 경우에는 전달 10일이 신청 기한입니다. 기타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니 상세한 내용은 전용 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URL: https://www.tax.metro.tokyo.lg.jp/common/web_kouzafurikae.html

의뢰서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한	주의
①도세 계좌이체 의뢰서(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다운로드 전용)	주세국 홈페이지(일본어 만)에서 의뢰서를 다운로드·인쇄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의뢰서에 기재된 송부처로 우송하여 주십시오.	계좌이체를 개시하려고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신청하실 때는 홈페이지(일본어 만)에 있는 주의사항·기재 예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②도세 계좌이체 의뢰서(3장 복사식)	도의 공금을 취급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 창구에서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우체국에 가실 때는 ①예(저)금통장 ②통장인감 ③납세통지서 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③도세 계좌이체 의뢰서(엽서식)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후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신청하실 때는 홈페이지(일본어 만)에 있는 주의사항·기재 예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납부 기한이 그 달의 제1 관공서 업무일인 경우에는 전달 10일이 신청 기한입니다.

계좌이체에 대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주세국 홈페이지의 「도세 Q&A」(일본어 만)
(<https://www.tax.metro.tokyo.lg.jp/shitsumon/tozei/kouzafurikae.html>)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계좌이체 문의처(일본어 만)>

주세국 징수부 납세추진과 03-3252-0955(평일 9시~17시)

※주소 변경이나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도세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체납이란?

체납이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세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독촉장 등이 발부됩니다만 그 후에도 납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체납처분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 법률에는 「독촉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해 10일을 경과한 날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해도 납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납세한 납세자와의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 후 체납이 계속되면 부득이하게 차압 재산을 환금(채권의 징수나 부동산 등을 공매)하여 도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속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연체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율(연이자)로 계산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연체금	본칙	특례	연체금 특례기준비율*3	평균 대부 비율
납기 다음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7.3%	연체금 특례기준비율 +1%*1	평균 대부 비율+1%	조세특별조치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재무대신이 고지한 비율을 말합니다.
납기 다음날부터 1개월 경과 이후	14.6%	연체금 특례기준비율 +7.3%*2		

*1 「연체금 특례기준비율+1%」가 7.3%를 넘는 경우는 본칙이 적용됩니다.

*2 「연체금 특례기준비율+7.3%」가 14.6%를 넘는 경우는 본칙이 적용됩니다.

*3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특례기준비율」이라고 칭합니다. 2020년 중의 비율은 1.6%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연체금	본칙	특례	특례기준비율
납기 다음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7.3%	특례기준비율*4	각 연도의 전년 11월 30일을 경과할 때의 상업어음 기준할인율에 연 4%의 비율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납기 다음날부터 1개월 경과 이후	14.6%	특례기준비율 없음	

*4 2000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적용된 특례입니다.

특례기준비율이 7.3%를 넘는 경우는 본칙이 적용됩니다.

연체금 계산

<2014년 1월 1일 이후>

$$\text{연체금} = \frac{\text{세액} \times \text{일수 A} \times (\text{연체금 특례기준비율}+1\%)}{365(\text{일})} + \frac{\text{세액} \times \text{일수 B} \times (\text{연체금 특례기준비율}+7.3\%)}{365(\text{일})}$$

<2013년 12월 31일 이전>

$$\text{연체금} = \frac{\text{세액} \times \text{일수 A} \times \text{특례기준비율}}{365(\text{일})} + \frac{\text{세액} \times \text{일수 B} \times 14.6\%}{365(\text{일})}$$

일수 A: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일수

일수 B: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에서 납부일까지의 일수

(주1) 100엔 이하의 금액 또는 전액이 1,000엔 미만인 연체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2)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도민세에서 확정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기간 내의 연체금 비율은 상업 어음의 기준할인율(종래의 공정보험)에 따라 변경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의 연체금 비율은 특례기준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연체금률에 대해서는 「평균 대부 비율」에 연 0.5%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납입)에 부과되는 가산금

법인사업세나 경유인취세, 사업소세 등 신고납부(납입)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액이 적거나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가산금	기간 내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가 실제보다 소액인 이유로 증액의 경정을 받은 경우 등	증차세액의 10%(15%)
비신고 가산금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5% 또는 15%(20%) (추가로 10%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 가산금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려고 한 경우	증차세액의 35% 또는 40% (추가로 10%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한 것에 적용합니다.

●과오납금의 환급, 충당

과도하게 납입한 도세나 잘못 납입한 세금(과오납금)은 환급됩니다. 단, 환급받는 분에게 아직 납입하지 않은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세에 충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발생 이유에 따라 정해진 날부터 환급 지출을 결정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환급가산금 특례기준비율*(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특례기준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해야 할 금액에 가산합니다.

$$\text{환급가산금} = \text{과오납금액} \times \text{일수} \times \text{환급가산금 특례기준비율}^*(2020\text{년 } 12\text{월 } 31\text{일까지는 특례기준비율}) / 365\text{일}$$

* 환급가산금 특례기준비율이란 「평균 대부 비율」에 연 0.5%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징수유예와 환가유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시에 납세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납세가 유예되어 분할 등으로의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91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조 건	○재산이 재해(지진, 풍수해, 화재 등)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나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경우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상기와 유사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 ○법정납부기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된 경우 ○일시에 납부·납입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이나 생활 유지가 곤란해질 때
유예 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분납이 인정됩니다. ○연체금의 비율은 유예 특례기준비율*(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특례기준비율)을 한도로 하며, 이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면제됩니다. 또한 이유에 따라서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징수유예 신청서 또는 환가유예 신청서 ○징수유예의 경우 유예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재해·도난증명서, 법인은 최근의 결산서류 등) ○담보제공서, 자산목록, 수지 명세서 등
담보의 제공	○원칙적으로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국채, 지방채, 토지, 보험에 가입한 건물, 보증인의 보증 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예금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 유예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도민세, 개인사업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환경성능환(環境性能割), 경유인취세에는 각각 독자적 징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 유예 특례기준비율이란 「평균 대부 비율」에 연 0.5%의 비율을 가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불복의 제기와 소송 ~납세자 구제제도~

도세의 과세나 징수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행정불복심사법 및 행정사건소송법에 의해 불복을 제기하거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납세통지서, 경정·결정 등 통지서, 독촉장 등에 불복제기 및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불복제기*1	도세의 과세나 징수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날(예를 들어 납세통지서를 수취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2 이내에 도쿄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반드시 서면(정·부 2통)으로 도쿄도지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한 심사청구서는 도세사무소장 또는 지정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해도 재결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 관한 사항 중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가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도쿄도 고정자산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심사청구 기간의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제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도내*에 주주·거주·사무소·사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납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를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도세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특별토지보유세·사업소세는 23구 내

(1) 대상이 되는 도세

개인사업세, 개인도민세*, 법인사업세, 법인도민세, 부동산취득세, 골프장 이용세,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광구세,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특별토지보유세, 사업소세

* 개인도민세는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와 함께 과세됩니다. 개인도민세의 납세관리인 선정 수속에 대해서는 구·시청(区・市役所), 정촌사무소(町村役場)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 분

도내*에 주소 등을 가지신 분(법인을 포함)

*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 특별토지보유세 · 사업소세는 23구 내

(3) 수속

관할 도세사무소에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식은 도세사무소 외 도교도주세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권의 기간제한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도세의 과세나 경정·결정이 무제한 과거로 소급하여 이루어지거나 납부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세금을 상당 연수가 경과한 후에 최고(催告)받게 된다면 납세자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과세나 징수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과세가 가능한 기간

법정 납부기한(납기를 나눈 경우에는 제1기분의 납부기한. 그때마다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 취득세나 자동차세 환 경성능할(環境性能割) 등은 과세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아래의 기간을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용		과세할 수 있는 기간
(1) 새로 과세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A.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도세(B를 제외)	3 년간
	B.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5 년간
	C. 신고납부,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도세, 가산금	
(2) 세액 · 가산금을 감액한 경우		7 년간
(3) 허위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		
(4) 특례	납세자로부터 불복 제기나 소송제기가 있었던 경우	(1) ~ (3)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재결이나 판결일로부터 6개월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없게 되는 날 이전 3 개월 이내에 신청서*1 가 제출됨에 따른 비신고 가산금의 결정을 하는 경우	(1)C의 기간을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 개월간 과세할 수 있습니다.*2
	경정할 수 없게 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있었던 경우, 그 경정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할 경우	(2)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6 개월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세, 특별법인사업세와, 지방법인특별세 지방 소비세에서 국가의 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세의 경정 · 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	그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2 년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1 조사에 의한 경정 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된 것을 제외합니다.

* 2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비신고 가산금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원 칙	
시효 완성 유예 및 갱신*	법정납부기한 또는 위의 표(4)의 특례의 경우 재결, 처분 등이 있던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세금의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허위나 부정이 있을 때	독촉, 차압 등의 이유로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으며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5년간의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징수 또는 환가 유예 중인 기간	위의 표(3)의 경우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최장 2년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시효는 7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내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2020년 3월 31일까지 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도 존속됩니다.

감면에 대하여

납세자나 과세대상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세의 감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까지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종별할(種別割)) 및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의 경우는 도세종합사무센터·자동차세사무소·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

●주된 감면 제도의 종류

세 목	주요 감면 이유 또는 감면 대상
개 도 민 세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를 받는 등의 이유로 개인의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가 감면된 경우 (수속 등은 거주하는 구시정촌(区市町村)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 사 업 세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 ○재해, 도난, 횡령 등에 인해 자산에 현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납세자 또는 부양친족 등이 장애인 또는 특별장애인인 경우 ○에너지 절약 설비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취득한 경우
법인사업세	○에너지 절약 설비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취득한 경우(중소기업자 대상)
부 동 산 취 득 세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권리변환수속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취득세 납부기한까지 재해 등에 의해 멸실·손괴한 경우 또는 감실·손괴한 부동산에 대신하는 부동산을, 재해 등의 이후 3년 이내에 취득한 것 ○공공사업으로 인해 되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에 대신하는 가옥을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대체 가옥을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23 구 내)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이 소유하는 고정자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해 물납된 고정자산 ○부과기일(1월 1일) 후에 국가 등에 무상으로 양도된 고정자산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여, 공용 혹은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고정자산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대한 손해를 입은 고정자산



세 목	주요 감면 이유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경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공익을 위해 직접 전용하는 자동차 ○구조상 전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등 장애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분이 소유하는 자동차로 장애인 자신이 운전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분이 그 장애인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 * 감면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51·53·55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 신체장애인																											
	<table><tr><th colspan="2">장애의 구분</th><th>신체장애인수첩</th></tr><tr><td colspan="2">하지기능 장애</td><td>1 급~6 급</td></tr><tr><td colspan="2">체간기능 장애</td><td>1 급~3 급·5 급</td></tr><tr><td colspan="2">상지기능 장애</td><td>1 급·2 급</td></tr><tr><td rowspan="2">영유아기 이전의 비진행성 뇌병변에 의한 운동기능 장애</td><td>상지기능</td><td>1 급·2 급</td></tr><tr><td>이동기능</td><td>1 급~6 급</td></tr><tr><td colspan="2">시각 장애 (시력 장애·시야 장애)</td><td>1 급~3 급·시력 장애 4 급(4 급의 1)</td></tr><tr><td colspan="2">청각 장애</td><td>2 급·3 급</td></tr><tr><td colspan="2">평형기능 장애</td><td>3 급·5 급</td></tr></table>		장애의 구분		신체장애인수첩	하지기능 장애		1 급~6 급	체간기능 장애		1 급~3 급·5 급	상지기능 장애		1 급·2 급	영유아기 이전의 비진행성 뇌병변에 의한 운동기능 장애	상지기능	1 급·2 급	이동기능	1 급~6 급	시각 장애 (시력 장애·시야 장애)		1 급~3 급·시력 장애 4 급(4 급의 1)	청각 장애		2 급·3 급	평형기능 장애		3 급·5 급
	장애의 구분		신체장애인수첩																									
	하지기능 장애		1 급~6 급																									
	체간기능 장애		1 급~3 급·5 급																									
	상지기능 장애		1 급·2 급																									
	영유아기 이전의 비진행성 뇌병변에 의한 운동기능 장애	상지기능	1 급·2 급																									
		이동기능	1 급~6 급																									
	시각 장애 (시력 장애·시야 장애)		1 급~3 급·시력 장애 4 급(4 급의 1)																									
청각 장애		2 급·3 급																										
평형기능 장애		3 급·5 급																										
<table><tr><th>장애의 구분</th><th>신체장애인수첩</th></tr><tr><td>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 장애</td><td>3 급 (후두적출에 관련 된 장애에 한함)</td></tr><tr><td>심장기능 장애</td><td>1 급·3 급·4 급</td></tr><tr><td>신장기능 장애</td><td>1 급·3 급·4 급</td></tr><tr><td>호흡기능 장애</td><td>1 급·3 급·4 급</td></tr><tr><td>방광 혹은 직장기능 장애</td><td>1 급·3 급·4 급</td></tr><tr><td>소장기능 장애</td><td>1 급·3 급·4 급</td></tr><tr><td>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기능 장애</td><td>1 급~3 급</td></tr><tr><td>간장기능 장애</td><td>1 급~4 급</td></tr></table>		장애의 구분	신체장애인수첩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 장애	3 급 (후두적출에 관련 된 장애에 한함)	심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신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호흡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방광 혹은 직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소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기능 장애	1 급~3 급	간장기능 장애	1 급~4 급									
장애의 구분	신체장애인수첩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 장애	3 급 (후두적출에 관련 된 장애에 한함)																											
심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신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호흡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방광 혹은 직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소장기능 장애	1 급·3 급·4 급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기능 장애	1 급~3 급																											
간장기능 장애	1 급~4 급																											
(2) 전상병자(戰傷病者)																												
<table><tr><td>전상병자수첩</td><td>해당하는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는 도쿄도 자동차세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td></tr></table>		전상병자수첩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는 도쿄도 자동차세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전상병자수첩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는 도쿄도 자동차세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3) 지적장애인																												
<table><tr><td>사랑의 수첩 (양육 수첩)</td><td>종합판정 1 도~3 도</td></tr></table>		사랑의 수첩 (양육 수첩)	종합판정 1 도~3 도																									
사랑의 수첩 (양육 수첩)	종합판정 1 도~3 도																											
(4) 정신장애인																												
<table><tr><td>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자립지원 의료 수급자증을 갖고 계시는 분에 한함)</td><td>1 급</td></tr></table>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자립지원 의료 수급자증을 갖고 계시는 분에 한함)	1 급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자립지원 의료 수급자증을 갖고 계시는 분에 한함)	1 급																											
(주 1)장애인 한 분당 1 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 2)또한, 경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의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구시정촌(区市町村)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세 (23 구 내)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대한 손해를 입은 사업소용 가옥																											
경유인취세	○재해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미과세 또는 면세경유가 유출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도쿄도세에 관한 증명 등의 수속에 대하여

●도세에 관한 증명 등의 종류

		개 요
납세 증명		납부(납입)해야 하는 금액, 납부(납입)한 금액 및 미납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금년도를 포함해 6년도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납세 증명 (계속 검사 등 용)		자동차의 차량 검사(계속 검사·구조 등 변경 검사)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납세 통지서·납부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증명서를 분실하신 경우 등에는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운수지국 및 자동차 검사 등록 사무소 등의 창구에서 납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차량 검사시에 납세 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세 확인이 가능하기까지 납부 후 최대 10 일가량 소요됩니다.)
체납 처분을 받은 적 없다는 사실 증명		도세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체납(미납)이 없다는 사실 증명」이 아닙니다. 도쿄도에서는 「체납(미납)이 없다는 사실 증명」은 발행하지 않으니 필요하신 세목이나 연도를 확인하시고 납세 증명(일반용)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주류 제조 판매 면허 신청을 위한 증명		도세에 대해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① 과거 2년 이내에 도세 체납 처분을 받은 자 ② 도세에 대한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음 ③ 현재 도세를 체납하고 있음
고정자산	평가증명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해당 연도의 부과 기일 현재의 고정 자산의 평가액, 과세 표준액, 소유자, 소재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금년도 분을 포함한 6년도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과)증명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해당 연도의 부과 기일 현재의 고정 자산의 평가액, 과세 표준액, 세액, 소유자, 소재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금년도 분을 포함한 6년도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건(物件)증명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어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등기 고정 자산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분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보충) 과세 대장		고정 자산의 소재, 소유자, 상황, 과세표준인 가격 등이 등록된 공부입니다. 토지·가옥의 경우, 지목 또는 종류, 지적 또는 바닥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각자산의 경우 종류,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을 포함한 6년도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옥 명기장(名寄帳)		고정자산(보충) 과세 대장에 기반하여 납세 의무자별로 그 토지 및 가옥에 관한 등록 사항을 일람으로 만든 장부입니다. 금년도 분을 포함한 6년도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地籍図)		토지 지번 등을 명기한 지도입니다. 토지가 소재하는 구에 있는 도세 사무소에서 금년도 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등 신고서 제출 증명서(법인)		법인이 사업 개시 등 신고서(법인 설립 설치 신고서·이동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세증명서를 취득하려면

●신청하실 곳 우편에 의한 신청은 8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세의 납세증명서는 모든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의 종류		신청처 사무소
납세증명(일반용)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이외	전 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전 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도세종합사무센터, 자동차세사무소
채납처분 경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전 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주류제조판매의 면허신청을 위한 증명		전 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납세증명(계속 검사 등 용)		전 도세사무소, 도세지소, 지청, 도세종합사무센터, 자동차세사무소

(주)지방법인특별세 및 특별법인사업세(국세)의 증명서는 법인사업세와 합산된 금액으로 발부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

- (1) 증명 사항에 관련된 본인
- (2) 본인의 대리인

●증명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87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 1) 상속인이 증명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①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②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주2)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와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인이란 상업등기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법무국 등에 제출한 도장입니다.

(2) 본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A)와 (B) 모두 필요합니다)

(A)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선임신고 등 본인의 위임 혹은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위임장 등에는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인이란 상업등기법 제 20 조에서 규정한 법무국 등에 제출한 도장입니다.)

(B)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기(1)과 같음)

●증명 수수료는

(1) 납세증명(일반용).....1 장 1 세목당 400 엔

동일 세목에 관한 수 년도분의 증명은 1 건으로 간주합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합쳐서 1 세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또는 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 및 법인도민세는 2 세목으로 계산하므로 수수료는 800 엔입니다.

예:1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부동산취득세의 2 세목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400(엔)×2(세목)×1(통)=800 엔
2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또는 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 및 법인도민세의 2 세목에 대해 2 장의 납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400(엔)×2(세목)×2(통)=1,600 엔

(2) 채납처분 경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1 통 400 엔

(3) 주류제조판매의 면허 신청을 위한 증명.....1 통 400 엔

(주)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납세증명(계속 검사 등 용)의 발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평가증명서 등의 발행 · 열람을 신청하려면

●신청하실 곳 우편에 의한 신청은 8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 증명발행은 23 구 내의 모든 도세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외의 도세사무소에 신청하였을 경우 교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열람 신청은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외의 도세사무소에서는 열람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세 증명 우편 접수 센터로 23 구내의 토지 · 가옥 과세 대장 및 명기장의 열람에 대한 신청서를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86 페이지 참조)

(주 2)23 구 외의 증명 등은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각 시정촌(市町村)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101 페이지 참조)

●신청할 수 있는 분

	증명			열람		
	평가증명	관계증명	물건증명	과세대장	명기장	지적도
고정자산세의 납세의무자(공유자 포함)	○	○	○	○	○	○
토지 · 가옥 임차인* 등	○	×	○	○	×	○
고소를 제기하는 분	○	×	○	×	×	○
소유자(부과기일 후에 소유자가 된 분)	○	×	○	○	×	○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분(파산 재산관재인 등)	△	△	○	△	△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한 토지나 가옥에 대해서

토지(가옥)에 대해서 임차료 등의 대가를 지불하여 임차권 기타의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옥)의 고정자산 과세 대장의 열람신청 및 고정자산 평가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물건(物件)은 임차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물건(物件)에 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87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기재되지 않은 신청자의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도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일본어 만).

(1) 증명 · 열람 사항에 관련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필요한 서류(본인확인서류는 필수)
개인	없음(본인확인서류만으로 가능)*1
법인의 대표자	다음 서류 중 하나 {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법인의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2
법인의 종업원	다음 서류 모두 필요 {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종업원임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3



(2) 위임으로 신청할 경우

위임자	수임자 (신청자)	창구 방문자	필요한 서류(본인확인서류는 필수)	
개인*1	개인		위임자의 위임장	
법인	개인		(위임자의) 법인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개인	법인	대표자	필수	위임자의 위임장
			다음 중 하나	• (수임자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 (수임자의) 법인의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2
		종업원	• 위임자의 위임장 • (수임자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 종업원임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3	
법인	법인	대표자	필수	(위임자의) 법인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다음 중 하나	• (수임자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 (수임자의) 법인의 대표자임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2
		종업원	• (위임자의) 법인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수임자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 종업원임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3	

*1 상속인이 신청 또는 위임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음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및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2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3 종업원증·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주십시오(소속된 법인명과 종업원 성명이 명기된 것에 한정.).

●수수료는 [자세한 사항은 23 구내의 도세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1) 증명발행 수수료 : 1건*1당 400엔*2

*1 토지, 가옥 또는 상각자산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토지 1필, 가옥 1동 또는 상각자산의 종류마다 각각 1건으로 취급합니다.

*2 고정자산 평가증명·고정자산 관계증명·고정자산 물건증명에 대해서는 1회 신청 시 동일 종류의 증명을 2건 이상 신청하신 경우, ‘토지 또는 가옥’, ‘상각자산’ 별로 2건째 이후 1건당 100엔이 됩니다. (단, 동일 소유자로 자산의 소재지가 동일 구내의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열람 수수료 : 1회당 300엔

공부 열람의 경우 부책 1책을 1회로 간주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증명서 등의 신청은 우편으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수수료*(정액소액환으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용 봉투(주소기입, 우표를 붙인 것)를 동봉하여 **증명서 등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송부처로** 보내 주십시오. 증명서의 반송처는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납세의무자(소유자)의 도세 납세통지서 송부처 또는 도세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증명서 등의 종류	신청서 등의 송부처
납세증명서(일반용)	도세 증명 우편 접수 센터 〒112-8787 도쿄도 분쿄구 가스가 1-16-21
자동차세(종별할(種別割)) 납세증명서(계속 검사 등 용)	
채납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주류 제조 판매 면허 신청을 위한 증명서	
23구 내의 고정자산(토지·가옥) 평가증명서·관계증명서·물건(物件)증명서	
23구 내의 토지·가옥 과세대장	
23구 내의 토지·가옥 명기장	
상기 이외의 증명·열람	소관 도세 사무소 등

* 수수료는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내 주십시오.(공급한 사항은 도세사무소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열람과 증명

신청 가능한 분

- (1) 납세자 본인
- (2) 본인의 대리인
- (3) 법령 등에 근거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분

신청자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

등 1~2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세에 관한 공부(公簿)의 열람 및 증명 신청시의 본인확인서류에 대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등의 경우는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선임신고서

등도
필요
합니다

열람

[수수료]
1회당 300엔

열람 가능한 공부(公簿)

- (1) 고정자산과세대장
- (2) 토지·가옥 명기장
- (3) 지적도(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
1세목 1건당 400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법인사업세와 특별법인사업세, 법인사업세와 지방법인사업세는 2 세목을 합쳐 1건

도세에 관한 증명

- (1) 납세증명
- (2) 고정자산평가증명
- (3) 고정자산관계증명
- (4) 고정자산물건증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도세에 관한 증명 (2)~(4)에 대해서는 85・86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주 1) 토지·가옥에 관한 고정자산과세대장의 열람 및 고정자산평가증명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임차인(대가가 지불되는 경우에 한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본인확인서류」외에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전차권(轉借權)을 소유하는 분은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권자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 (주 2) 토지, 가옥 또는 상각자산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토지 1필, 가옥 1동 또는 상각자산의 종류마다 각각 1건으로 계산합니다.

●도세에 관한 공부(公簿)의 열람 및 증명 신청 시의 본인확인서류에 대해

주세국에서는 본인을 사칭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과 증명 신청을 하는 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납세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열람·증명 신청 시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신청하실 경우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다음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 창구에서 제시하시는 서류[본인확인서류] ■

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

A 열람사진이 있는 것

- 운전 면허증
- 여권 등
- 마이넘버카드 등

B 열람사진이 없는 것

- 국민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증
- 국민연금 수첩 등

A, B 이외 특정한 본인 명의의 서류

- C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통지서
- 신용카드·현금카드
- 도쿄도 실버 패스
- 법인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열람사진이 있는 것) 등

↓
A 에서
1 종류

또는

↓
B 에서
2 종류

↓ 또는

↓
B 와 C 에서 각각 1 종류
※C 에서 2 종류는 불가

[예] (○) B 국민연금 수첩 + C 납세통지서 (×) C 납세통지서 + C 신용카드

※ 신청자(창구 방문자)의 본인확인서류(원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 A 및 B의 「본인확인서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사본을 받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 증명 등은 원칙적으로 ①납세통지서 송부처, ②도세사무소 등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중 한 곳으로 송부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 내용(증명서 등의 대상, 신청자 등)이 과세 대장 등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증명서 등의 송부처가 ① 또는 ②인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주소지에서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경우의 수속 등에 대해서는 관할 도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송 불요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본인확인서류 등을 제시 또는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두 질문이나 전화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 도세가 과세되지 않은 분이 체납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 및 주류 제조 판매의 면허 신청을 위한 증명을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 필요한 본인확인서류에 대해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 만).

사회보장·세금번호(마이넘버) 제도에 대하여

◆마이넘버 제도의 개요

마이넘버 제도는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동일한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보장·조세제도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모두 편리하고 공평·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기반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개인번호>

일본 국내의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주민표가 있는 모든 분께 통지되는 12 자리의 번호입니다. 개인번호는 평생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누출되어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법인번호>

국세청장관이 지정한 13 자리의 번호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설립등기법인」 외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기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하나의 법인에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번호는 개인번호와는 달리 이용범위에 제약이 없습니다. 국세청의 법인번호 공표사이트에서 공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번호 공표사이트] <https://www.houjin-bangou.nta.go.jp/>(일본어 만)

◆정보보안대책

주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있어서 특정 개인정보(개인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정보보호 평가 실시에 대하여] <https://www.tax.metro.tokyo.lg.jp/jisshi/hyouka.html>(일본어 만)

◆마이넘버 기재와 본인 확인에 대하여

개인번호나 법인번호 기재란이 있는 신고서 등을 제출하실 때는 개인번호나 법인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상각자산 신고서(상각자산 과세대상), 법인도민세·사업세 및 특별법인사업세 또는 지방법인특별세의 신청서·신고서(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 부터) 등입니다.

[사회보장·세금번호(마이넘버) 제도에 대하여] <https://www.tax.metro.tokyo.lg.jp/mynumber.html>(일본어 만)

<본인 확인>

개인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본인 빙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도세사무소 등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다음 증명서의 조합으로 본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 통지 카드

	번호 확인	신분 확인
①	개인번호카드 뒷면	개인번호카드 앞면
②	[다음 서류 중 하나] - 주민표 사본이나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개인번호가 기재된 것) - 통지 카드(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올바르게 변경 수속이 된 경우에 한정.)	[신분증명서(다음 중 하나)] - 운전면허증 - 여권 - 등

<대리인이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

본인의 번호 확인	대리인의 신분 확인	대리권 확인
[다음 서류 중 하나] - 본인의 개인번호카드 사본(양면) - 본인의 주민표 사본이나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개인번호가 기재된 것) - 본인의 통지카드(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올바르게 변경 수속이 된 경우에 한정.)	[다음 서류 중 하나] - 대리인의 개인번호카드 - 운전면허증 - 세무사증표 등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 인감등록증명서 등 + 당해 법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사원증 등)	[다음 서류 중 하나] - 위임장(원본) - 세무대리권한증서 -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서류 (예: 개인번호카드, 보험증) 등

(주 1)우송 시에는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주 2)도세에 관한 증명서 등을 신청하실 때의 본인확인(P87)과는 다릅니다.

(주 3)전자 신고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번호 확인 자료를 PDF 등의 데이터로 보내주십시오. 마이넘버 제도 시행 후(2016년 1월 이후)에 전자 신고로 신고서 등을 어느 지방 공공단체에 제출하신 적이 있는 경우나 본인이 개인 번호 카드로 신고서 등에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의 번호 확인 자료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도 지방세제개정 등의 개요

2020년도 지방세제의 개정(개요)

세금의 종류	내용	적용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1) 지방 창생 응원 세제(기업판 후루사토 납세)의 연장·확충 공제 비율을 기부 금액의 3 할에서 6 할로 확충하여 인정 수속을 간소화하고, 적용 기한을 2024 년도 말까지 5 년 연장 (2) 전기공급업에 관한 과세방식의 재검토 송배전 부문의 법적 분리에 따라 발전사업 및 소매발전업에 관한 법인 사업세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재검토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개정전</th><th colspan="2">개정후</th></tr> <tr> <th>자본금 1 억엔 초과</th><th>자본금 1 억엔 이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입할 1.0%</td><td>수입할 0.75%</td><td>수입할 0.75%</td></tr> <tr> <td>부가가치할 0.37%</td><td>소득할 1.85%</td></tr> <tr> <td>자본할 0.15%</td><td></td></tr> </tbody> </table>	개정전	개정후		자본금 1 억엔 초과	자본금 1 억엔 이하	수입할 1.0%	수입할 0.75%	수입할 0.75%	부가가치할 0.37%	소득할 1.85%	자본할 0.15%		2020 년 4 월 1 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2020 년 4 월 1 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개정전	개정후													
	자본금 1 억엔 초과	자본금 1 억엔 이하												
수입할 1.0%	수입할 0.75%	수입할 0.75%												
	부가가치할 0.37%	소득할 1.85%												
	자본할 0.15%													
개인주민세	모든 편부모 가정에 대해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자는 관점에서 재검토 (1) 미혼 편부모에게 과부 공제를 적용(공제액 30 만엔) (2) 과부 공제의 재검토 - 과부(寡婦)에게 과부(寡夫)와 같은 소득 제한(합계 소득 금액 500 만엔)을 마련한다 - 자녀가 있는 과부(寡夫)의 공제액(개정 전 26 만엔)을 자녀가 있는 과부(寡婦)의 공제액(30 만엔)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021 년도분 이후 2021 년도분 이후												
고정자산세	(1) 소유자 불명 토지 등에 관한 과세상의 과제에 대한 대응 - 등기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조례에 따라 현소유자에게 성명·주소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 - 일정 조사를 해도 고정자산의 소유자가 한 명도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 (2) 5G 투자 촉진 세제의 창설 로컬 5G 기지국에 관한 일정 상각 자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3 년간 가격의 1/2 로 한다.	2020 년 4 월 1 일 이후의 조례 시행 날 이후에 현소유자임을 안 자 2021 년도분 이후 2022 년 3 월 31 일까지의 취득												
환부가산금 등	환부가산금 등의 비율을 현행(2020 년 중) 1.6%에서 1.1%*로 인하 * 2020 년 중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21 년 1 월 1 일 이후의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경제 대책 세제조치(지방세)

세금의 종류	내용	적용				
징수유예 제도	2020 년 2 월 이후의 임의의 기간(1 개월 이상)에 대하여 수입에 상당한 감소(전년 동기 대비 대략 20% 이상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무담보 및 체납금 없이 1 년간 징수가 유예되는 특례를 창설한다.	2020 년 2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1) 중소기업 등이 소유하는 사업용 가옥 및 상각자산에 관한 경감 조치의 창설 매출액의 감소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1/2 또는 0 으로 한다. ※2020 년 2 월부터 동년 10 월까지의 임의의 3 개월에 대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table><tr><td>30% 이상 50% 미만 감소한 자</td><td>1/2</td></tr><tr><td>50% 이상 감소한 자</td><td>0</td></tr></table>	30% 이상 50% 미만 감소한 자	1/2	50% 이상 감소한 자	0	2021 년도분 뿐
30% 이상 50% 미만 감소한 자	1/2					
50% 이상 감소한 자	0					
고정자산세	(2) 생산성 혁명의 실현을 위한 특별조치의 확충·연장 중소기업 등이 취득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일정 기계·장치 등에 대해 3 년간 과세표준을 조례에서 지정한 비율(0 이상 1/2 이하)로 하는 경감 조치에 대해 적용 대상에 일정 사업용 가옥 및 건축물을 더하고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의 개정을 전제로 적용 기한을 2 년 연장한다.	2021 년 3 월 31 일까지(현행)* *추후 개정 예정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자가용 승용차에 관한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의 세율을 1%분 경감하는 특례조치에 대해 적용 기한을 6 개월 연장한다.	2021 년 3 월 31 일까지 취득한 자가용 승용차				
개인주민세	(1) 기부금 세제의 확충 중지된 일정 이벤트의 입장료 등에 대해 관객 등이 환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서 지정한 내용에 따라 포기된 금액을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한다. (2) 주택용자 감세 적용 요건의 탄력화 주택용자 감세의 공제기간을 13 년간으로 하는 특례조치의 적용요건(개정전:2020 년 12 월 말까지의 입거분)에 대해 2021 년 12 월 말까지의 입거분으로 완화한다.	2020 년 2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의 포기 2019 년 10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의 입거분				
부동산취득세	내진 기준 부적합 기존 주택에 관한 감액 조치의 적용요건(개정전:취득으로부터 6 개월 이내의 입거)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진 개수 공사 종료로부터 6 개월 이내의 입거로 완화한다.	2022 년 3 월 31 일까지의 입거분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조치

세금의 종류	내용	적용
복구특별소득세	각 연도분의 기준소득세액에 2.1%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다.	2013년분부터 2037년분까지
개인주민세	균등할세율을 1,000엔(도도부현민세:500엔*,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500엔*) 인상한다.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 지방단체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납세가 어려워진 분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납세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최장 1년간, 유예기간 중의 연체금은 전액 면제되며 담보 제공은 불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일본어 만).

● 징수유예의 「특례 제도」(※근거 법령:지방세법 부칙 제 59 조)

조건	아래의 ①②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2020 년 2 월 이후의 임의의 기간(1 개월 이상)에 대해 사업 등에 관한 수입(급여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대략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②일시로 납부하거나 납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상세목	2020 년 2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도세(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수렵세 등을 제외합니다.)
유예기간	납부기한으로부터 최장 1년간 ※ 단, 예정 중간 신고에 의한 법인도민세·법인사업세 등은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까지의 기간
신청기한	납부기한까지 ※단, 2020 년 2 월 1 일부터 2020 년 6 월 30 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도세에 대해서는 2020 년 6 월 30 일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
비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경제 대책 세제조치로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실시한 특례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근거 법령:지방세법 제 15 조 제 1 항)

조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수입(급여나 매출 등)이 대략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납세자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감염된 경우 • 소독 작업 등으로 비품이나 재고정리 자산을 폐기하는 등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 분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경우
대상세목	모든 도세(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수렵세 등을 제외합니다.)
유예기간	최장 1년간
신청기한	수시(2021 년 3 월 31 일까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 주십시오.
비고	도쿄도에서는 독자적인 조치로 특례제도와 같은 기준으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도세사무소 등 일람

세목에 따라서 관할구역이 다릅니다. 오우메(青梅)·마치다(町田)도세지소는 하치오지(八王子)도세사무소의 담당 지역에 대하여, 후추(府中)·고다이라(小平)도세지소는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의 담당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창구 업무를 실시합니다.

○도세의 납세 ○납부서의 발행 ○각종 신고서·신청서의 접수 ○납세증명서 등의 발행 ○도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 등

도서(島嶼)지역에서는 각 지청에서 신고서·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도민세·개인사업세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지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지요다(千代田)구, 분쿄(文京)구	시나가와(品川)도세사무소	시나가와(品川)구, 오타(大田)구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주오(中央)구, 고토(江東)구, 에도가와(江戸川)구	시부야(渋谷)도세사무소	시부야(渋谷)구, 메구로(目黒)구, 세타가야(世田谷)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도시마(豊島)도세사무소	도시마(豊島)구, 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 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구	아라카와(荒川)도세사무소	아라카와(荒川)구, 기타(北)구, 아다치(足立)구
다이토(台東)도세사무소	다이토(台東)구, 스미다(墨田)구, 가쓰시카(葛飾)구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 창구에서도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있으나 신고내용에 관한 상담 및 문의, 우편·전자신고를 이용한 신고서 등의 제출은 관할 도세사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치오지(八王子)도세사무소: 하치오지(八王子)시·오우메(青梅)시·마치다(町田)시·히노(日野)시·홋사(福生)시·다마(多摩)시·이나기(稲城)시·하무라(羽村)시·아키루노(あきる野)시·미즈호마치(瑞穂町)·히노데마치(日の出町)·히노하라무라(檜原村)·오쿠타마마치(奥多摩町)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 다치카와(立川)시·무사시노(武蔵野)시·미타카(三鷹)시·후추(府中)시·아키시마(昭島)시·조후(調布)시·고가네이(小金井)시·고다이라(小平)시·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고쿠분지(国分寺)시·구니타치(国立)시·고마에(狛江)시·히가시야마토(東大和)시·기요세(清瀬)시·히가시쿠루메(東久留米)시·무사시무라야마(武蔵村山)시·니시토교(西東京)시

●사업소세(23 구내)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지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지요다(千代田)구, 분쿄(文京)구, 기타(北)구, 아라카와(荒川)구, 아다치(足立)구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주오(中央)구, 다이토(台東)구, 스미다(墨田)구, 고토(江東)구, 가쓰시카(葛飾)구, 에도가와(江戸川)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구, 오타(大田)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 메구로(目黒)구, 세타가야(世田谷)구, 시부야(渋谷)구, 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구, 도시마(豊島)구, 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 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소 창구에서도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있으나 신고내용에 관한 상담 및 문의, 우편·전자신고를 이용한 신고서 등의 제출은 관할 도세사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23 구내)

자산이 소재하는 구에 있는 도세사무소

●부동산 취득세

- 23 구내
취득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구에 있는 도세사무소
- 다마(多摩)지구(23 구외)

하치오지(八王子)도세사무소: 하치오지(八王子)시·오우메(青梅)시·마치다(町田)시·히노(日野)시·홋사(福生)시·다마(多摩)시·이나기(稲城)시·하무라(羽村)시·아키루노(あきる野)시·미즈호마치(瑞穂町)·히노데마치(日の出町)·히노하라무라(檜原村)·오쿠타마마치(奥多摩町)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 다치카와(立川)시·무사시노(武蔵野)시·미타카(三鷹)시·후추(府中)시·아키시마(昭島)시·조후(調布)시·고가네이(小金井)시·고다이라(小平)시·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고쿠분지(国分寺)시·구니타치(国立)시·고마에(狛江)시·히가시야마토(東大和)시·기요세(清瀬)시·히가시쿠루메(東久留米)시·무사시무라야마(武蔵村山)시·니시토교(西東京)시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도세사무소 등	관 할 세 목
도세종합사무센터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
시나가와(品川)자동차세사무소	증지 징수에 관한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및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시나가와 넘버, 세타가야 넘버)
네리마(練馬)자동차세사무소	증지 징수에 관한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및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네리마 넘버, 스기나미, 이타바시 넘버)
아다치(足立)자동차세사무소	증지 징수에 관한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및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아다치, 고토, 가쓰시카 넘버)
다마(多摩)자동차세사무소	증지 징수에 관한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및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다마 넘버)
하치오지(八王子)자동차세사무소	증지 징수에 관한 자동차세 환경성능할(環境性能割) 및 자동차세 종별할(種別割)(하치오지 넘버)

●경유인취세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지요다(千代田)구, 주오(中央)구, 분쿄(文京)구, 다이토(台東)구, 아라카와(荒川)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시나가와(品川)구, 메구로(目黒)구, 오타(大田)구, 시부야(渋谷)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 세타가야(世田谷)구, 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구, 도시마(豊島)구, 기타(北)구, 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고토(江東)도세사무소	스미다(墨田)구, 고토(江東)구, 아다치(足立)구, 가쓰시카(葛飾)구, 에도가와(江戸川)구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	다마(多摩)의 시정촌(市町村) 전 지역

도 외에 본점을 소유하는 원매업자 또는 특약 업자의 신고서 등의 제출은 주오(中央)도세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타

도민세이자할·배당할·주식 등 양도소득할 . . . 주오(中央)도세사무소
수령세 . . .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
도(都)당배세 . . . 미나토(港)도세사무소
숙박세 . . . 지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관공청에 관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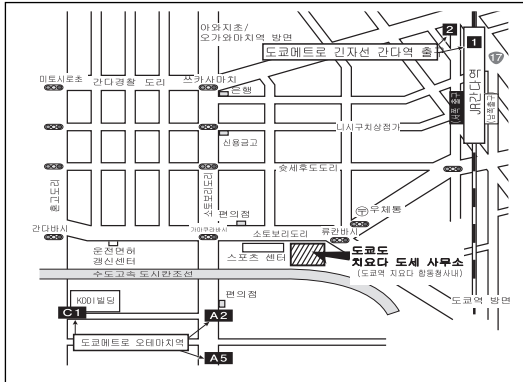
도세사무소 · 도세지소

(2020년 9월 1일 현재)

창고개설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까지(토요일, 일요일, 휴일, 연말연시는 제외)입니다.

지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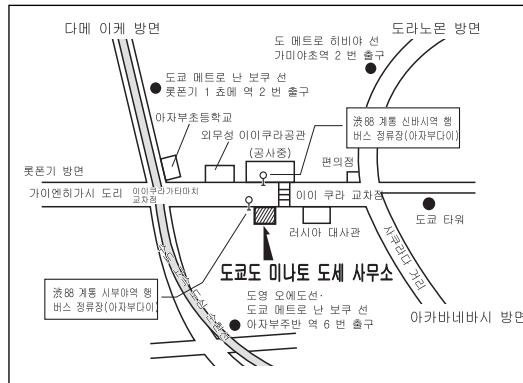
〒101-8520 지요다구 우치칸다 2-1-12
Tel : 03-3252-7141
Fax : 03-3258-4915



JR 야마노테선=간다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5분
도쿄 메트로 간다선=간다역 1번 또는 2번 출구에서 도보 8분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한조몬선=오테마치역 A2 출구에서 도보 5분
도쿄 메트로 치요다선·도영 미타선=오테마치역 C1 출구에서 도보 8분
도쿄 메트로 도자이선·도영 미타선=오테마치역 A5 출구에서 도보 8분

미나토(港)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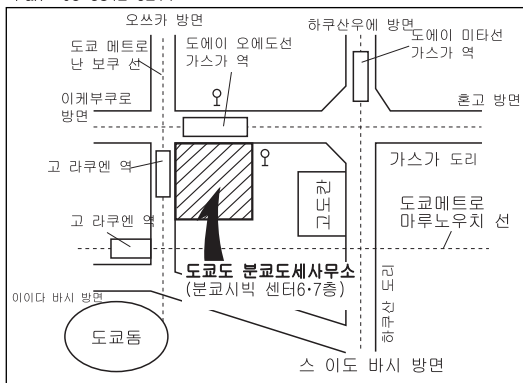
〒106-8560 미나토구 아자부다이 3-5-6
Tel : 03-5549-3800
Fax : 03-5549-3811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가미야초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도쿄 메트로 난보쿠선=롯폰기 1초역 2번 출구에서 도보 9분
도메이 오에도선·도쿄 메트로 난보쿠선=아자부주만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도영버스=아자부다이 정류소에서 도보 1분

분쿄(文京)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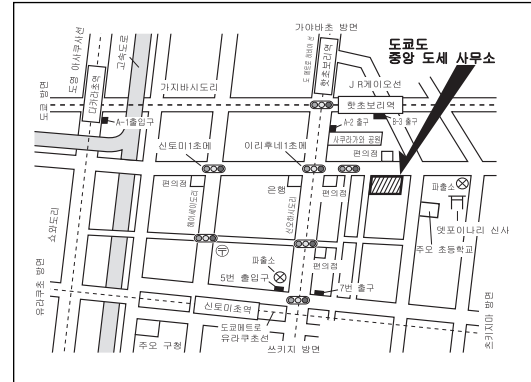
〒112-8550 분쿄구 가스가 1-16-21
Tel : 03-3812-3241
Fax : 03-3812-9214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도쿄 메트로 난보쿠선
=고라쿠엔역 5번 출구에서 직결, 또는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도쿄 메트로 미타선·도메이 오에도선=가스가역 ·분쿄시빅센터 연결통로직결

주오(中央)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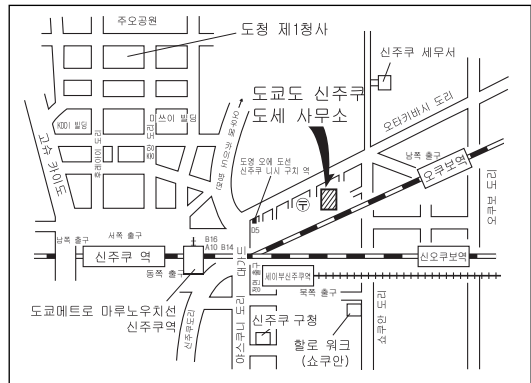
〒104-8558 주오구 이리후네 1-8-2
Tel : 03-3553-2151
Fax : 03-3297-0747



JR 게이오선/도쿄 메트로 히비야선=하츠보리역 A2 또는 B3 출입구에서 도보 5분
도쿄 메트로 유라쿠초선=신도미초역 5번 또는 7번 출입구에서 도보 8분
도메이 아사쿠사선=다카라초역 A1 출입구에서 도보 11분
(주) 주오도세사무소는 2021년 1월 4일(월)부터 신 사무소로 이전 예정입니다. 【신주소】 〒104-8558 주오구 신도미 2-6-1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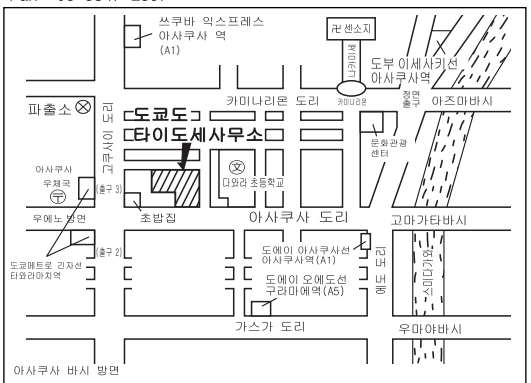
〒160-8304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7-5-8
Tel : 03-3369-7151
Fax : 03-3369-8090



JR 야마노테선·중오선=신주쿠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13분
JR 소부선=오쿠보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0분
세이부신주쿠선=세이부신주쿠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6분
도메이 오에도선=신주쿠니시구치역 D5 출구에서 도보 6분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신주쿠역 A10·B14·B16 출구에서 도보 10분

다이토(台東)도세사무소

〒111-8606 다이토구 가미나리몬 1-6-1
Tel : 03-3841-1271
Fax : 03-3847-2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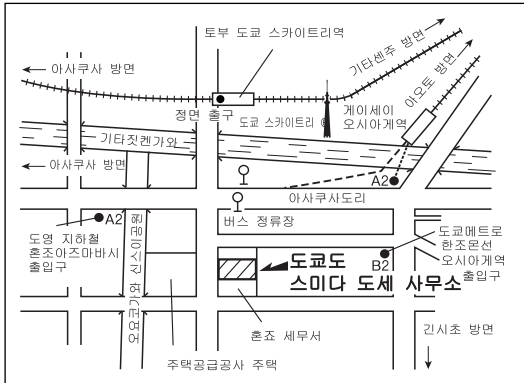
도쿄 메트로 긴자선=다라마치역 2·3 출구에서 도보 2분
도메이 아사쿠사선=아사쿠사역 A1 출구에서 도보 6분
도메이 오에도선=쿠라마에역 A5 출구에서 도보 10분
도부 이세사키선=아사쿠사역 정면 출구에서 도보 10분
쓰쿠바 익스프레스=아사쿠사역 A1 출구에서 도보 8분

스미다(墨田)도세사무소

〒130-8608 스미다구 나리히라 1-7-4

Tel : 03-3625-5061

Fax : 03-3625-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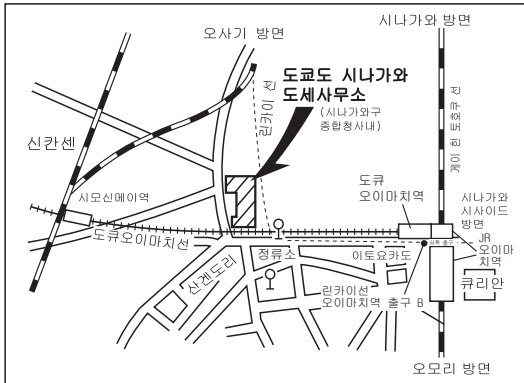
도부 스카이트리 라인=도쿄 스카이트리역 정면 출구에서 도보 5 분
게이세이 오시아게선=오시아게역 A2 출구에서 도보 7 분
도쿄 메트로 한조문선=오시아게역 B2 출구에서 도보 7 분
도메이 아사쿠사선=혼조아사바시역 A2 출구에서 도보 7 분
도영버스=도쿄 스카이트리역 입구 정류소에서 도보 3 분

시나가와(品川)도세사무소

〒140-8716 시나가와구 히로마치 2-1-36

Tel : 03-3774-6666

Fax : 03-3774-6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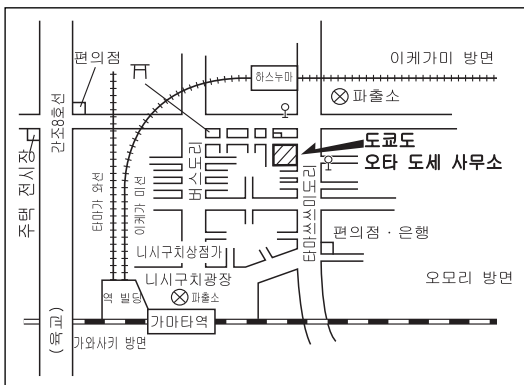
린카이선=오이마치역 출구 B 에서 도보 8 분
JR 게이힌도호쿠선=오이마치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8 분
도큐 오이마치선=시모신메이역에서 도보 5 분
도큐버스=시나가와구청 입구 정류소에서 도보 2 분

오타(大田)도세사무소

〒144-8511 오타구 니시카마타 7-11-1

Tel : 03-3733-2411

Fax : 03-3733-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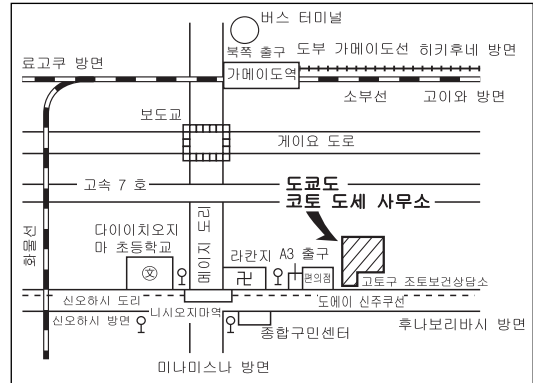
도큐 이케가미선= 하스누마역에서 도보 5 분
JR 게이힌도호쿠선=가타타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10 분
도큐버스= 오타 도세사무소 정류소에서 도보 1 분

고토(江東)도세사무소

〒136-8533 고토구 오지마 3-1-3

Tel : 03-3637-7121

Fax : 03-3682-7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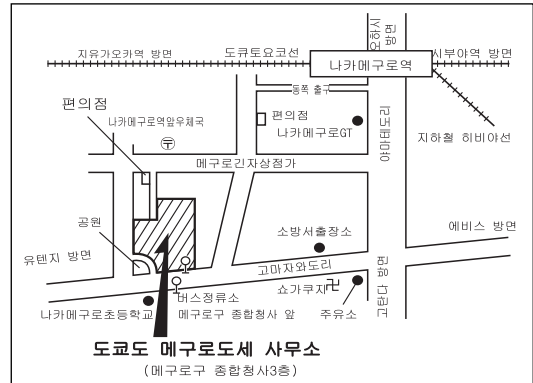
JR 소부선=카메이도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13 분
도부 카메이도선=카메이도역에서 도보 13 분
도메이 신주쿠선=니시오지마역 A3 출구에서 도보 2 분
도영버스=니시오지마 정류소에서 도보 2 분

메구로(目黒)도세사무소

〒153-8937 메구로구 가미메구로 2-19-15

Tel : 03-5722-9001

Fax : 03-3711-5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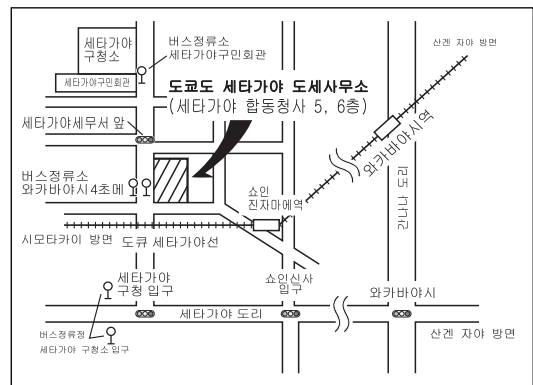
도큐도요코선·도쿄 메트로 히비야선=나카메구로역 남개찰구를
나와 동출구에서 도보 5 분
도큐버스=메구로구 종합청사 앞 정류소 하차

세타가야(世田谷)도세사무소

〒154-8577 세타가야구 와카바야시 4-22-13

Tel : 03-3413-7111

Fax : 03-3413-2611



도큐 세타가야선=소인진자마에 역에서 도보 4 분
도큐버스=와카바야시 윤초에 정류소에서 도보 0 분
도큐·오다큐버스=세타가야 구역소 입구 정류소에서 도보 4 분

시부야(渋谷)도세사무소

〒150-6007 시부야구 에비스 4-20-3

Tel : 03-5420-1621

Fax : 03-5420-1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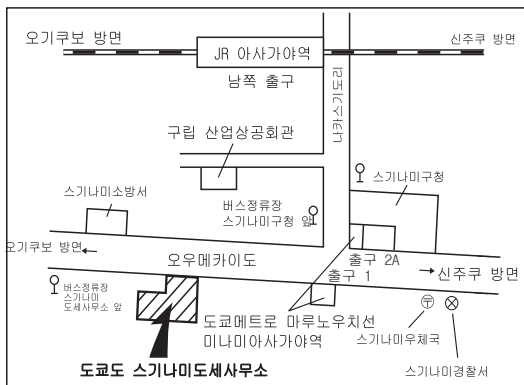
JR 야마노테선/사이쿄선=에비스역 동쪽 출입구에서 [웅직이는 통로 에비스 스카이워크]/지하철 통로 경유 도보 8 분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에비스역 1 번 출입구에서 [웅직이는 통로 에비스 스카이워크]/지하철 통로 경유 도보 11 분

스기나미(杉並)도세사무소

〒166-8502 스기나미구 나리타히가시 5-39-11

Tel : 03-3393-1171

Fax : 03-3392-8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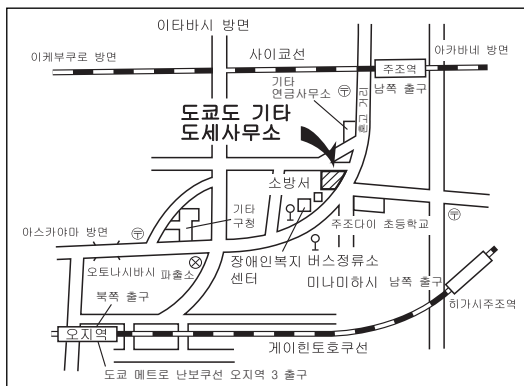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미나미아사가야역 1 출구에서 도보 2 분
JR 주오선=아사가야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3 분
세이부·간토버스=스기나미 도세사무소 앞 정류소에서 도보 3 분
도영·게이오·세이부·간토·난보쿠버스「스기마루」
=스기나미구청 앞 정류소에서 도보 2 분

기타(北)도세사무소

〒114-8517 기타구 나카주조 1-7-8

Tel : 03-3908-1171

Fax : 03-3905-5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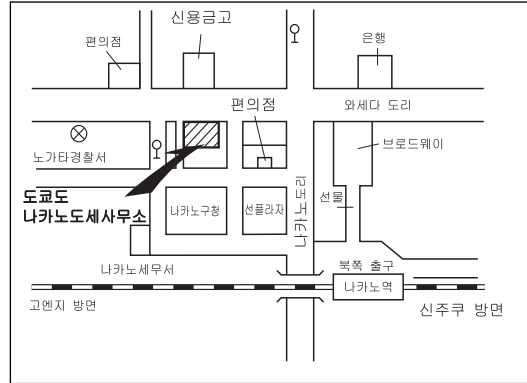
JR 사이쿄선=주조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0 분
JR 게이힌도호쿠선=히가시주조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0 분
오지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15 분
도쿄 메트로 난보쿠선= 오지역 3 번출구에서 도보 15 분
고쿠사이코교버스=미나미하시 정류소에서 도보 2 분

나카노(中野)도세사무소

〒164-0001 나카노구 나카노 4-6-15

Tel : 03-3386-1111

Fax : 03-3385-5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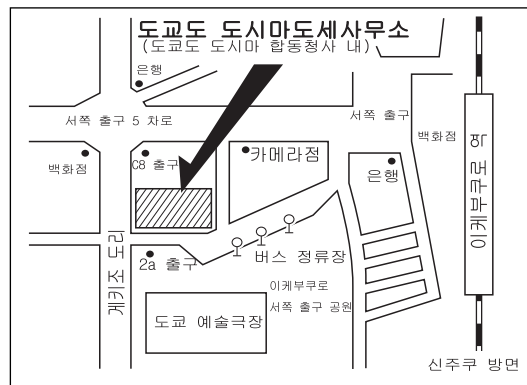
JR 주오선, 도쿄 메트로 도자이선=나카노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8 분
간도·고쿠사이코교버스=나카노케야카도리 정류소에서 도보 2 분
간도·고쿠사이코교·게이오버스=아라이나카노도리 정류소에서 도보 3 분

도시마(豊島)도세사무소

〒171-8506 도시마구 니시이케부쿠로 1-17-1

Tel : 03-3981-1211

Fax : 03-5951-8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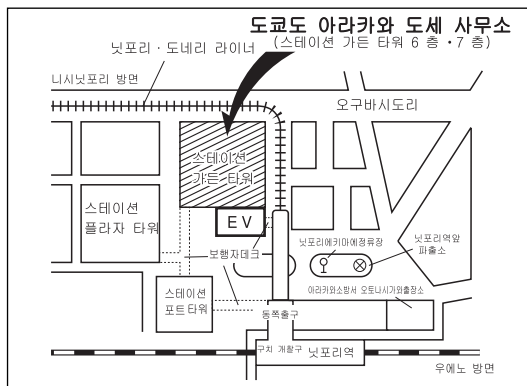
JR 야마노테선·사이쿄선, 도부토조선, 세이부 이케부쿠로 선,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유라쿠초선·부도심선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 중앙계단 출구에서 도보 2 분
고쿠사이코교·간토버스=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 정류소에서 도보 1 분
도영버스·고쿠사이코교·세이부버스= 이케부쿠로역 동쪽 출구 정류소에서 도보 8 분

아라카와(荒川)도세사무소

〒116-8586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 2-25-1

Tel : 03-3802-8111

Fax : 03-3802-5404



JR 조반선·야마노테선·게이힌도호쿠선, 게이세이본선= 닛포리역 북쪽 개찰구의 동쪽 출구에서 도보 2 분
닛포리·도네리 라이너=닛포리역 동쪽 출구에서 도보 2 분
도영버스=닛포리에키마에 정류장에서 도보 2 분

이타바시(板橋)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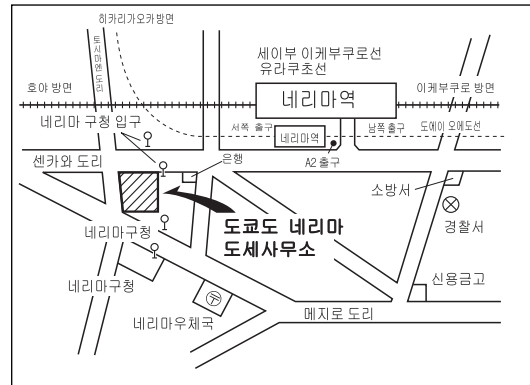
〒173-8510 이타바시구 오야마하가시초 44-8
Tel : 03-3963-2111
Fax : 03-3963-2138



도메이 미타선=이타바시구청 앞 역 A3 출구에서 도보 7 분
도부토조선=오야마하에서 도보 6 분
고쿠사이코교버스=이타바시구청 정류소에서 도보 6 분

네리마(練馬)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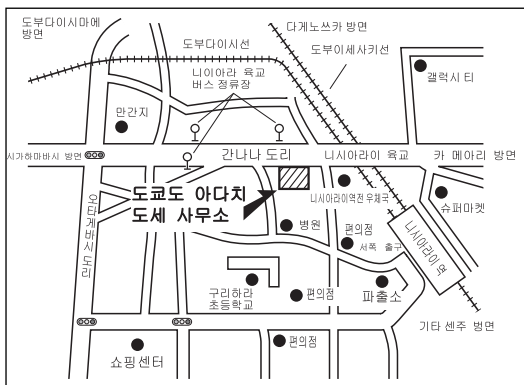
〒176-8511 네리마구 도요타마키타 6-13-10
Tel : 03-3993-2261
Fax : 03-3993-0691



세이부 이케부쿠로선·세이부유라쿠초선=
네리마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3 분
도메이 오에도선=네리마역 A2 출구에서 도보 5 분

아다치(足立)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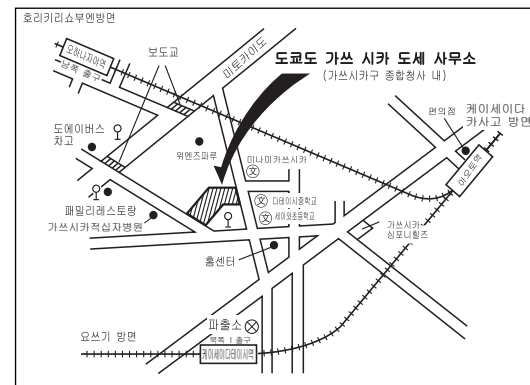
〒123-8512 아다치구 니시아라이사카에초2-8-15
Tel : 03-5888-6211
Fax : 03-3849-8505



도부이세자키선·도부다이시선=니시아라이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4 분
도영이버스·도부버스·고쿠사이코교버스·아다치커뮤니티버스
「하루카제」=니시아라이렛코 정류소에서 도보 1 분

가쓰시카(葛飾)도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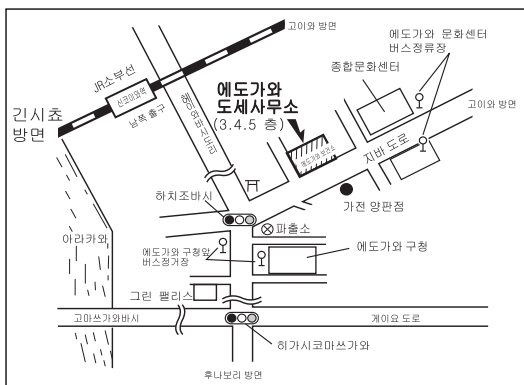
〒124-8520 가쓰시카구 다테이시 5-13-1
Tel : 03-3697-7511
Fax : 03-3697-7671



케이세이선=케이세이다테이시역 북쪽 1 출구에서 도보 10
분, 아오토역에서 도보 15 분, 오하나자야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5 분
도영버스=아오토차고 앞 정류소에서 도보 5 분
케이세이버스·케이세이타운버스=가쓰시카구청 정류소에서
하차

에도가와(江戸川)도세사무소

〒132-8551 에도가와구 주오 4-24-19
Tel : 03-3654-2151
Fax : 03-3652-4795



JR 소부선=신코이와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20 분
도영이버스= 구야구청 앞 정류소에서 도보 5 분
도영이버스·케이세이타운버스=에도가와 문화센터정류소에서도보 2 분

하치오지(八王子)도세사무소

〒192-8611 하치오지시 묘진초 3-19-2

Tel : 042-644-1111

Fax : 042-644-1120



JR 주오선=하치오지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7 분
게이오선=게이오하치오지역 4 출구에서 도보 4 분

【담당지역】

하치오지시, 오우메시, 마치다시, 히노시, 훗사시, 다마시, 이나기시, 하무라시, 아키루노시, 미즈호마치, 히노데마치,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오우메(青梅)·마치다(町田)도세지소는 하치오지(八王子)도세사무소의 담당지역에 대하여,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창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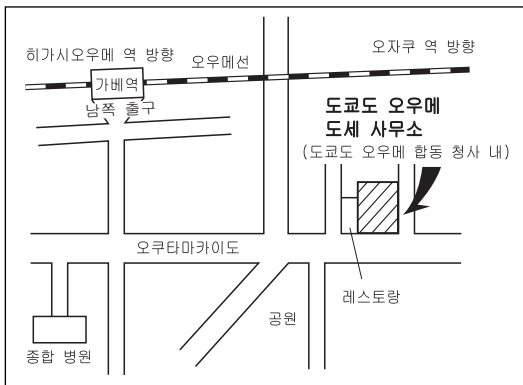
- 도세의 납부
- 납부서의 발행
- 각종 신고서·신청서의 접수
- 납세증명서 등의 발행
- 도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 등

오우메(青梅)도세지소

〒198-0036 오우메시 가베마치 6-4-1

Tel : 0428-22-1152

Fax : 0428-22-6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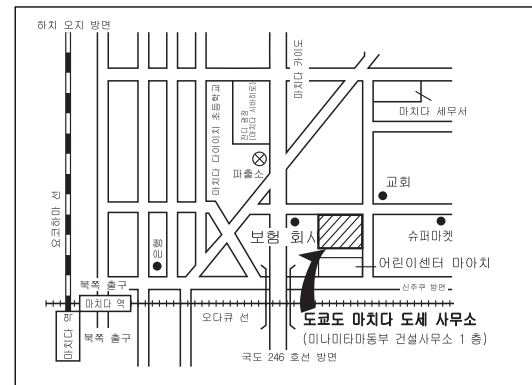
JR 오우메선=가베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2 분

마치다(町田)도세지소

〒194-8540 마치다시 나카마치 1-31-12

Tel : 042-728-5111

Fax : 042-728-5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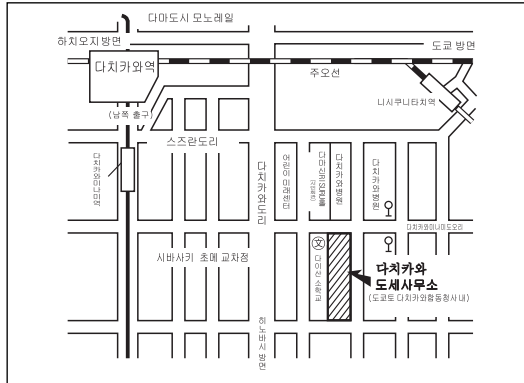
JR 요코하마선=마치다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15 분
오다큐선=마치다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10 분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

〒190-0022 다치카와시 니시키초 4-6-3

Tel : 042-523-3171

Fax : 042-526-0835



JR 주오선=JR 다치카와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5 분

JR 남부선=니시키니타치역에서 도보 5 분

다마도시모노레일=다치카와미나미역에서 도보 12 분

【담당지역】

다치카와시, 무사시노시, 미타카시, 후추시, 아키시마시, 조후시, 고가네이시, 고다이라이시, 히가시무라야마시, 고쿠분지시, 구니타치시, 고마에시, 히가시야마토시, 기요세시, 히가시쿠루메시, 무사시무라야마시, 니시토코시

후추(府中)·고다이라이(小平)도세지소는 다치카와(立川)도세사무소의 담당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창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납부

○납부서의 발행

○각종 신고서·신청서의 접수

○납세증명서 등의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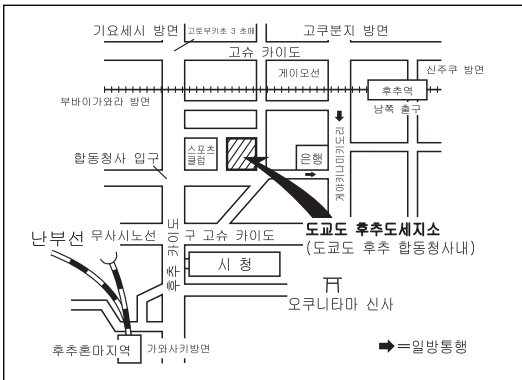
○도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 등

후추(府中)도세지소

〒183-8549 후추시 미야니시초 1-26-1

Tel : 042-364-2288

Fax : 042-360-6441



JR 남부선·무사시노선=후추혼마치역에서 도보 8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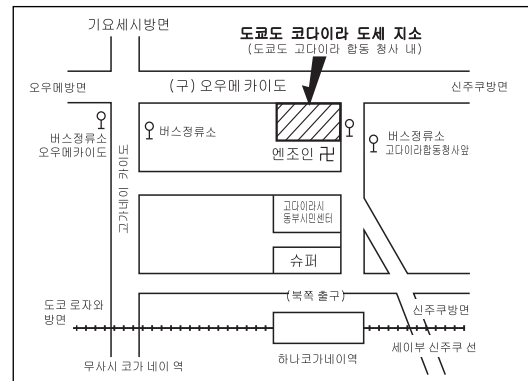
게이오선=후추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5 분

고다이라이(小平)도세지소

〒187-8533 고다이라이시 하나코가네이 1-6-20

Tel : 042-464-0070

Fax : 042-464-1309



세이부신주쿠선=하나코가네이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7 분

세이부버스=오우메가이도 정류소에서 도보 5 분

세이부·간토버스=고다이라이합동청사앞 정류소에서 도보 1 분

도세 증명 우편 접수 센터

23구 내의 고정자산(토지·가옥) 평가 증명서 및 도세의 납세 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세 증명

우편 접수 센터로 보내 주십시오.

〒112-8787

도쿄도 분쿄구 가스가 1-16-21 도세 증명 우편 접수 센터

취급하는 증명서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의 상세 사항은 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처:관할 도세 사무소·도세 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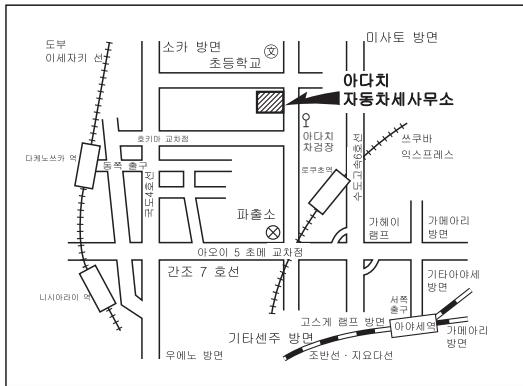
(2020년 9월 1일 현재)

우편번호: 자동차세과 ㄱ176-8517
환급관리과 ㄱ176-8526
소재지: 네리마구 도요타마키타 6-13-10
네리마(練馬)도세사무소4층
전화: 자동차세과(도쿄도자동차세 콜센터) 03-3525-4066
환급관리과 03-5946-6716

[illegible]

아다치(足立)자동차세사무소

〒121-0062 아다치구 미나미하나타 5-12-1
Tel: 03-3883-2543
Fax: 03-3858-8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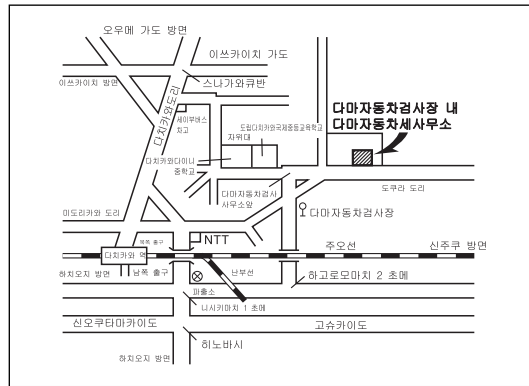
도부 이세사키선=다케노즈카역 동쪽 출구에서 도부버스(系: 綾24) 12 분
도쿄 메트로 치요다선=아야세역 서쪽 출구에서 도부버스(系: 綾24) 27 분
쓰쿠바 익스프레스=로쿠초역에서 도부버스(系: 綾24) 7 분
도부버스=아다치 차검장 정류소에서 도보 1 분

【담당지역】

다이토구, 스미다구, 고토구, 아라카와구, 아다치구, 가쓰시카구, 에도가와구

다마(多摩)자동차세사무소

〒186-0001 구니타치시 기타 3-30
Tel: 042-522-8271
Fax: 042-526-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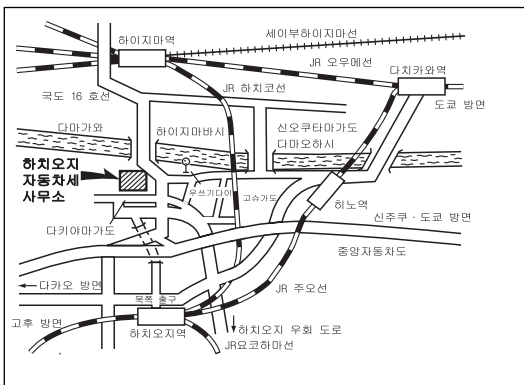
JR 주오선=다치카와역 북쪽 출구에서 다치카와버스(系: 立53) 10 분
다치카와버스=다마차검장 앞 정류소에서 도보 2 분

【담당지역】

다치카와시, 무사시노시, 미타카시, 후추시, 아키히마시, 조후시, 마치다시, 고가네이시, 고다이라이시, 히가시무라야마시, 고쿠분지시, 구니타치시, 고마에시, 히가시야마토시, 기요세시, 히가시쿠루메시, 무사시무라야마시, 다마시, 이나기시, 니시토교시

하치오지(八王子)자동차세사무소

〒192-0011 하치오지시 다키야마마치 1-270-5
Tel: 042-691-6351
Fax: 042-691-4943



JR 주오선=하치오지역 북쪽 출구에서 니시도교버스(系: バ01) 28 분
JR 주오선=하노역에서 니시도교버스(系: 日21) 21 분
니시도교버스=우쓰키다이 정류소에서 도보 10 분

【담당지역】

하치오지시, 오우메시, 히노시, 훗사시, 하무라시, 아키루노시, 미즈호마치, 히노데마치, 히노하라무라, 오쿠타마마치

지청(支庁) (도서(島嶼)지역)

지청명	소재지	전화	해당하는 지역
오오시마(大島)	〒100-0101 오시마마치 모토마치 아자 온다시 222-1 大島町元町字本郷222-1	(04992)2-4411	오시마마치(大島町), 도시마무라(利島村), 니이지마무라(新島村), 고즈시마무라(神津島村)
미야케(三宅)	〒100-1102 미야케지마 미야케무라 이즈 642 三宅島三宅村伊豆642	(04994)2-1311	미야케무라(三宅村), 미쿠라지마무라(御蔵島村)
하치조(八丈)	〒100-1492 하치조지마 하치조마치 오카고 2466-2 八丈島八丈町大賀郷2466-2	(04996)2-4511 ※세무담당 직통	하치조마치(八丈町), 아오가시마무라(青ヶ島村)
오가사와라(小笠原)	〒100-2101 오가사와라무라 치치지마 아자 니시마치 小笠原村父島字西町	(04998)2-3230 ※행정담당 직통	오가사와라무라(小笠原村)

구청(区役所)

(2020년 6월 1일 현재)

지요다 (千代田)	102-8688	지요다구 구단미나미 1-2-1 千代田区九段南 1-2-1	(03)3264-2111
주오 (中央)	104-8404	주오구 쓰키지 1-1-1 中央区築地 1-1-1	(03)3543-0211
미나토 (港)	105-8511	미나토구 시바코엔 1-5-25 港区芝公園 1-5-25	(03)3578-2111
신주쿠 (新宿)	160-8484	신주쿠구 가부키초 1-4-1 新宿区歌舞伎町 1-4-1	(03)3209-1111
분쿄 (文京)	112-8555	분쿄구 가스가 1-16-21 文京区春日 1-16-21	(03)3812-7111
다이토 (台東)	110-8615	다이토구 히가시우에노 4-5-6 台東区東上野 4-5-6	(03)5246-1111
스미다 (墨田)	130-8640	스미다구 아즈마바시 1-23-20 墨田区吾妻橋 1-23-20	(03)5608-1111
고토 (江東)	135-8383	고토구 도요 4-11-28 江東区東陽 4-11-28	(03)3647-9111
시나가와 (品川)	140-8715	시나가와구 히로마치 2-1-36 品川区広町 2-1-36	(03)3777-1111
메구로 (目黒)	153-8573	메구로구 가미메구로 2-19-15 目黒区上目黒 2-19-15	(03)3715-1111
오타 (大田)	144-8621	오타구 가마타 5-13-14 大田区蒲田 5-13-14	(03)5744-1111
세타가야 (世田谷)	154-8504	세타가야구 세타가야 4-21-27 世田谷区世田谷 4-21-27	(03)5432-1111

시부야 (渋谷)	150-8010	시부야 우다가와초 1-1 渋谷区宇田川町 1-1	(03)3463-1211
나카노 (中野)	164-8501	나카노구 나카노 4-8-1 中野区中野 4-8-1	(03)3389-1111
스기나미 (杉並)	166-8570	스기나미구 아사카야미나미 1-15-1 杉並区阿佐谷南 1-15-1	(03)3312-2111
도시마 (豊島)	171-8422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2-45-1 豊島区南池袋 2-45-1	(03)3981-1111
기타 (北)	114-8508	기타구 오지혼초 1-15-22 北区王子本町 1-15-22	(03)3908-1111
아라카와 (荒川)	116-8501	아라카와구 아라카와 2-2-3 荒川区荒川 2-2-3	(03)3802-3111
이타바시 (板橋)	173-8501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2-66-1 板橋区板橋 2-66-1	(03)3964-1111
네리마 (練馬)	176-8501	네리마구 도요타마키타 6-12-1 練馬区豊玉北 6-12-1	(03)3993-1111
아다치 (足立)	120-8510	아다치구 주오혼초 1-17-1 足立区中央本町 1-17-1	(03)3880-5111
가쓰시카 (葛飾)	124-8555	가쓰시카구 다테이시 5-13-1 葛飾区立石 5-13-1	(03)3695-1111
에도가와 (江戸川)	132-8501	에도가와구 주오 1-4-1 江戸川区中央 1-4-1	(03)3652-1151

시청(市役所)

(2020년 6월 1일 현재)

하치오지 (八王子)	192-8501	하치오지시 모토혼고초 3-24-1 八王子市元本郷町 3-24-1	(042)626-3111
다치카와 (立川)	190-8666	다치카와시 이즈미초 1156-9 立川市泉町 1156-9	(042)523-2111
무사시노 (武蔵野)	180-8777	무사시노시 미도리초 2-2-28 武蔵野市緑町 2-2-28	(042)51-5131
미타카 (三鷹)	181-8555	미타카시 노자키 1-1-1 三鷹市野崎 1-1-1	(042)45-1151
오우메 (青梅)	198-8701	오우메시 히가시우메 1-11-1 青梅市東青梅 1-11-1	(0428)22-1111
후추 (府中)	183-8703	후추시 미야나시초 2-24 府中市宮西町 2-24	(042)364-4111
아키시마 (昭島)	196-8511	아키시마시 다나카초 1-17-1 昭島市田中町 1-17-1	(042)544-5111
조후 (調布)	182-8511	조후시 고지마초 2-35-1 調布市小島町 2-35-1	(042)481-7111
마치다 (町田)	194-8520	마치다시 모리노 2-2-22 町田市森野 2-2-22	(042)722-3111
고가네이 (小金井)	184-8504	고가네이시 혼초 6-6-3 小金井市本町 6-6-3	(042)383-1111
고다이라 (小平)	187-8701	고다이라시 오가와초 2-1333 小平市小川町 2-1333	(042)341-1211
히노 (日野)	191-8686	히노시 신메이 1-12-1 日野市神明 1-12-1	(042)565-1111
히가시무라야마 (東村山)	189-8501	히가시무라야마시 혼초 1-2-3 東村山市本町 1-2-3	(042)383-5111

고쿠분지 (国分寺)	185-8501	고쿠분지시 도쿠라 1-6-1 国分寺市戸倉 1-6-1	(042)325-0111
구니타치 (国立)	186-8501	구니타치시 후지미다이 2-47-1 国立市富士見台 2-47-1	(042)576-2111
훗사 (福生)	197-8501	훗사시 혼초 5 福生市本町 5	(042)551-1511
고마에 (狛江)	201-8585	고마에시 이즈미혼초 1-1-5 狛江市和泉本町 1-1-5	(03)3430-1111
히가시야마토 (東大和)	207-8585	히가시야마토시 주오 3-930 東大和市中央 3-930	(042)563-2111
기요세 (清瀬)	204-8511	기요세시 나카자토 5-842 清瀬市中里 5-842	(042)492-5111
히가시쿠루메 (東久留米)	203-8555	히가시쿠루메시 혼초 3-3-1 東久留米市本町 3-3-1	(042)470-7777
무사시무라야마 (武蔵村山)	208-8501	무사시무라야마시 혼마치 1-1-1 武蔵村山市本町 1-1-1	(042)565-1111
다마 (多摩)	206-8666	다마시 세키도 6-12-1 多摩市関戸 6-12-1	(042)375-8111
이나기 (稲城)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稲城市東長沼 2111	(042)378-2111
하무라 (羽村)	205-8601	하무라시 미도리가오카 5-2-1 羽村市緑ヶ丘 5-2-1	(042)555-1111
아키루노 (あきる野)	197-0814	아키루노시 니노미야 350 あきる野市二宮 350	(042)558-1111
니시토쿄 (西東京)	188-8666	니시토쿄시 미나미초 5-6-13 西東京市南町 5-6-13	(042)464-1311

정·촌 사무소(町村役場)

(2020년 6월 1일 현재)

미즈호마치 (瑞穂町)	190-1292	니시타마군 미즈호마치 오야자 하코네가사키 2335 西多摩郡瑞穂町大字箱根ヶ崎 2335	(042)557-0501
히노데마치 (日の出町)	190-0192	니시타마군 히노데마치 오야자 히라이 2780 西多摩郡日の出町大字平井 2780	(042)597-0511
히노하라무라 (檜原村)	190-0212	니시타마군 히노하라무라 467-1 西多摩郡檜原村 467-1	(042)568-1011
오쿠타마마치 (奥多摩町)	198-0212	니시타마군 오쿠타마마치 히가와 215-6 西多摩郡奥多摩町氷川 215-6	(0428)83-2111
오시마마치 (大島町)	100-0101	오시마마치 모토마치 1-1-14 大島町元町 1-1-14	(04992)2-1465 *세무과직통
도시마무라 (利島村)	100-0301	도시마무라 248 利島村 248	(04992)9-0011
니이지마무라 (新島村)	100-0402	니이지마무라 혼초 1-1-1 新島村本村 1-1-1	(04992)5-0240

고즈시마무라 (神津島村)	100-0601	고즈시마무라 904 神津島村 904	(04992)8-0011
미야케무라 (三宅村) (임시청사)	100-1212	미야케지마 미야케무라 아코 497 三宅島三宅村阿古 497	(04994)5-0981
미쿠라지마무라 (御蔵島村)	100-1301	미쿠라지마무라 아자 이리카네가사와 御蔵島村字入かねが沢	(04994)8-2121
하치조마치 (八丈町)	100-1498	하치조지마 하치조마치 오키고 2551-2 八丈島八丈町大賀郷 2551-2	(04996)2-1122 ※세무과직통
아오가시마무라 (青ヶ島村)	100-1701	아오가시마무라 무반치 青ヶ島村無番地	(04996)9-0111
오가사와라무라 (小笠原村)	100-2101	오가사와라무라 치치지마 아자 니시마치 小笠原村父島字西町	(04998)2-3111

세무서명	담당구역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
고지마치 간다	지요다구내의 고지마치지구 지요다구내의 간다지구	102-8311 101-8464	지요다구 구단미야미 1-1-15 구단 제 2 합동청사 1층·2층 지요다구 간다니시키토 3-3	(03)3221-6011 (03)4574-5596
니혼바시	주오구내의 니혼바시지구	103-8551	주오구 니혼바시 호리도메초 2-6-9	(03)3663-8451
교바시	주오구내의 교바시지구	100-8129	지요다구 오테마치 1-3-3 오테마치 합동청사 3 호관 6층·7층	(03)4434-0011
시바	미나토구내의 시바지구 도쿄도 중에서 오시마마치, 도시마우라, 니이지마우라, 고즈시마우라, 미야케우라, 미쿠라지마우라, 하치조마치, 아오가시마우라, 오가사와라우라	108-8401	미나토구 시바 5-8-1	(03)3455-0551
아자부	미나토구내의 아자부, 아카사카지구	106-8630	미나토구 니시아자부 3-3-5	(03)3403-0591
요쓰야 신주쿠	신주쿠구내의 요쓰야, 우시고메지구 신주쿠구내의 신주쿠지구	160-8530 169-8561	신주쿠구 요쓰야산에이초 7-7 신주쿠구 기타신주쿠 1-19-3	(03)3359-4451 (03)6757-7776
고이시카와 혼고	분쿄구내의 고이시카와지구 분쿄구내의 혼고지구	112-8558 113-8459	분쿄구 가스가 1-4-5 분쿄구 니시카타 2-16-27	(03)3811-1141 (03)3811-3171
도쿄우에노 아사쿠사	다이토구내의 시타야지구 다이토구내의 아사쿠사지구	110-8607 111-8602	다이토구 이케노하타 1-2-22 우에노 합동청사 다이토구 구라마에 2-8-12	(03)3821-9001 (03)3862-7111
혼조 무코지마	스미다구내의 혼조지구 스미다구내의 무코지마지구	130-8686 131-8509	스미다구 나리히라 1-7-2 스미다구 히가시무코지마 2-7-14	(03)3623-5171 (03)3614-5231
고토니시 고토히가시	고토구내의 조토지구를 제외한 지구 고토구내의 조토지구	135-8311 136-8505	고토구 사루에 2-16-12 고토구 가메이도 2-17-8	(03)3633-6211 (03)3685-6311
시나가와	시나가와구내의 시나가와지구, 오사키지구, 오이지구, 야시오지구	108-8622	미나토구 다카나와 3-13-22	(03)3443-4171
에바라	시나가와구내의 에바라지구	142-8540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1-1-5	(03)3783-5371
메구로	메구로구	153-8633	메구로구 나카메구로 5-27-16	(03)3711-6251
오모리 유키가야 가마타	오hta구내의 오모리지구 오hta구내의 조후지구 오hta구내의 가마타지구	143-8565 145-8506 144-8556	오hta구 주오 7-4-18 오hta구 유키가야 오쓰카마치 4-12 오hta구 가마타혼초 2-1-22	(03)3755-2111 (03)3726-4521 (03)3732-5151
세타가야	세타가야구내의 중앙부지구	154-8523	세타가야구 와카바야시 4-22-13 세타가야 합동 청사 3층·4층	(03)6758-6900
기타자와 다마가와	세타가야구내의 북부지구 세타가야구내의 다마가와지구	156-8555 158-8601	세타가야구 마쓰바라 6-13-10 세타가야구 다마가와 2-1-7	(03)3322-3271 (03)3700-4131
시부야	시부야구	150-8333	시부야구 우다가와초 1-10 시부야 지방합동청사	(03)3463-9181
나카노	나카노구	164-8566	나카노구 나카노 4-9-15	(03)3387-8111
스기나미 오기쿠보	스기나미구내의 아사가야, 고엔지지구 스기나미구내의 오기쿠보지구	166-8501 167-8506	스기나미구 나리타히가시 4-15-8 스기나미구 오기쿠보 5-15-13	(03)3313-1131 (03)3392-1111
도시마	도시마구	171-8521	도시마구 니시이케부쿠로 3-33-22	(03)3984-2171
오지	기타구	114-8560	기타구 오지 3-22-15	(03)3913-6211
아라카와	아라카와구	116-8588	아라카와구 니시닛포리 6-7-2	(03)3893-0151
이타바시	이타바시구	173-8530	이타바시구 오야마히가시초 35-1	(03)3962-4151
네리마히가시 네리마니시	네리마구내의 일부 네리마구내의 일부	176-8503 178-8624	네리마구 사카에초 23-7 네리마구 히가시오이즈미 7-31-35	(03)6371-2332 (03)3867-9711
아다치 니시아라이	아다치구내의 센주, 아야세지구 아다치구내의 니시아라이지구	120-8520 123-8501	아다치구 센주아사히초 4-21 아다치 지방합동청사 아다치구 구리하라 3-10-16	(03)3870-8911 (03)3840-1111
가쓰시카	가쓰시카구	124-8560	가쓰시카구 다테이시 8-31-6	(03)3691-0941
에도가와키타 에도가와미나미	에도가와구내의 일부 에도가와구내의 일부	132-8668 134-8567	에도가와구 히라이 1-16-11 에도가와구 세이신초 2-3-13	(03)3683-4281 (03)5658-9311
하치오지	하치오지시	192-8565	하치오지시 묘진초 4-21-3	(042)697-6221
다치카와	다치카와시, 아카시마시, 고쿠분지시, 구니타치시, 히가시야마토시, 무사시우라야마시	190-8565	다치카와시 미도리초 4-2 다치카와 지방합동청사	(042)523-1181
무사시노	무사시노시, 미타카시, 고가네이시	180-8522	무사시노시 기치조지 혼초 3-27-1	(0422)53-1311
오우메	오우메시, 훗사시, 하무라시, 아키루노시, 니시타마군	198-8530	오우메시 히가시오우메 4-13-4	(0428)22-3185
무사시후추	후추시, 조후시, 고마에시	183-8548	후추시 혼마치 4-2	(042)362-4711
마치다	마치다시	194-8567	마치다시 나카마치 3-3-6	(042)728-7211
히노	히노시, 다마시, 이나기시	191-8520	히노시 만간지 6-36-2	(042)585-5661
히가시우라야 마	고다이라시, 히가시우라야마시, 기요세시, 히가시쿠루메시, 니시토쿄시	189-8555	히가시우라야마시 혼초 1-20-22	(042)394-6811

(주)국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일본어 만)에서 텍스트 앤서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1번을 눌러 전화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도쿄법무국(본국·지국·출장소)

(2020년 4월 1일 현재)

청명	관할구역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
본국	지요다구, 주오구, 분쿄구, 오시마마치, 도시마무라, 니이시마무라, 고즈시마무라, 미야케무라, 미쿠라지마무라, 하치조마치, 아오가시마무라, 오가사와라무라, 하치조지청 관할구역(하치조마치 및 아오가시마무라는 제외.)	102-8225	지요다구 구단미나미 1-1-15 (구단 제2활동청사)	(03)5213-1234(대표) (03)5213-1330(부동산등기) (03)5213-1337(상업·법인등기)
등기 전화 안내실	*			(03)5318-0261
하치오지지국	하치오지시	192-0364	하치오지시 미나미오사와 2-27 (후레스코 미나미오사와 10·11층)	(042)670-6240
후추지국	무사시노시, 미타카시, 후추시, 조후시, 고가네이시, 고마에시, 다마시, 이나기시	183-0052	후추시 신마치 2-44	(042)335-4753
니시타마지국	오우메시, 훗사시, 하무라시, 아키루노시, 니시타마군	197-0004	훗사시 미나미덴엔 3-61-3	(042)551-0360
미나토출장소	미나토구	106-8654	미나토구 히가시야자부 2-11-11	(03)3586-2181
다이토출장소	다이토구	110-8561	다이토구 다이토 1-26-2	(03)3831-0625
스미다출장소	스미다구, 고토구	130-0024	스미다구 기쿠가와 1-17-13	(03)3631-1408
시나가와출장소	시나가와구	140-8717	시나가와구 히로마치 2-1-36 (시나가와구 종합청사)	(03)3774-3446
조난출장소	오타구	146-8554	오타구 우노키 2-9-15	(03)3750-6651
세타가야출장소	세타가야구	154-8531	세타가야구 와카바야시 4-22-13 (세타가야합동청사 2층)	(03)5481-7519
시부야출장소	시부야구, 메구로구	150-8301	시부야구 우다가와초 1-10 (시부야 지방합동청사)	(03)3463-7671
신주쿠출장소	신주쿠구	169-0074	신주쿠구 기타신주쿠 1-8-22	(03)3363-7385
나카노출장소	나카노구	165-8588	나카노구 노가타 1-34-1	(03)3389-3379
스기나미출장소	스기나미구	167-0035	스기나미구 이마가와 2-1-3	(03)3395-0255
이타바시출장소	이타바시구	173-0004	이타바시구 이타바시 1-44-6	(03)3964-5385
도시마출장소	도시마구	171-8507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4-30-20 (도시마 지방합동청사)	(03)3971-1616
기타출장소	기타구, 아라카와구	114-8531	기타구 오지 6-2-66	(03)3912-2608
네리마출장소	네리마구	179-8501	네리마구 가스가초 5-35-33	(03)5971-3681
에도가와출장소	에도가와구	132-8585	에도가와구 주오 1-16-2	(03)3654-4156
조호쿠출장소	아다치구, 가쓰시카구	124-8502	가쓰시카구 고스게 4-20-24	(03)3603-4305
마치다출장소	마치다시	194-0022	마치다시 모리노 2-28-14 (마치다 지방합동청사)	(042)722-2414
다나시출장소	고다이라시, 히가시무라야마시, 니시토쿄시, 기요세시, 히가시쿠루메시	188-0011	니시토쿄시 다나시초 4-16-24	(042)461-1130
다치카와출장소	다치카와시, 아키시마시, 무사시무라야마시, 히가시야마토시, 히노시, 고쿠분지시, 구니타치시	190-8524	다치카와시 미도리초 4-2 (다치카와 지방합동청사 6층)	(042)524-2716

* 등기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수속 안내는 사전 예약제이므로 등기 전화 안내실로 연락 주십시오.

(주)상기 중 공탁취급청은 본국, 하치오지지국, 후추지국 및 니시타마지국입니다.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 고정자산세의 납기 등

(2020 년도)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보통징수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구시정촌(区市町村)명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균등할액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세율(%)
23 구 내	6 월	8 월	10 월	1 월	3,500 엔	6 월	9 월	12 월	2 월	0.30
하치오지시(八王子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다치카와시(立川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무사시노시(武蔵野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0
미타카시(三鷹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25
오우메시(青梅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후주시(府中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0
아키시마시(昭島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조후시(調布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마치다시(町田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4
고가네이시(小金井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고다이라이시(小平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히노시(日野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히가시무라야마시 (東村山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9
고쿠분지시(国分寺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구니타치시(国立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후사시(福生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고마에시(狛江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히가시야마토시 (東大和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6
기요세시(清瀬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히가시쿠루메시 (東久留米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4
무사시무라야마시 (武蔵村山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6
다마시(多摩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0
이나기시(稲城市)	6 월	8 월	10 월	12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7
하무라시(羽村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아키루노시 (あきる野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7
니시토쿄시(西東京市)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0.25
미즈호마치(瑞穂町)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7
히노데마치(日の出町)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2 월	0.27
히노하라무라(檜原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
오쿠타마마치 (奥多摩町)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1 월	2 월	-
오시마마치(大島町)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도시마무라(利島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니이지마무라(新島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고즈시마무라 (神津島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미야케무라(三宅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미쿠라지마무라 (御蔵島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하치조마치(八丈町)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아오가시마무라 (青ヶ島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오가사와라무라 (小笠原村)	6 월	8 월	10 월	1 월		5 월	7 월	12 월	2 월	-

(주1)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기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이 그 기한이 됩니다.

(주2) 여러분께 송부되는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의 납세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균등할액(均等割額)에 대해서는 구시정촌민세의 균등할액 외에 도민세의 균등할액 1,500엔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주3)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지방자치체의 방재대책에 총당하기 위해 균등할액의 기준세율이 도민세:1,500엔,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3,500엔으로 적용됩니다.

세금에 관한 상담은?

전화 · 면담 등

- [도세] ○ 도세사무소의 상담코너(각 도세사무소 안내는 93~98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주세국 총무부 도세상담코너 전화 (03)5388-2925(일본어 만)
〒163-8001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도청 제 1 본청사)
○ 「도세 안내」 텔레폰서비스(자동음성·24 시간 대응) (03)5339-0294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도세에 관한 질문은 「자주 있는 질문」에서 답변드립니다.(일본어 만)
- [국세] ○ 국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일본어 만)에서 택스 앤서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세무서(102 페이지 참조)에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1 번을 눌러 전화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상담일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 8 시 30 분 ~ 17 시

홈페이지

-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 <https://www.tax.metro.tokyo.lg.jp/>
「도세 Q&A」, 「공매 정보」, 「당신도 세금 박사」, 「신청 양식」, 「도세 사무소 일람」 등(일본어 만)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a.go.jp/>
「자주 묻는 질문」 등(일본어 만)
- 「도세에 관한 문의」 AI 채팅봇 서비스(24 시간 365 일 대응(일본어 만))
도쿄도 주세국 홈페이지(일본어 만)에 접속하셔서 화면 우측 하단의 AI 채팅봇 배너를 선택하시면 「도세에 관한 문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출판물

- 도쿄도 주세국 발행(도세사무소 등에서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도세」(월간)
「부동산과 세금」 「가이드북 도세」
「외국어판 가이드북 도세(영어, 중국어, 한국어)」
- 공익재단법인 도쿄세무협회 발행 「지방세 미니가이드 2020」(430 엔 부가세 포함)
근거 조문이 실려 있는 실무자용 소형 안내 책자입니다.(A5 판)
문의처: (공익재단법인) 도쿄세무협회 (전화 (03) 3228-7998) (일본어 만)

외국인 상담

- 도쿄도의 외국인 상담
도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외국인 여러분을 위하여 입국 관계, 혼인, 국적, 직업에 관한 사항 등 일상생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생활문화국 홍보홍청부 도민의 소리와 「외국인 상담」
〒163-8001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도청 제 1 본청사)
상담시간 9 시 30 분 ~ 12 시 / 13 시 ~ 17 시

상담언어	상담일(공휴일 · 연말연시는 제외)	전화
영어	월요일~금요일	03-5320-7744
중국어	화 · 금요일	03-5320-7766
한국어	수요일	03-5320-7700

- 각 구 · 시의 외국인 상담
23 구 내 및 다마(多摩) 지구의 각 시에는 외국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 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 시청의 전화번호는 101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도쿄 국세국의 영어 전화상담
상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 시 ~ 17 시
전화번호 (03) 3821-9070

[illegible]

[illegible]

納税管理人申告書記入例/
납세관리인 신고서 기입 예

第 25 号様式 (条例第 28 条等関係)

도세사무소명

신고일

〇〇年 〇〇月〇〇日

〇 〇 都 税 事 務 所 長
支 庁 長 宛
都税総合事務センター所長

納税義務者/납세의무

住所(居所)

事務所(事業所、寮等)所在地

5000Broadway, New York City, NY, USA

Address

氏名(名称) James Smith

Name

〒

날인 또는 서명

電話番号 1-212-111-1111

Telephone Number

한자, 또는
알파벳으로 써
주세요.

도세사무소명

納 税 管 理 人 申 告 書

都 税 事 務 所

この度、〇 〇 支 庁 管内において私の納付(納入)
都税総合事務センター

すべき税に係る徴収金について、納税に関する一切の事項を処理させるため次のとおり

納税管理人を 定め 変更し ましたから申告します。

納税管理人/납세관리인

新 納税管理人	Address	東京都新宿区西新宿 2-8	Telephone Number	
	住所等	甲マンション 101	電話番号	(03) 5321-XXXX
	Name	東京 太郎	Birth Date	
	氏名 (名称)	東京 太郎	生年月日	1970年 4月 1日生

摘要

<お願い> 固定資産税・都市計画税・不動産取得税について、納税管理人の申告をする場合には、不動産の所在地を摘要欄に記入してください。

<부탁 말씀>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요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가이드북 도세 2020 년도 (레이와 2 년도)

2020 년 12 월 발행

편집・발행 도교도 주세국 총무부 총무과

〒163-8001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도청 제 1 본청사

전화 (도청 대표) (03) 5321-1111

전화 (다이얼 인) (03) 5388-2924・2925(일본어 만)

FAX (03) 5388-1302

印刷物規格表第 1 類

登録番号(2)43



東京都主税局

<https://www.tax.metro.tokyo.lg.jp/>

